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연구보고서 2026-03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연구

Study on Training Legal Professionals for Public Interest

장보은 · 김소리 · 김준우 · 김진영 · 남혜선 · 마태영

엄선희 · 이유진 · 이예지 · 이탁건 · 이태영 · 진가영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연구

Study on Training Legal Professionals for Public Interest

2026. 6.

연구책임자 : 장보은(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원 : 김소리(밝은책방 대표변호사)

김준우(서울지방법원 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

김진영(재단법인 동천 상근변호사)

남혜선(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유펙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마태영(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엄선희(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이유진(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이예지(전라남도청 지방행정 사무관)

이탁건(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

이태영(신용협동조합중앙회 대외협력팀장)

전가영(사내변호사, ESG경영 담당)

Contents I

제1장 서론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II. 연구의 범위	2
III. 연구 방법	2
IV. 보고서 구성	3

제2장 공공 영역 내 공익적 변호사 진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I. 연구 대상 및 범위	4
II. 공공 영역 내 공익적 변호사의 진출 현황	6
1. 중앙행정기관	6
2.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의회, 교육청)	13
3. 국선전담변호사	25
4. 공공기관	29
III. 공공 영역 내 공익적 변호사의 활동 및 사례 분석	36
1. 중앙행정기관	36
2.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의회, 교육청)	41
3. 국선전담변호사	45
4. 공공기관	53
IV. 해외에서의 공공 영역의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과 시사점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56
1. 싱가포르의 법체계와 변호사 자격 취득 요건	57
2. 싱가포르 법조인사위원회 (LSC, Singapore Legal Service Commission)과 싱가포르 법조공무원단 (SLS, Singapore Legal Service)	59

V. 공공 영역 내 공익적 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방안	62
1. 중앙행정기관	62
2.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의회, 교육청)	63
3. 국선전담변호사	65
4. 공공기관	67

제3장 시민사회 영역의 변호사 진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I. 연구 대상 및 범위	69
II. 시민사회 영역 내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기반과 현황	71
1. 활동 기반 유형	72
2. 1유형: 로펌 기반 공익법 활동	72
3. 2유형: 시민사회단체 기반 공익법 활동	73
4. 3유형: 노동운동 기반 공익법 활동	74
5. 4유형: 국제기구 기반 공익법 활동	75
III. 시민사회 내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및 사례 분석	76
1. 공익적 법률가 양성 가능성과 한계	76
2. 공익적 법률가로서의 활동의 지속 가능성	90
IV. 해외 시민사회 영역 내 공익적 법률가 지원 제도	102
1. 국가 차원의 법·제도	102
2. 로스쿨 등 대학 차원의 법·제도	105
3. 변호사회 및 법조단체 차원의 지원 사례	111
V. 법·제도 및 정책적 개선방안	112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112
2. 공익 법률활동 경험 기회의 확대 및 체계화	113

Contents I

3. 공익 법률가 진출을 위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114
4. 공익 법률활동의 지속을 위한 재정적 기반의 강화	114

제4장 민간 기업 내 공익적 직역의 변호사 진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I. 연구 대상 및 범위	116
II. 민간 기업 내 공익적 변호사의 직역적 역할과 제도적 기반	118
1. 유형 분류의 기준 및 필요성	118
2. 유형의 분류	118
3. 각 유형의 특징 및 비교	122
III. 민간 기업 내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및 사례 분석	123
1. 민간 영역 공익적 변호사 직역의 전체적 진출 현황	123
2. 유형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본 직역의 실제와 역할 구조	131
IV. 해외에서의 민간 기업의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과 시사점	139
1. 미국	139
2. 영국	141
V. 기업 내 공익적 법률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방안	143
1. 제도적 개선방안	143
2. 정책적 지원방안	149

제5장 법학전문대학원·연구기관 내 공익적 직역의 변호사 진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I. 연구 대상 및 범위	152
II. 법학전문대학원·연구기관 내 공익적 변호사의 직역적 역할과 제도적 기반	153

1. 1유형 :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전일제 임상교수	153
2. 2유형 :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55
3. 3유형 : 연구기관 연구자	156
III. 법학전문대학원·연구기관 내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및 사례 분석	156
1.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전일제 임상교원	157
2.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66
3. 연구기관 연구자	168
IV. 해외에서의 로스쿨·연구기관 내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과 시사점	172
1. 로스쿨 리걸클리닉 전일제 교원	172
2. 로스쿨 인권법 전공 전임교원	174
3. 연구기관 연구원	174
V. 법학전문대학원·연구기관 내 공익적 법률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방안	175

제6장 개별 변호사의 공익활동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I. 연구 대상 및 범위	178
II.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 제도	180
1.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 제도 개괄 및 연혁	180
2.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규정에 따른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 분류	183
3.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 제도 운영 현황 및 평가	186
III. 변호사의 공익활동 현황 및 영향	188
1.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범위	188
2. 개별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양태	190

Contents I

IV.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	204
1. 공익활동 활성화의 목표: 사회적 변화의 추동	204
2. 공익활동에 대한 긍정적 유인 강화	205
3. 공익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익법 생태계’ 조성	210

제7장 결어

I. 연구의 의의	213
II. 공통 과제와 구조적 문제	214
1. 고용 불안정: 임기제·단기 계약의 악순환	214
2. 재정 구조의 취약성: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족	214
3. 관련 정보 및 네트워크의 부족	214
4. 인식과 평가 체계의 부재	214
III. 제도 개선 방안	215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개선	215
2. 인센티브의 제도화	216
3. 전문성 제고 방안	217
4. 법조 직역 다변화	217
IV. 평가 방식 및 인식의 전환 필요성	218

제1장 서론

장보은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인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화는 한국 법조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법조인의 역할은 더 이상 소송 대리 and 법률 자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공익변호사 및 인권변호사의 활동이 확대되고 공익소송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공공 및 행정 영역에서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법률 전문성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도 준법경영, 내부통제, ESG 대응 등 새로운 법률가의 역할이 부상하였고, 학계 및 연구 영역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리걸클리닉, 정책 연구 등을 통한 법률가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가 단순히 변호사 직역의 ‘양적 확대’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 전문성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직역의 ‘질적 다양화’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아직 부족하다. 특히 법률 서비스 접근성의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 공백, 기업 활동의 법치 준수, 공공 행정의 적법성 확보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법적 과제들을 변호사 집단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파악이 요구된다.

특히 종래 공익변호사 활동에 관한 연구는 있었지만, 공공·시민사회·기업·학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가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익에 기여하는 법조인 및 법률가들의 다양한 진출 현황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법조계의 공공성 강화의 성과와 과제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제도 및 입학전형과 공익적 법률가의 진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국선변호·소송구조·공공기관 법률담당관 제도 등의 제도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공익적 변호사 직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공 영역, 시민사회 영역, 민간기업 영역, 교육 및 연구 영역, 개별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영역에 대한 연구는 현재 해당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들이 담당하도록 하여 현장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연구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영역별 연구 범위 및 담당 연구원은 다음과 같다.

표 1-1 연구 범위 및 담당 연구원

구분	연구 범위	연구원
공공 영역	중앙정부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선전담변호사, 공공기관·공기업	김준우, 남혜선, 마태영, 이예지
시민사회 영역	로펌 기반 공익법 단체, 시민사회단체, 독립적 공익변호사단체, 노동조합, 국제기구	엄선희, 김진영
민간 기업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 등 규범·준법 직역, ESG·지속가능경영 담당 변호사, 사회혁신기업·임팩트 투자 분야 변호사	전가영, 이태영
법학전문대학원·연구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전임교원, 인권법 전담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연구자	이유진
개별 변호사의 공익활동	변호사법 제27조에 따른 공익활동 의무 이행 실태 및 비전담 국선 변호, 시민단체 협업 등 다양한 공익활동 양태	김소리, 이탁건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제도 분석, 자료 조사,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공익적 법조인의 진출 경로, 활동 내용, 고용 형태와 활동 여건, 한계 등을 분석하는 방식을 주로 한다. 중간보고를 겸하여 이루어진 국제 심포지엄에서의 발표를 비롯한 해외 사례 연구도 포함되었다.

가급적 개별 영역별로 연구 방법 및 결과 도출에 통일성을 가지고자 하였으나, 영역별 현황이나 특성이 다른 경우에는無理하게 통일성을 기하기보다는 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을 택하기로 하였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관련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재직 현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7개 중앙부처 및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보공

개청구를 전면 실시하였고(검찰, 군, 경찰, 국회는 제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리걸(Legal)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크롤링으로 최근 5년간 채용 공고 이력이 있는 기관을 1차 추출하여 총 159개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76개 기관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대면 심층 인터뷰 및 전화 인터뷰를 병행하여 이루어졌고,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공익적 목적을 지닌 직역에 종사하거나, 본업과 병행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재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자 인터뷰도 포함하여 실제 업무 경험, 진입 경로, 역할 인식, 제도적 한계 등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IV 보고서 구성

본 연구 제2장에서는 공공 영역 내 공익적 변호사 진출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선전담변호사,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변호사의 규모와 업무 실태, 제도적 과제를 검토하였고, 제3장에서는 시민사회 영역과 관련하여 공익변호사단체의 역사적 전개와 현황, 재정적 지속가능성 과제, 해외 지원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민간 기업 내 공익적 직역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를 세 유형(규범·준법 기반형, ESG·지속가능경영 기여형, 전략적 공공가치 창출형)으로 분류하여 현황과 제도적 과제를 검토하였고, 제5장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내 리걸클리닉 전임교원, 인권법 전담 교수, 연구기관 연구자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를 다뤘으며, 제6장에서는 개별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 제도의 연혁과 현황, 제도적 한계, 실제 공익활동의 양태 및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제7장에서는 공익적 변호사 직역의 지속가능성 강화와 법률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종합적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영역에서 발견한 문제들은 개별적인 내용도 있고, 여러 영역에 걸쳐 반복적인 것도 있었다. 또한 공익적 변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법조 환경의 변화, 법조인의 양성 제도 및 교육 환경 등의 여러 문제들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실증적인 방법론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법조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제2장

공공 영역 내 공익적 변호사 진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김준우, 남혜선, 마태영, 이에지

I

연구 대상 및 범위

변호사 배출 인원이 늘어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각종 공직 및 공공기관에 변호사의 진출을 보장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되었다. 이러한 고민은 단순한 일자리 보장 차원이라기보다는 법치행정의 구현 차원에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주장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제도적 변화 없이도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의 공직 및 공공기관으로의 진출은 변호사 배출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자연스러운 현실이 되었다. 예컨대 2004년 국회에서 첫 변호사 보좌관이 채용되었을 때는 신문기사가 되었지만, 지금은 적지 않은 변호사들이 국회의 원 의원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처우도 달라졌다. 대표적으로 경찰은 변호사에 대한 경정특채를 진행하다가 2014년부터는 경감특채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각종 행정부처에서 2012년부터 6급 채용공고가 처음으로 이뤄졌고, 2013년에는 7급 채용공고까지 출현했다. 기존에 사법연수생이 5급 공무원 대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주 작은 변화는 아니었던 셈이다.

이와 같이 기존에 공직 및 공공기관의 변호사 진출의 필요성과 제도보장을 위한 논의도 있었고, 각종 채용공고 소식이 가십거리처럼 언론에서 다뤄진 적은 있었지만 이제 변호사의 공직 진출 등은 새로운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변호사의 공직 및 공공기관 진출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별도로 이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변호사들의 공직 및 공공기관의 진출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작업을 통한 정량적 분석과 현재 공직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인터뷰에 기반한 정성적 접근을 통해서 현재 공직 및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의 생태계를 조망하고, 이를 통해서 변호사들의 공직 및 공공기관 진출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및 지원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공직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 착안하여 전반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우선 각 기관의 안정적인 정보공개 협조를 위하여 2026. 1. 1. 기준으로 재직 중인 변호사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에서는 공직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빠짐없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지만, 일부 공직(검찰, 군, 경찰, 국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기존에 전통적인 법률가의 진출영역이라는 점에서 논의대상에서 굳이 포함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 경우 개별 의원실에서 채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정보가 취합될 가능성도 낮고, 무엇보다 국회의원 의원실 자체가 상시로 입·퇴직이 이뤄지는 근로계약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기관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단하였다. 군과 경찰의 경우 매년 정기적인 채용을 하고 있으며, 채용인원이나 경쟁률 등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과 기관들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기관과 차이점이 더 크다고 보아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숫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우선 최근 5년간 채용공고가 있었던 기관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을 정했으며,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변호사 재직 중인 점 등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켰다.

한편 본 연구에서 취합한 정보는 앞서 기술했듯이 2026. 1. 1. 기준 현재 재직 중인 변호사를 기준으로 했다. 이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각 기관의 순조로운 협조를 기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기존에 채용되었다가 퇴직한 인원 등에 대한 정보까지는 얻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기도 하다. 변호사의 공직 등에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직률 및 재직 기간 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퇴직 인원이나 기존 퇴직인원의 재직기간 등에 대한 정보파악까지 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다. 또 공직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선호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쟁률 추이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 또한 현실적인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각 기관에서 제공된 정보값이 상이하여 보다 면밀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다.

한편 본 연구를 위해 연구진이 진행한 인터뷰의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표 2-1 공공영역 내 공익적 변호사 진출 연구 인터뷰 참여자

구분	참여자
중앙행정기관	A(중앙선관위), B(법무부), C(외교부), D(국가인권위원회), E(전 조달청), F(소방청)
지방자치단체	G(수도권 기초자치단체), H(도 교육청)
국선전담변호사	I(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J(서울 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 K(서울 피고인 국선전담변호사)
공공기관	L(서울 소재 공공기관), M (대한법률구조공단)

II 공공 영역 내 공익적 변호사의 진출 현황

1. 중앙행정기관

(1) 데이터 수집 대상 및 방법론

법적 의미에서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상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조직을 말하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각부(19개) 및 각부 소속의 청, 법제처 등 처(6개), 그 외 정부조직법에서 언급된 각종 위원회 및 청(9개)을 가리킨다. 다만 산하기관은 정부조직법에서 언급된 청들을 기본대상으로 하되, 우정본부를 추가하였고 검찰과 공수처, 경찰 및 해양경찰청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굳이 행정부 구획에 갇히지 않고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일부 포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나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처럼 한시적 성격의 기구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자연차 변호사들의 중앙행정기관 진출에 관한 모색을 위한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각 부처의 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단급은 애초에 정보공개청구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공익법무관이 나 파견검사 등의 경우에도 청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고위공무원단 등을 포함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 해당 수치는 반영하였다. 그 외에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공무원지위가 아닌 계약직(공무직) 등으로 임용된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모두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정보공개에 비공개처리를 한 경우에도 정보자체가 부존재한 경우도 있으며,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한 기관(국가정보원, 대통령 비서실) 등이 있다. 다만 법무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근무하는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특히 법무부의 경우 적지 않은 변호사 재직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2) 중앙행정기관의 변호사 재직 현황

본 연구를 위하여 각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회신을 하였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기에 세세하게 모든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파악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2026. 1. 1. 기준 변호사 재직 현황은 총 460명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2 2026. 1. 1. 기준 중앙행정기관 등 변호사 재직 현황

기관명	인원	기관명	인원
대통령비서실	비공개	국가유산청	1명
국가안보실	비공개	농림축산식품부	0명
대통령경호처	2명	농촌진흥청	1명
국가정보원	비공개	산림청	1명
국무총리실 ¹⁾	16명	산업통상부	13명
기획예산처	0명	보건복지부	21명
인사혁신처	5명	질병관리청	1명
법제처	14명	기후에너지환경부	비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7명	기상청	1명
국가데이터처	0명	고용노동부	18명
지식재산처	15명	성평등가족부	0명
재정경제부	0명	국토교통부	6명
국세청	86명	해양수산부	0명
관세청	10명	해양경찰청	제외
조달청	14명	중소벤처기업부	0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명
우정본부	5명	공정거래위원회	33명
교육부	1명	국민권익위원회	16명
외교부	20명	금융위원회	12명
재외동포청	1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1명
통일부	6명	원자력안전위원회	1명
법무부	비공개	우주항공청	2명
국방부	4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명
병무청	1명	새만금개발청	0명
방위사업청	27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0명
행정안전부	0명	감사원	43명
소방청	6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명
국가보훈부	3명	국가인권위원회	5명
문화체육관광부	1명	국가교육위원회	0명

총 57개의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이중 비공개 결정을 한 5개 기관(법무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정원)을 제외하고 52개 기관 중에서 12개 기관에는 재직 중인 변호사가 없다고 한다. 18개 부처는 5명 이하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고, 6-10명이

1)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통합하여 회신하였다.

6개, 11명-20명이 11개, 21-30명이 3개, 30명 초과는 3개 부처다.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한 곳 다섯 곳은 국세청이 86명, 감사원이 43명, 공정거래위원회가 33명, 방위사업청이 27명,²⁾ 보건복지부가 21명, 외교부가 약 20명이다.

재직인원이 0명인³⁾ 기관을 제외하면 변호사가 재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보를 공개한 기관은 40개지만, 비공개한 5개 기관 중 최소한 4개에서는⁴⁾ 변호사가 근무 중일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는바 최소 44개의 중앙행정기관에 변호사가 근무 중인 셈이다.

한편 위의 현황에는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 재직 숫자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소방청의 경우 본청이 아닌 시·도 소방본부 근무 변호사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노동부의 경우에도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무원 근로자 형태로 채용하는 변호사들이 다수 있는데 정보공개청구 결과에는 해당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3) 재직 중인 변호사의 직위/직급 및 고용형태

대부분의 정부기관에서 재직인원은 공개하였지만, 고용형태와 직급/직위의 공개수준은 또 달랐다. 모든 정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공개한 경우도 있고, 일반직/계약직으로만 분류한 경우도 있었으며, 아예 인원 외에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기관도 있다.

재직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40개 기관 중에서 10개 기관(교육부, 병무청, 대통령경호처, 산업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외교부, 농촌진흥청, 우주항공청)은 재직 인원을 통지하였을 뿐 직급 등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물론 공개를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기관(국세청)도 존재한다. 한편 계약직의 경우 직급을 표기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직급정보가 공개된 29개 기관 중에서 변호사가 6급 주사로 근무하는 기관은 11개 기관이 있다. 다른 18개 기관은 현재 6급은 없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사무관, 서기관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6급 장기근속자가 있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오래쓰고 있는 경우가 정보공개청구 결과에서 복수로 발견되기도 하며, 6급 채용을 중단한 기관도 있다.

2) 방위사업청은 27명이기는 하나 이 가운데 17명이 군인 신분이다. 군인은 원칙적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이 아니나 일단 통계에는 합산하였다.

3) 0명으로 집계된 기관 중에도 실제로 변호사가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성평등가족부의 경우 장관과 정책보좌관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본 정보공개청구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고위공무원단은 제외되었기에 위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또 행정안전부의 경우 공익법무관이 1인 근무하고 있다고 하나, 위 통계에서는 제외하였다.

4) 법무부,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기후에너지환경정부에서는 변호사가 근무 중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안보실은 알기 어렵다.

직급을 공개하더라도 ‘모두 4급-6급’, ‘4-5급’ 식으로 공개한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공개된 정보만 현황을 보고서에 담는 것이 오히려 부정확한 통계가 될 우려도 있다. 또 국세청이나 감사원의 경우 인원이 타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관계로 평균의 함정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조망을 오히려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고위공무원단은 본 연구에서 애초에 배제하였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공개하였고 이 경우 표에 반영하였다.

우선 3급 이상부터 6급 주사까지 직급/직위가 있는 경우와 기간제, 무기계약직, 공무원 등 계약직으로서 공무원 지위가 아닌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무원 신분이라도 일반직과 임기제(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 전문경력관 등)으로 대별되기도 한다.

입직 경로의 경우 크게 일반직과 계약직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최근 많은 경우 5급 민간경력직채용으로 입직한 경우, 행정고시 등 별도의 시험합격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6급 기관 채용으로 입직하여 내부 승진한 경우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의미 있는 정보 수합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일단 일반직, 임기제, 계약직으로만 나뉘보았다.

일반직이나 계약직이나는 확실히 재직기간 상 차이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14명의 공무원이 있고, 7명의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평균 6년 6개월인데 반하여 무기계약직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 11개월이었다. 식약처는 공무원 4명 중 5급 2명은 휴직 중임에도 평균 재직기간은 11년 1개월인데 공무원 3인(2인 기간제, 1인 무기계약직)의 평균 재직기간은 2년 4개월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직기간에 관한 자료는 모든 기관에서 제공된 것이 아니었기에 별도의 표를 만들지는 않았다.

【표 2-3】 2026. 1. 1. 기준 중앙행정기관 등 재직 변호사의 직위·직급별 현황

	기관명	3급 이상	4급	5급	6급	계약직	합계
1	대통령경호처	정보 없음					2명
2	국무총리실	정보 없음					16명
3	인사혁신처			4명	1명		5명
4	법제처			14명			14명
5	식품의약품안전처	2명		2명		계약직 3명	7명
6	지식재산처		4명	6명	2명	계약직 2명, 전문임기제 1명 ⁵⁾	15명
7	국세청	정보없음					86명
8	관세청		10명				10명
9	조달청		2명	1명	7명	기간제 4명	14명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	4명			5명

	기관명	3급 이상	4급	5급	6급	계약직	합계
11	우정본부		3명	2명			5명
12	교육부	정보없음					1명
13	외교부	정보없음					20명
14	재외동포청			1명			1명
15	통일부		6명				6명
16	국방부		1명	3명			4명
17	병무청	정보없음					1명
18	방위사업청	1명	5명	3명	1명	군인 17명	27명
19	소방청	6명					6명
20	국가보훈부			2명	1명		3명
21	문화체육관광부			1명			1명
22	국가유산청		1명				1명
23	농촌진흥청					계약직 1명	1명
24	산림청		1명				1명
25	산업통상부	정보없음					13명
26	보건복지부		14명			무기계약직 7명	21명
27	질병관리청			1명			1명
28	기상청				1명	휴직 중	1명
29	고용노동부	정보없음					18명
30	국토교통부	1명	2명	3명		(3명 행시)	6명
3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명	6명		○	8명
32	공정거래위원회	정보없음					33명
33	국민권익위원회	4명	8명	3명	1명		16명
34	금융위원회		2명	10명			12명
3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명	3명	4명	무기계약직1명, 기간제 3명	11명
36	원자력안전위원회			1명			1명
37	우주항공청	정보없음					2명
38	감사원	3명	17명	12명	11명		43명
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명	6명	4명	2명		17명
40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없음					5명

5) 통상 다른 임기제는 모두 4-6급 편제에 포함되어있다.

■ 표 2-4 ■ 2026. 1. 1. 기준 중앙행정기관 재직 변호사의 계약별 유형 현황

	기관명	일반직	임기제	계약직	합계
1	대통령경호처	정보없음			2명
2	국무총리실				16명
3	인사혁신처	2	3		5명
4	법제처	11	3		14명
5	식품의약품안전처	4		3	7명
6	지식재산처	12	1	2	15명
7	국세청	27	59		86명
8	관세청	10		?	10명
9	조달청	9	1	4	14명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5명
11	우정본부	5			5명
12	교육부	정보없음			1명
13	외교부				20명
14	재외동포청	1			1명
15	통일부	6			6명
16	국방부	2	2		4명
17	병무청	1			1명
18	방위사업청	9+17	1		27명
19	소방청	6			6명
20	국가보훈부	1	2		3명
21	문화체육관광부		1		1명
22	국가유산청	1			1명
23	농촌진흥청			1	1명
24	산림청	1			1명
25	산업통상부	정보없음			13명
26	보건복지부	14		7	21명
27	질병관리청	1			1명
28	기상청	1			1명
29	고용노동부	정보없음			18명
30	국토교통부	6			6명
3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5		8명
32	공정거래위원회	정보없음			33명
33	국민권익위원회	14	2 ⁶⁾		16명
34	금융위원회	6	6		12명

6) 1인은 임기제, 1인은 전문경력관

	기관명	일반직	임기제	계약직	합계
3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4	4	11명
36	원자력안전위원회	1			1명
37	우주항공청	1	1		2명
38	감사원	41	2		43명
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6	1		17명
40	국가인권위원회	5			5명

(4) 근무지역

근무지역에 관해서 40개 기관 중에 29개 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였다. 물론 중앙부처는 특성상 주되게 서울, 경기(과천)와 세종, 대전 등에 부처가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벗어난 근무지는 매우 적었다. 물론 기관의 소재지 자체가 위 4개 도시를 벗어난 경우인 농촌진흥청(전주), 재외동포청(인천), 우주항공청(사천), 식약처 및 질병관리청(청주) 등의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 지역은 수도권 근무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부산 기장군(원자력안전위원회), 충남 태안(법제처 정책연수원)이나 중앙선관위에서 시군구 선관위 근무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국가인권위의 경우처럼 지방 근무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근무자들은 모두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특정 지역 편중이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다.

표 2-5 2026. 1. 1. 기준 중앙행정기관 등 재직 변호사 근무지 현황

	기관명	총 인원	근무지
1	대통령경호처	2명	정보없음 (서울추정)
2	국무총리실 ⁷⁾	16명	정보없음 (서울추정)
3	인사혁신처	5명	세종
4	법제처	14명	세종 13명, 태안 1명
5	식품의약품안전처	7명	청주
6	지식재산처	15명	대전 14명, 세종 1명(파견)
7	국세청	86명	정보없음
8	관세청	10명	대전 또는 서울
9	조달청	14명	대전 또는 서울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명	세종
11	우정본부	5명	세종 4명, 인천 1명
12	교육부	1명	정보없음 (세종추정)

7)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통합하여 회신하였다.

	기관명	총 인원	근무지
13	외교부	20명	정보없음 (서울추정)
14	재외동포청	1명	인천
15	통일부	6명	서울
16	국방부	4명	정보없음 (서울추정)
17	병무청	1명	대전
18	방위사업청	27명	과천
19	소방청	6명	정보없음 (세종추정)
20	국가보훈부	3명	세종 2명, 의정부
21	문화체육관광부	1명	세종
22	국가유산청	1명	서울
23	농촌진흥청	1명	전북
24	산림청	1명	휴직 중
25	산업통상부	13명	정보없음
26	보건복지부	21명	세종
27	질병관리청	1명	청주
28	기상청	1명	휴직 중
29	고용노동부	18명	정보없음
30	국토교통부	6명	세종
3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명	과천
32	공정거래위원회	33명	세종
33	국민권익위원회	16명	세종
34	금융위원회	12명	서울
3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1명	서울
36	원자력안전위원회	1명	부산 기장군
37	우주항공청	2명	경남 사천
38	감사원	43명	서울
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명	과천 11명, 서울 1명, 경기 2명, 인천 1명, 경북 1명, 충북 1명
40	국가인권위원회	5명	서울

2.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의회, 교육청)

(1) 서론

본 연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익적 변호사 채용 현황을 기관 유형별로 정리·비교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의 범위는 광역지자체(시·도청, 교육청, 의회)와 기초지자체(시·군·구)이며, 분석 기준 시점은 2026. 1. 1.이다.

공공영역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1월~2월 사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고, 그 응답 자료(2026. 1. 1. 기준)를 활용하여 기관 유형별 변호사(자격 보유 법률직 공무원 및 임기제·계약직 포함) 채용·배치 현황을 분석하였다(직급, 보수 수준, 담당업무, 기관별 비법조 인력 대비 법조인력의 비율 등 포함).

본 연구에서는 (1) 전체 규모와 분포를 요약한 뒤, (2) 광역지자체의 기관 유형별, 기초지자체의 행정구역 형태별 차이 및 (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력 수급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4) 지방자치단체의 채용 형태, 직급 및 연봉 수준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본 분석의 학술적 의의는 첫째, 지방정부 법조인력의 존부에 그치지 않고 기관 유형별 채용 규모와 편중을 계량적으로 제시한다는 점, 둘째, 광역·기초 간 격차를 기관 유형(교육청/집행부/의회, 시/군/구) 수준에서 구체화함으로써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지역간 법조인력 채용의 불균형 정도를 살핌으로써 그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공익적 변호사의 공공 영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함에 있다.

(2) 광역/기초 지자체 변호사 재직 현황

1) 전체 채용 규모

광역 지자체는 총 51개 기관 중 36개 기관에 191명(기관당 평균 5.3명), 기초지자체는 총 226개 기관 중 71개 기관에 94명(기관당 평균 1.3명)으로, 광역이 기초 대비 약 4배 높은 기관당 평균을 보이며, 광역이 전체 변호사 인력의 과반 이상을 점유한다(표 2-6). 이러한 차이는 광역 단위에서 법무조직이 상대적으로 상설화되어 있고, 광역 수준의 정책·소송·자문 수요가 더 크다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표 2-6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변호사 채용 현황

구분	재직 기관 수	총 변호사 수	평균 변호사 수
광역	36개	191명	5.3명
기초	71개	94명	1.3명
합계	107개	285명	2.6명

2)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도청, 의회, 교육청)

광역지자체(총 36개 기관, 191명)의 변호사 재직에 관한 전체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표 2-7).

표 2-7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도청, 의회, 교육청) 변호사 재직 현황

구분	기관 종류	변호사 수	구분	기관 종류	변호사 수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3	광주광역시	교육청	3
	도청	1		시청	5
	도의회	0		시의회	0
경기도	교육청	17	대구광역시	교육청	8
	도청	10		시청	1
	도의회	1		시의회	0
경상남도	교육청	4	대전광역시	교육청	2
	도청	1		시청	2
	도의회	0		시의회	0
경상북도	교육청	5	부산광역시	교육청	7
	도청	1		시청	2
	도의회	0		시의회	0
전라남도	교육청	4	서울특별시	교육청	27
	도청	3		시청	30
	도의회	1		시의회	3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2
	도청	1		시청	1
	도의회	0		시의회	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4	울산광역시	교육청	2
	도청	2		시청	1
	도의회	2		시의회	0
충청남도	교육청	17	인천광역시	교육청	3
	도청	0		시청	5
	도의회	0		시의회	0
충청북도	교육청	3		총계	191
	도청	0			
	도의회	0			

광역지자체를 교육청, 시·도청, 의회로 구분할 때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표 2-8).

표 2-8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관 유형별 변호사 채용 현황

기관 유형	재직기관/총 기관	총 변호사 수	평균 변호사 수	총 기관 대비 재직기관 비율
교육청	17/17	118	6.9명	100%
시·도청	15/17	66	4.4명	88%
의회	4/17	7	1.7명	23%
합계	36/51	191	5.3명	70%

교육청, 시·도청, 의회 중 교육청의 경우 모든 기관에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었고 기관별 평균 재직 인원 수도 6.9명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⁸⁾ 시·도청은 전체 17개 기관 중 15개 기관에서 변호사가 재직 중이었고 평균 재직 인원은 4.4명 수준이나, 최소값과 최대값의 편차가 29명으로 특히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지역별 편차가 눈에 띈다. 한편 의회의 경우 전체 17개 기관 중 단 4개 기관(서울, 경기, 전남, 제주)에만 변호사가 재직 중이었으며, 소규모 배치가 일반적이어서 기관 당 평균 인원도 1.7명에 그쳤다.

교육청은 17개 기관 중 17개 기관(100%)이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고, 기관당 평균 인원도 6.9명으로 가장 높다. 이는 학교폭력, 교권보호, 징계·인사, 학생 인권 등 교육행정 영역에서 준수법적 절차 및 분쟁이 상시화되면서 상근 법률전문가 수요가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

시·도청은 총 17개 기관 중 15개 기관이(88%)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고, 기관당 평균 4.4명으로 두 번째 규모를 보인다. 시·도청 변호사는 소송 수행 및 대응, 조례·규칙 심사, 행정심판·감사 대응, 자문 등 광범위한 법무 기능을 담당하므로, 기관 규모가 클수록 복수 채용을 통해 기능 분화를 시도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반면 의회는 총 17개 기관 중 4개의 기관만이(23%) 변호사를 채용하였으며, 기관당 평균 변호사 수도 1.7명으로 가장 낮다. 이는 의회가 집행부에 비해 상시 송무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고, 입법 자문을 외부 위촉 또는 내부 법제 인력으로 보완할 가능성 때문으로 추측된다. 다만 자치입법의 확대 및 의회 권한 강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의회 내 상근 법무인력 확충은 입법 품질 및 분쟁 예방 차원에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3)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 구, 군)

기초 지자체(총 226개) 기관의 변호사 재직에 관한 전체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표 2-9). 변호사 재직 기관은 226개 기관 중 71개(31%)에 불과하며, 총 재직 변호사 수는 94명이다.

■ 표 2-9 ■ 기초 지방자치단체 변호사 재직기관 현황

연번	시, 도	시, 군, 구	재직인원	연번	시, 도	시, 군, 구	재직인원
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1	37	광주광역시	동구	1
2	경기도	가평군	1	38	광주광역시	북구	1
3	경기도	고양시	2	39	광주광역시	서구	1
4	경기도	과천시	1	40	대구광역시	달성군	1

8) 교육청은 서울시를 제외하고 대다수 지역이 도 교육청(광역) 단위에서 채용하여 지역교육청으로 파견하는 형태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어, 교육지원청에서 재직 중인 경우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지자체 소속으로 집계하였다.

연번	시, 도	시, 군, 구	재직인원	연번	시, 도	시, 군, 구	재직인원
5	경기도	광명시	1	41	대구광역시	북구	1
6	경기도	광주시	1	42	대전광역시	유성구	1
7	경기도	군포시	1	43	서울특별시	강남구	1
8	경기도	김포시	1	44	서울특별시	강동구	1
9	경기도	남양주시	4	45	서울특별시	구로구	1
10	경기도	부천시	2	46	서울특별시	금천구	1
11	경기도	성남시	1	47	서울특별시	노원구	1
12	경기도	수원시	3	48	서울특별시	도봉구	1
13	경기도	시흥시	2	49	서울특별시	동작구	1
14	경기도	안산시	3	50	서울특별시	마포구	1
15	경기도	안성시	1	51	서울특별시	서초구	1
16	경기도	안양시	1	52	서울특별시	성동구	1
17	경기도	양주시	1	53	서울특별시	송파구	1
18	경기도	양평군	2	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19	경기도	여주시	1	55	서울특별시	은평구	2
20	경기도	연천군	1	56	서울특별시	종구	1
21	경기도	용인시	6	57	서울특별시	종량구	1
22	경기도	의왕시	1	58	울산광역시	남구	1
23	경기도	의정부시	1	59	인천광역시	강화군	1
24	경기도	이천시	2	60	인천광역시	남동구	1
25	경기도	파주시	1	61	인천광역시	서구	1
26	경기도	평택시	2	62	인천광역시	옹진군	1
27	경기도	포천시	2	63	전라남도	담양군	1
28	경기도	하남시	2	6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1
29	경기도	화성시	2	6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1
30	경상남도	고성군	1	66	충청남도	아산시	1
31	경상남도	김해시	1	67	충청남도	천안시	2
32	경상남도	창원시	1	68	충청남도	청양군	1
33	경상남도	통영시	1	69	충청북도	음성군	1
34	경상북도	구미시	1	70	충청북도	청주시	1
35	경상북도	김천시	1	71	충청북도	충주시	1
36	경상북도	영주시	1	총계			94

기초지자체를 시, 군, 구 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역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표 2-10).

■ 표 2-10 ■ 기초 지방자치단체 형태별 변호사 채용 현황

기관 유형	재직기관/ 총 기관	총 변호사 수	평균 변호사 수	총 기관 대비 재직기관 비율
시	36/75	57	1.5명	36%
구	23/69	24	1명	33%
군	12/82	13	1명	14%
합계	71/226	94	1.3명	31%

형태별로는 시가 57명으로 기초자치단체 법조인력의 대부분을 고용하고(60.6%), 구가 24명(25.5%), 군은 13명(13%)에 그친다. 총 기관 대비 재직기관 비율 역시 시(36%)·구(33%)·군(14%) 순으로, 군 단위의 법률전문 인력 공백이 두드러진다. 기초지자체의 기관 당 평균 변호사 수는 1.3명으로, 실질적으로 1인 변호사 체제가 일반적임을 시사한다.

(3) 수도권/비수도권 비교 분석

1) 수도권/비수도권의 인력 배치 현황

전체 변호사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분포는 수도권 165명(57.8%), 비수도권 120명(42.2%)으로 확인된다. 지역당 평균으로 비교하면 수도권은 3개 광역지자체 및 하위 기초지자체에 165명이 집중되어 평균 55명인 반면, 비수도권은 14개 광역지자체 및 하위 기초지자체에 총 120명이 재직하여 평균 8.5명으로 격차가 약 6.5배에 달한다. 수도권은 서울시청(30명), 서울 시교육청(27명)과 경기도교육청(17명) 등 대규모 조직이 존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충청남도 교육청(17명)을 제외하면 30개 중 22개 기관이 3명 이하의 소규모 체제로 운영되어 전문성 분화와 장소적 접근성 보장, 상시 리스크 관리 등에 제약이 있다.

2)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광역지자체의 경우, 총 96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며, 서울이 60명, 경기도가 28명, 인천이 8명을 차지한다(표 2-11). 서울은 경기도보다 약 2.1배, 인천보다 약 7.5배 많은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이 수도로서 행정 업무의 복잡성이 높고, 법률 분쟁 빈도가 높으며, 재정 여건 우수, 인력을 확충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리적 조건 등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의 경우 시청의 채용 규모가 30명으로 압도적이며, 교육청 27명, 시의회 3명

순이다. 서울시청은 광역 시·도청 중 가장 많은 변호사를 채용하여 법무담당관 기능을 중심으로 소송·자문·조례·감사 대응 등 부서별 분화를 추진할 여건이 갖춰져 있다. 반면 시의회는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며, 교육청의 경우 본청에 5명, 교육지원청에 22명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 외부 조직을 통한 업무 분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기관별 분포는 교육청 17명이 가장 많고, 도청 10명, 도의회 1명 순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도교육청과 다수 교육지원청으로 분산 배치되는 형태가 특징이다. 이는 지역적으로 관할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학교·학생 규모가 크고, 지역별로 학교폭력·교권보호 등 상시 분쟁 대응 수요가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표 2-11 ■ 수도권 광역지자체 변호사 분포

지역	인원
서울	60명
경기	28명
인천	8명
합계	96명

기초 지자체의 경우, 수도권에 47개 기관에 69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다(표 2-12). 이 중 경기도의 시·구에 재직 중인 변호사가 49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6명, 인천 4명 순이다. 경기도는 총 31개 시, 군 중 25개 시에 44명, 3개 군에 5명이 재직 중이다. 경기도 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용인, 수원, 고양, 남양주 등)가 많아, 복수 변호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용인시는 6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다이며, 기획조정실 법무과에 5명, 의회사무국에 1명을 배치하여 소송, 자문, 입법지원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4명, 수원시, 안산시는 각 3명을 채용하여 복수 변호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 외 시는 대부분 1명씩 채용하고 있다. 경기도 3개 군(가평군, 양평군, 연천군)에는 총 5명이 재직 중이며, 양평군만 2명을 채용하고 나머지는 1명씩이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 변호사가 재직 중이며, 모두 1명씩 채용하고, 은평구만 2명을 채용하였다. 인천은 총 10개 기초지자체 중 구 2개(남동구, 서구)와 군 2개(강화군, 옹진군)에 각각 1명씩 총 4명이 재직 중이다.

■ 표 2-12 ■ 수도권 기초지자체 변호사 분포

지역(기초지자체 수)	시	구	군	재직기관 합계
서울 (25개)	-	15개/16명	-	15개/16명
경기 (31개)	25개/45명	-	3개/4명	28개/49명
인천 (10개)	-	2개/2명	2개/2명	4개/4명
총합계 (66개)	25개/45명	19개/20명	3개/4명	47개/69명

3) 비수도권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는 총 95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최대 17명(충남)에서 최소 3명(세종·울산·충북)까지 큰 격차를 보인다. 비수도권 중 변호사가 가장 많은 충남(17명)은 교육청에 인원이 집중되어 있고, 도청이나 의회의 경우 법조인력이 전무했다. 그 다음으로 대구(9명), 부산(9명), 전남·전북·제주·광주(각 8명)은 중위권을 형성하고, 경북(6명)·경남(5명)·강원/대전(각 4명)·세종/울산/충북(각 3명)은 하위권으로 분류된다(표 2-13).

【 표 2-13 】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변호사 분포 및 순위

순위	지역	변호사 수
1	충남	17명
2	대구	9명
3	부산	9명
4	전남	8명
	전북	8명
	제주	8명
	광주	8명
5	경북	6명
6	경남	5명
7	강원	4명
	대전	4명
8	세종	3명
	울산	3명
	충북	3명
	합계	95명

비수도권 광역시(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는 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변호사를 보유하나, 수도권과 비교하면 여전히 소규모 체제이다. 광역시는 대규모 사업·도시개발·조례 입법 수요가 지속되는 만큼, 단일 인력 중심의 운영은 특정 분야(행정소송, 계약, 인사·징계, 공공조달)에 대한 대응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도 단위 지역은 광역시에 비해 법무 인력이 더 부족한 경향이 나타난다. 일부 지역은 도청 차원의 변호사 미채용 사례(충남, 충북)가 확인되며, 이에 따라 고난도 법률 이슈가 발생했을 때 외부 위임에만 의존하게 될 수 있다. 외부 위임은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내부적인 통제 및 법률 전문성 축적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종합하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대부분 10명 미만의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되어 기능 분화

와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있다. 지역 주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공공부문 법률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권역별 지원체계와 최소 인력 기준 등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한편,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의 경우, 총 160개 중 단 24개 기관에 25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다(표 2-14). 이는 수도권(66개 중 47개 기관, 69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로,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의 법무 역량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준다.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중 변호사 재직 기관은 11개 시, 6개 구, 7개 군으로 분포되어 있다.

【 표 2-14 】 비수도권 지역별 기초지자체 변호사 분포⁹⁾

지역 (총 기관 수)	시 (재직기관수/인원)	구 (재직기관수/인원)	군 (재직기관수/인원)	합계
대구(9개)	-	1개/1명	1개/1명	2개/2명
광주(5개)	-	3개/3명	-	3개/3명
울산(5개)	-	1개/1명	-	1개/1명
대전(5개)	-	1개/1명	-	1개/1명
부산(16개)	-	-	-	-
경남(18개)	3개/3명	-	1개/1명	4개/4명
경북(22개)	3개/3명	-	-	3개/3명
전남(22개)	-	-	1개/1명	1개/1명
전북(14개)	1개/1명	-	1개/1명	2개/2명
충남(15개)	2개/3명	-	1개/1명	3개/4명
충북(11개)	2개/2명	-	1개/1명	3개/3명
강원(18개)	-	-	1개/1명	1개/1명
합계(160개)	11개/12명	6개/6명	7개/7명	24개/25명

비수도권 시는 경남(김해, 통영, 창원), 경북(구미, 김천, 영주), 전북(군산), 충남(아산, 천안), 충북(청주, 충주) 등 11개 시에 12명이 재직 중이며, 충남 천안시(2명)를 제외한 나머지 시들은 각 1명씩 채용하고 있다. 비수도권 시는 인구 10만~100만 수준으로 다양하나, 대부분 변호사 채용에 소극적이다. 특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창원, 청주)도 1명만 채용하고 있어, 수도권 대도시(용인 6명, 남양주 4명, 수원 3명)와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비수도권 구는 광주광역시 3개(동구, 북구, 서구), 대구광역시 1개(북구), 대전광역시 1개(유성구), 울산광역시 1개(남구) 등 6개 구에 6명이 재직 중이다. 비수도권 군은 경남(고성), 대구(달성), 전남(담양), 전북(완주), 충북(음성), 충남(청양), 강원(철원) 등 7개 군에 7명이 재직 중

9) 제주, 세종의 경우 광역지자체만 존재하고 기초지자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며, 모두 1명씩 채용하고 있다. 비수도권 군은 인구 3만~8만 수준의 소규모 지역이며, 재정 자립도가 낮아 변호사 채용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군 지역 역시 개발 사업(댐, 풍력발전, 도로 등), 토지수용, 환경 분쟁, 주민 소송 등 법률 수요가 존재하며, 변호사 부재로 인해 행정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초지자체는 대부분이 1인 변호사 체제로 운영되어, 전문성 개발, 동료 학습, 업무 분담 등이 불가능하며, 휴가·병가 시 대체 인력이 없어 법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다.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의 법무 인력 부족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군 지역은 전국 82개 중 단 12개만 변호사를 채용하여, 대부분의 군 지역은 기초지자체의 직접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지역 간 격차의 원인 분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법무 인력 격차는 단일 요인보다는 인구·재정·법률 수요·정책 인식·인력 수급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설명된다.

첫째, 인구 및 행정수요 격차이다. 수도권은 2024년 기준 인구 2,630만명을 포함하며, 용인(107만), 수원(122만), 고양(104만) 등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다수 있다.¹⁰⁾ 이에 따라 민원·인허가·계약·분쟁 등 법률 수요가 크고 소송·자문·행정심판 대응이 상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10만 미만의 소도시·군이 대부분이며,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창원(100만), 청주(87만) 등 소수에 불과하다. 다만 수도권 용인시(107만)는 6명의 변호사를 채용하였으나, 비슷한 규모의 비수도권 창원시(100만)는 1명만 채용하여, 인구 규모가 유사해도 지역에 따라 법무 인력 운영이 크게 다름이 발견된다.

둘째, 재정 여력의 차이이다. 변호사 1인 채용은 인건비뿐 아니라 교육·시스템·외부자문 예산 등 부대비용을 동반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채용이 가능하나, 재정 여력이 낮은 비수도권은 법무 인력 확충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국가데이터처의 2025. 5. 15. 기준 지역별 재정자립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서울의 경우 재정자립도(세입과 목 개편전 기준)가 79.1%, 경기 62.8%에 달하는 반면, 대구의 경우 47.6%, 부산은 48.6%였으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는 30%대, 강원, 전북, 전남은 각 29%, 27.1%, 27.1%로 최저 수준이다.¹¹⁾

10) 국가데이터처, “인구, 가구 및 주택 - 읍면동(연도 끝자리 0, 5), 시군구(그 외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2&conn_path=12 (2026년 3월 1일 검색).

셋째, 변호사 수급의 지역 불균형이다. 수도권은 전국 변호사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어, 인력을 채용하기 용이하다. 반면 비수도권은 변호사 수가 적어 공공 부문 채용에 응시하는 변호사가 제한적이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은 1인 변호사 체제로 운영되는 등 업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가능성이 있어, 우수 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 법무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처우 개선, 복수 변호사 배치, 근무 환경개선, 경력 개발 기회 제공 등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다.

(4) 지방자치단체의 채용 형태, 보수 수준 등

1) 채용 형태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서울시청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이 소수 존재한다. 공무원 직급은 5급과 6급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예외적으로 대구광역시가 4급 서기관에 변호사를 채용 중인데, 이는 개별 변호사의 높은 경력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기관에서 5급과 6급을 동시에 채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광역지자체 교육청의 경우 총 17개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공무원(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 형태로 변호사를 채용 중이었다. 이는 시·도청에 비해 교육청이 정규직 대비 공무원 채용 비율이 높은 환경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기할 사항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적극 활용된다는 점이다.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변호사는 전체 재직 인원 중 약 27%(74명)를 차지하며, 특히 기초지자체에서 많이 활용된다. 경기도 시·군은 25개 중 약 18개가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며, 경남·경북·전남·전북 지역의 시·군도 대부분 시간선택제로 채용한다. 시간선택제는 지자체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절충적 선택이다. 시간선택제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므로 정규 임기제에 비하여 인건비가 줄어든다. 또한 법무 수요가 상시적이지 않은 소규모 지자체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변호사 입장에서 일·가정 양립을 목적으로 업무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시간선택제는 경력 단절 없이 법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한편 시간선택제는 개업 변호사와 겸직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 일반 임기제의 경우 일반 송무와 겸직이 불가능하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변호사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에 해당돼 겸직 활동이 가능하다.

11) 국가데이터처, “재정자립도 (시도/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I2 (2026년 2월 28일 검색).

2) 보수 수준 분석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모든 변호사의 연봉 수준은 「지방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변동폭이 크지는 않다. 다만 그 보수 규정에 따르더라도 지자체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하한액의 100%부터 130%까지 다양한 범위가 책정될 수 있어, 실제 지급되는 연봉 수준은 급수, 경력, 하한액 등 변수에 따라 최소 5,000만원대에서 최대 1억원을 넘는 수준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 약 45.7%의 기관이 하한액 100%를 적용하며, 하한액 120% 적용기관은 약 16.8%, 하한액 110% 적용 기관은 약 3.7%, 하한액 130% 이상 적용 기관은 약 2.8%로 나타났다(표 2-15).

표 2-15 보수 수준별 기관 분포

보수 수준	기관 수	비율	5급 기준	6급 기준
비공개	7개	6.5%		
경력에 따른 변동	26개	24.3%		
하한액 100%	49개	45.7%	6,966만원	5,770만원
하한액 110%	4개	3.7%	7,663만원	6,347만원
하한액 120%	18개	16.8%	8,359만원	6,924만원
하한액 130% 이상	3개	2.8%	9,056만원	7,502만원

보수 수준을 비공개한 경우나, 개인 변호사의 경력에 따른 차등 기준을 둔 기관 33개를 제외하고, 총 107개 기관 중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 기준의 하한액은 100%를 적용하는 기관이 49개로 가장 많고,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한액 110%를 적용하는 기관은 4개로, 충청남도 교육청, 제주도교육청, 광주 북구청, 파주시청이다. 하한액 120%를 적용하는 기관은 18개로, 수도권 대도시와 일부 광역지자체가 해당한다. 서울 은평구, 경기도 성남시, 시흥시, 안성시, 용인시,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광주시청, 대전시교육청 등이 대표적이다. 하한액 130% 이상을 적용하는 기관은 3개로, 철원군, 청양군이다. 전북도교육청은 9,900만원, 철원군은 약 1억원, 청양군은 약 9,000만원을 지급하여 130% 혹은 그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다(보수규정 상 하한액은 연도별로 달라지므로, 채용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상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5) 시사점

본 분석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근무하는 변호사 인력의 지역별 분포 현황, 고용형태, 보수 수준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 및 기초지자체 중 총 107개 기관에 285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다.

광역지자체 51개 중에서는 총 36개 기관이 변호사를 채용 중이었으며, 그중 광역 단위의 교육청이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여 법률 수요가 교육행정 영역에서 특히 강하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회는 평균 재직인원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치입법 강화 국면에서 상·하법률인력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기초지자체는 전체 226개 중 단 71개 기관만이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었으며, 대체로 1인 체제로 운영되어 법률 수요 대응에 있어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다. 또한 기초지자체에서는 시·구 중심의 채용과 군 지역의 낮은 배치율이 핵심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최소 인력 기준 설정, 광역 단위의 순회·공동 법무지원 모델, 군 지역에 대한 재정·인사 인센티브 설계 등 다층적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다수 법조인력이 임기제 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형태로 채용되며, 정규직은 약 3%에 불과하다. 그중 시간선택제는 전체의 27%를 차지하여, 지자체가 법무 인력을 ‘유연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상 직급별 연봉의 하한액 100%를 적용하는 기관이 약 45.7%로 가장 많으며, 110%를 적용하는 기관은 3.7%, 120% 적용하는 기관은 약 16.8%, 하한액 130% 이상을 적용하는 기관은 단 2.8%이다.

끝으로, 본 분석은 정보공개 자료의 한계로 인해 개별 변호사들의 경력 수준이나 재직 기간, 정확한 임금 등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1) 채용의 지속성(재임용/이직), (2) 지역 특성(인구·재정자립도)과의 연관성 등을 추가로 결합해 정책적 함의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3. 국선전담변호사¹²⁾

국선전담 변호사는 이 장에서 다루는 공직 내지 공공기관에 진출한 변호사 직군과는 고용

12) 경력, 근무지역, 재직기간 등 기본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각 법원행정처(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원행정처에서는 ‘별도의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보제공이 불가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공단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선행연구를 상당수 참고하였다.

형태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의 경우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속한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는 법원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하는 개업 변호사, 즉 비과세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구조의 성격을 가지며,¹³⁾ 전통적인 법률가의 진출영역(검찰, 군, 경찰, 국회 등)에 비해 비교적 최근 도입된 제도라는¹⁴⁾ 점에서 공익적 법률가 직역에 포섭하여 분석함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와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와 진출 현황을 살펴본다.

(1) 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 개괄

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는 법원이 해당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변호사 중에서 국선변호 사건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일정 기간 동안 위촉하여 운영하는 제도로(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 2004년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2026년 현재까지 약 23년간 확대·발전되어 왔다.

인원 등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제도 도입 당시 전국적으로 11명에 불과하던 변호사 수는¹⁵⁾ 2026년 현재 254명으로¹⁶⁾ 약 23배 가량 규모가 확대되었고, 국선전담변호사가 활동하는 법원(지원 포함)의 수도 2004년 6개에서 2014년 기준 37개로 크게 늘어났다.¹⁷⁾ 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가 처리하는 사건 건수는 월 20 - 35건 사이(대법원의 경우 월 30 - 50건 사이)에서 해당 법원 사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며,¹⁸⁾ 이때 월 사건 건수는 심급당 1건으로 계산하고 있다.

국선전담 변호사의 경우 법원과의 계약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 사건 이외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사건종결 후 1주일 이내에 법원에 보고할 의무를 지니는데,¹⁹⁾ 이들의 기본 위촉 기간은 2년이며, 선발된 각급 법원에서 2회의 재위촉이 가능해 총 6년 동안 활동할 수

13) 김봉수,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한 고찰 - 피의자 및 피해자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제34권 제4호, 2023, 323면.

14) 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는 2004년,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는 2013년 각 도입되었다.

15) 양시훈,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02, 2014, 24-29면.

16) 26. 1. 26.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청구 회신.

17) 양시훈, 앞의 글, 29면.

18) 법원행정처 등, 25. 12. 2026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19) 양시훈, 앞의 글, 29면.

있다.²⁰⁾ 보수는 국선전담 변호사 근무경력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국선전담 변호사 근무 경력이 없는 경우 최초 위촉 시 600만 원, 1회 재위촉 시 700만 원, 2회 재위촉 시 800만 원이고, 국선전담 변호사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4년 이하 근무 경력이 있을 시 700만 원, 4년 이하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800만 원이다.²¹⁾ 사무실은 관할 법원에서 관할 내 공동사무실을 무상 제공하나, 사무실의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별도이고, 열람등사 수수료, 직원 월급, 기타 제반 비용 등 사무실 운영비 역시 개별 국선전담 변호사들이 각자 처리하고 있다.

(2)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 개괄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변호사를 위촉하고(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검사가 변호사가 없는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 검사가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지정하여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2013년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올해로 14년 차를 맞았다.

인원 등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제도 도입 당시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하여 국선전담 변호사 11명을 위촉하였는데,²²⁾ 2026년 현재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는 총 50명으로,²³⁾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약 5배가 늘었고, 지역 역시 2013년 11곳에서 2024년 35개 곳으로²⁴⁾ 약 3배 확대되었다.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의 공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다. 보수의 경우 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와 동일하게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로서 활동한 경력²⁵⁾ 2년 미만인 경우 월 600만 원,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월 700만 원, 4년 이상인 경우 월 800만 원을 지급한다.²⁶⁾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20) 6년의 위촉 기간 이후에는 최초 위촉과 동일하게 각급 법원에 재지원해 위촉되어야 한다.

21) 보수는 모두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6. 1. 26.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청구 회신.

22) 참고로 제도 도입 초기에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각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를 위촉하여 법무부 위촉 변호사들은 전국 원스톱센터에, 법률구조공단 위촉 변호사들은 각 공단 지부에 근무하였으나, 2014년 법무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하여 국선전담변호사의 소속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다. 정명숙, 국선변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103면.

23) 26. 1. 22.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공개청구 회신.

24) 김지원, 형사절차상 피해자변호사제도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77-79면 표 재구성.

25) 활동 경력 산정 시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로서 활동하다가 사직 후 다시 채용된 경우에는 과거 활동경력을 포함하며, 정직 및 휴직 기간은 산입 하지 않고,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그 휴직 기간을 활동 경력에 산입한다(다만 이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만 산입함).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전국 시·도의 해바라기센터(원스톱센터) 및 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근무하는데 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무실 및 운영비 등의 지원은 별도로 없고,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우 월 60만원 상당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가 배정받는 사건 건수는 월 25건(피해자 별) 내외를 기준으로²⁷⁾ 해당 검찰청 사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한다. 이때 월 사건 건수는 심급제한이 없고, 피해자 1인 당 수사단계 1건, 공판단계 1건으로 총 2건으로 계산한다.²⁸⁾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역시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근로 계약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매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사건처리경과 및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 표 2-16 】 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와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 개괄

구분	도입시기	총 인원	월 배당 건수	제한 및 의무	위촉 기간
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	2004년	254명	20~35건	수임제한 및 보고의무	2년 (2회 재계약 후 재위촉 필요)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2013년	50명	25건 내외	겸직제한 및 보고의무	2년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표 2-17 】 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와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보수 비교

구분	보수
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	• 2년 미만 600만 원 • 2년 이상 4년 미만 700만 원 • 4년 이상 800만 원 (사무실 운영비용 각자 부담)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 2년 미만 600만 원 • 2년 이상 4년 미만 700만 원 • 4년 이상 800만 원 (센터 근무의 경우 약 60만 원 운영비 추가 지원)

26) 보수는 모두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앞의 글.

27) 2025년 기준

28) 피고인이 여러 명인 사건이라도 1건으로 산정한다.

4.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의의 및 현황

공공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위 법 제5조에 따라 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 자체수입비율 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공기업은 다시 자산규모와 자체수입비율을 고려하여 시장형·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 관리 유무를 기준으로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6. 1. 기준으로 공공기관은 331개 기관이 있으며, 구체적인 공공기관 수에 관한 통계는 아래와 같다.

표 2-18 공공기관 개수 및 요건²⁹⁾

구분	개수	요건
공기업	계	31 직원 정원이 300명, 총수입액이 200억원,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기금관리기관은 85%) 이상인 공공기관
	시장형	14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예: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등)
	준시장형	17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등)
준정부기관	계	57 직원 정원이 300명, 총 수입액이 200억원,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기금관리기관은 85%) 미만인 공공기관
	기금관리형	12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예: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위탁집행형	45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생태원, 한국장학재단 등)
기타공공기관	243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 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예: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술의 전당 등)
계	331	

29) 재정경제부,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s://www.alio.go.kr/organ/organDisclosureList.do> (2026. 3. 4. 접속)

(2) 데이터 수집 과정 및 한계

1) 데이터 수집 과정

본 연구의 대상 기관 선정 및 데이터 수집은 다음과 같은 3단계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 재정경제부 지정 331개 공공기관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리걸(legal)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³⁰⁾ 통해 데이터 크롤링 기술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근 5개년(2021~2025) 동안 변호사 채용공고가 1회 이상 게시된 기관을 추출한 결과, 총 159개 기관이 1차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둘째, 선별된 15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 1. 1. 기준 변호사 인력 현황, 고용 형태, 담당 업무, 보수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셋째, 최종 분석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다. 정보 공개 답변 결과, 변호사가 현재 재직 중이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핵심 정보를 비공개한 기관을 제외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다른 경로로 변호사가 재직 중인 점 등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변호사가 실제 재직 중이며 연봉 정보를 포함하여 유의미한 비교 분석이 가능한 76개 기관을 최종 분석 대상 기관으로 확정하였다.

2) 데이터 응답의 한계

데이터는 정량적 데이터(인원, 비율, 연봉, 경력 연수)와 정성적 데이터(담당 업무, 소속 부서, 직급 명칭)가 혼재된 데이터이다 보니, 일부 기관은 연봉 산정의 구체적 액수 대신 ‘사내 규정에 따름’ 등 형식적인 답변을 제공하여 분석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재직 인원이 소수인 기관의 경우, 특정 개인 식별 우려로 인해 연차나 구체적인 보수 구간을 비공개 처리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한편 채용공고 이력은 있으나 조사 시점 기준 낮은 처우 등으로 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하였거나, 퇴사 등으로 인해 변호사가 재직 중이 아닌 상태인 기관이 다수 존재하여, 실제 진출 현황은 채용 수요보다 다소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3) 공공기관 내 공익적 변호사 현황 분석

1) 재직 규모 및 조직 내 비중

재직 인원과 전체 임직원 대비 변호사 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76개 분석 대상 기관에 재직 중인 변호사는 총 449명으로 집계되었다. 기관당 평균 재직 인원은 약 6.0명이나,

30) 주식회사 리걸어시스턴스.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정부법무공단과 같은 대형 기관들의 집중 현상에 따른 이른바 착시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재직 인원 분포도를 살펴보면, 1인 단독 재직은 26개 기관(34.2%), 2~3인 재직은 24개 기관(31.6%), 4~5인 재직은 8개 기관(10.5%), 6인 이상 재직은 18개 기관(23.7%)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기관의 약 66%가 3인 이하의 소수 변호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내 법무 기능이 별도로 조직화되기보다는 특정 부서 내 '1인 사내변호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19】 공공기관 내 변호사 재직 인원

변호사 재직 인원	기관 수(%)
1인	26개 (34.2%)
2~3인	24개 (31.6%)
4~5인	8개 (10.5%)
6인 이상	18개 (23.7%)
계	76개

다음으로 임직원 대비 변호사 비율을 살펴보면, 0.1% 이하는 23개 기관, 0.1%~0.5%는 22개 기관, 0.5% 초과는 31개 기관이다. 대다수 기관에서 1% 미만의 낮은 비율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기관 규모 대비 상시 법무 인력의 확충 정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20】 공공기관 내 임직원 대비 변호사 비율

임직원 대비 변호사 비율	기관 수
0.1% 이하	23개
0.1% 초과 0.5% 미만	22개
0.5% 초과	31개
계	76개

2) 근무 기간

재직 중인 변호사들의 경력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 기관에 여러 명이 근무하는 기관의 경우 범위 또는 평균으로 제시하는 기관이 많았고, 미공개하는 경우 또한 상당수 존재하여(76개 기관 중 34개 기관) 의미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총 재직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221명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어, 1년 미만은 31명 (14.0%), 1년~3년은 60명 (27.1%), 3년~5년은 27명 (12.2%), 5년 이상은 103명 (46.6%)이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상 한 기관에서 장기근속 중인 변호사가 103명(약 4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공공기관에 진출한 변호사들이 일정 기간 조직에 적응한 후에는 해당 기관의 고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3년 미만으로 근무한 변호사 수 또한 91명(약 41%)에 달한다. 이는 최근 2~3년 사이에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나, 반대로 초기 3년 이내에 민간 등으로 이직하는 인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표 2-21 ■ 공공기관 내 변호사 근무 기간

해당 기관 내 근무 기간	인원
1년 미만	31명(14.0%)
1년 이상 3년 미만	60명(27.1%)
3년 이상 5년 미만	27명(12.2%)
5년 이상	103명(47%)
계	221명

3) 고용 형태 및 직급/직위

고용 형태와 직급/직위는 각 기관마다 인사체계가 상이하여 명칭 등에서도 차이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된다고 생각되는 명칭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계약직/임기제가 39개 기관 (51.3%), 정규직이 32개 기관 (42.1%), 무기계약직이 5개 기관 (6.6%)으로 나타났다. 1~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된 기간제 및 전문계약직을 계약직/임기제에 포함하였고, 기간의 정함은 없으나 정규직과는 별도의 직군으로 관리되는 경우를 무기계약직으로, 별도의 기한 정함이 없는 일반직으로 채용된 경우를 정규직으로 분류하였다. 전체의 51.3%가 계약직 또는 임기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변호사가 공공기관 내에서 상시적인 조직 구성원이기보다 ‘외부에서 영입된 한시적 전문가’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특히 대형 공기업조차 ‘별정직’이나 ‘전문계약직’이라는 명칭을 통해 정규직 인사 체계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계약직이 혼재된 기관도 다수 확인되어,³¹⁾ 조직 내에서 변호사의 직업적 안정성 및 정체성 확립이 시급한 정책 과제임을 알 수 있다.

31) 동일한 기관 내에서 고용 형태가 혼재된 경우, 장기근속 중으로 수년 전에 채용된 변호사는 정규직이고, 근무 기간이 0년~3년 이내인 최근에 채용된 변호사는 계약직인 경우가 몇몇 존재하였다.

표 2-22 공공기관별 변호사 고용 형태

고용 형태	기관 수
계약직/임기제	39개(51.3%)
정규직	32개(42.1%)
무기계약직	5개(6.6%)
계	76개

직급/직위의 경우 다인원이 근무하는 기관에는 다양한 직급 및 직위가 존재하고, 각각 어떤 직급/직위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분석에 난점이 있었다. 또한 같은 3급이라도 기관에 따라 지위 및 처우에 차이가 있는 만큼 자의적으로 개인이나 기관을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크게 관리 및 상급 직위, 실무 책임 직위, 일반 실무 직위의 세 가지로 나누어 분류하고 전체적인 분포 정도를 미루어 파악하였다. 관리 및 상급 직위는 차장, 부장, 1~2급, 수석변호사, 팀장 등으로 명명되며 부서 전체를 총괄하거나 10년 이상의 고경력을 필요로 하는 상급 보직자들을 포함한다. 실무 책임 직위는 차장, 3급, 책임변호사, 선임연구원, 전문직 3급 등에 포진하고 있다. 단독으로 법무 업무를 완결하거나 중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직급으로 가장 많은 변호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실무 직위는 과장, 대리, 4~5급, 변호사, 전임연구원 등이 해당하며, 신입 또는 주니어급 변호사가 주로 배치되며, 일반 행정직의 대리~과장급 처우를 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중 상당수 기관이 '3급' 또는 '차장/부장급'을 변호사 채용의 기본 직급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 자격 자체를 약 3~5년 정도의 일반직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경력직 우대 채용' 관행이 공공기관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소속 부서 및 담당 업무

우선 법무실, 법무팀, 준법지원부, 리스크관리실 등으로 대표되는 법무·준법 전담 부서는 35개 기관(46.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대개 독립된 법무 조직을 갖춘 경우로, 대형 공기업이나 법률 전문성이 핵심인 준정부기관에서 주로 나타난다. 기획·경영·전략 부서는 15개 기관(19.7%)으로 기획조정실, 경영지원부, 전략기획처 등이 해당하며,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법률 지식을 경영 전략에 통합하여 활용하는 형태이다. 사업운영팀, 고객지원센터, 기술사업화부 등이 포함된 현업·사업·지원 부서 역시 15개 기관(19.7%)으로, 특정 사업이나 현장의 민원, 계약 등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사·청렴 및 인사·노무 부서는 4개 기관(5.3%)으로 감사실, 청렴팀, 노사협력팀 등

이 포진되어 있다. 내부 감찰이나 징계, 노사 분쟁 대응 등 특수 목적을 위해 변호사를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미기재한 기관도 7개 기관(9.2%)에 이르나 그 내용으로는 주로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을 통해 전체의 55% 약 절반가량이 전담 법무 조직에 속해 있으며, 나머지 45%의 변호사들은 기획, 경영, 심지어 사업 현업 부서에 분산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담당 업무 또한 과거 소송 수행 및 자문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ESG 경영, 내부통제, 국회 대응 등의 업무가 추가되는 추세가 확인된다. 변호사의 역할이 최근에는 리스크 관리 및 전략 기획 부서로 확장되어 감에 따라 기관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사업 집행 과정에 실무적으로 깊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5) 급여, 각종 수당 등 보수

급여와 성과급, 각종 수당을 포함한 보수 데이터는 기관마다 기재 방식(기본급만 기재, 성과급 포함 여부 미정, 범위로 기재 등)이 매우 달라 분석에 가장 난도가 높았다. 연봉의 경우 많은 기관이 특정 액수가 아닌 범위를 제공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범위가 제시된 경우, 해당 범위의 중간값을 대푯값으로 설정했고, 재직 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 중간값을 재직자 모두에게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성과급 포함 여부에 따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성과급을 포함하여 기재하면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되,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표기한 경우는 ‘중간 등급(C 또는 B)’ 기준 액수를 우선 채택하였다. 성과급을 별도로 미포함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된 기본급에 공공기관 평균 성과급 비중(약 10~20%)을 임의로 더하지 않고, 기재된 확정 금액만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초임’을 기준으로 답변한 경우도 재직자 모두에게 초임대로 부여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값을 바탕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개인별 연봉을 추산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6,000만 원 이하는 249명(55.5%),³²⁾ 6,000~8,000만 원은 108명(24.1%), 8,000~1억 원은 59명(13.1%), 1억 원 초과는 33명(7.3%)이다.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시 보수 규정상의 하한선을 기재하는 경향이 있어, 이 통계는 공공기관 변호사가 보장받는 최소한의 처우 수준에 가까우며, 실제 변호사가 수령하는 총급여는 분석된 수치보다 다소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통계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일부 미기재한 기관의 성과급이나 복지포인트 등을 제외

32) 6,000만원 이하 구간에는 대형 공기업의 신입(5급) 채용 인원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관은 기본급 위주의 응답을 제출한 경우가 많아, 경영평가 성과급이 합산될 경우 실제로는 6,000~7,000만원 수준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

했으며, 특히 대규모 인력을 보유한 일부 기관들이 ‘초임/기본급’ 기준으로 답변함에 따라, 6,000만 원 이하 구간의 인원수가 크게 산출된 점도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표 2-23】 공공기관별 변호사 보수 수준

보수 수준	인원
6,000만 원 이하	249명(55.5%)
6,0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108명(24.1%)
8,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59명(13.1%)
1억 원 초과	33명(7.3%)
계	76개

6) 지역적 분포 및 상관관계 분석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비수도권 (혁신도시 등)은 42개 기관(55.3%), 서울·수도권은 32개 기관(42.1%)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연봉은 비수도권이 약 7,400만 원, 서울·수도권이 약 6,770만 원이었다. 비수도권 소재 기관의 평균 연봉이 수도권보다 약 600만 원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대형 공기업(나주, 울산 등)들이 지역 근무의 불리함을 높은 보수로 상쇄하고자 수도권 소재 소규모 공공기관보다 높은 처우를 제공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역으로 원래 처우가 높은 시장형 공기업이 다수 지방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변호사 개인이 특정 지역에 연고가 있어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하면서 장기 근속하게 됨에 따라 정보공개로 드러난 연봉이 높은 경우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4】 지역별 공공기관의 변호사 보수 수준

기관 소재지	기관 수	평균 연봉
비수도권	42개(55.3%)	7,400만 원
서울·수도권	32개(42.1%)	6,770만 원

7) 소결

공공기관 내 변호사 현황 분석 결과, 공공기관 변호사 생태계는 ‘직무 영역의 고도화’와 ‘인사 체계의 저성장’ 사이의 불균형으로 요약된다. 분석 대상 기관의 약 66%가 3인 이하의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는 ‘1인 사내변호사’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역할 또한 전통적인 송무를 넘어 ESG 경영, 내부통제, 전략 기획 등 기관 경영 전반의 핵심 파트너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실태 조사 결과, 변호사 개인 기준 55.5%에 달하는 인원이 6,000만 원 이하의 낮은 보수 구간에 머물러 있고, 과반수가 계약직 신분으로 채용되는 등 보상과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임시적 보조 인력의 처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직무와 책임은 확장되었지만,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의 괴리는 법조 인력의 장기근속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역적 불리함을 보전하기 위한 비수도권 공기업 중심의 보수 역전 현상은 법조 인력의 지역 분산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정주 여건 지원 등 다각적인 유인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결국 공공기관 변호사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개선과 더불어, 확장된 직무 외연에 걸맞은 체계적인 인사 관리 및 보수 시스템의 합리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III

공공 영역 내 공익적 변호사의 활동 및 사례 분석

1. 중앙행정기관

(1) 중앙행정기관 근무변호사의 행태에 관한 인터뷰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의 활동과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3명의 중앙행정기관 재직 변호사 3명(A, B, C 변호사)과 대면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외에 분석의 풍부함을 위하여 별도로 3명의 짧은 전화인터뷰(현직 2명, 전직 1명)를 진행하였다. 기관은 외교부,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소방청,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변호사들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민간경력직 채용(5급), 임기제공무원(5급), 기관 주사채용(6급)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직자 중에는 다른 공직에서 일을 하다가 전직한 사례들도 존재한다. 인터뷰 시기는 2026. 1.부터 2026. 3. 사이에 이뤄졌다.

대면 인터뷰를 한 A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기존에 광역시의회 및 공공기관 2곳에서 재직 경력이 있다. B 변호사는 인터뷰 당시 법무부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며, C 변호사는 현재 외교부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기존에 교육청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 경력이 있다. 3명의 변호사는 모두 사무관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전화 인터뷰를 한 D 변호사는 현재 사무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전에 경찰청에서 경감으로 근무하였다. E 변호사는 현재 개업변호사이며 조달청에서 임기제 공

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F 변호사는 경기소방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6급으로 입사하여 현재 5급 상당의 지위에 있다.

(2) 공직의 입직 경위 및 동기에 관한 탐색

변호사들이 중앙행정기관에 입직하게 되는 경위는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적은 숫자의 변호사들에 대한 인터뷰로 보편화할 수 없지만, 본인들이 관찰한 동료들의 이야기까지 듣고 보면 서로 다른 이유로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위는 실제 지향하는 근무부처에 따른 선호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A: 사실 로스쿨 재학 당시 특별히 공직을 지향하겠다는 생각이 있진 않았습니니다. 변호사시험 합격후 지도교수님의 추천으로 광역시의회에서 실무실습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다음 직장도 자연스럽게 공공기관쪽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그렇게 공공영역으로 커리어가 주로 이어져왔습니다.
- B: 공직을 택한 것은 무언가 변호사로서 업무를 시작할 때 그냥 일반송무분야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뭔가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고, 나름의 전문성을 쌓아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 C: 처음에는 일반적인 변호사로 송무를 배우면서, 여성인권 등 관심 있는 공익분야에서 활동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 송무보다는 조금 더 정책적인 분야라고나 할까 그런 쪽이 더 적성에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익전담변호사로 진로도 생각해 보았는데, 송무보다 다른 영역의 일을 해보고 싶다는 점에서 공직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 같아요.
- E: 그냥 막연히 변호사로만 있기 보다는 공직에서 한 번 일을 해보고 싶었고 궁금했던 측면이 컸던 것 같아요. 들어가보니까 이유들은 서로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업무에 대한 호기심이나 경력을 쌓기 위한 경우는 당연히 있지만, 송무나 영입에 대한 압박을 기피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은 대전이었는데 저는 대전에 아무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갔지만, 대전에서 일하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공직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i)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ii) 송무나 영리적 영역에 있어서 적성이 맞지 않은 것에 대한 대안으로 공직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iii) 공익적 분야를 지향하지만 공익전담변호사는 처우가 나쁘거나 자리가 많지 않아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직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다.

(3) 공직에서의 전문성과 일할 기회

공직에서 일하는 가장 큰 장점은 업무적인 전문성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에서 일반적인 송무변호사가 경험하기 어려운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 A: 현 직장에 재직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일한 곳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장 소나 여건 처우 등이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해당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맡게되는 사무가 굳이 변호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법률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니 지금 있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에서 현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급여는 오히려 깎였고 근무시간은 늘어나는 등 정량적 측면은 손해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직장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적 업무적 만족도는 더 커졌습니다.
- B: 공직이나 공공분야 근무의 가장 큰 장점은 업무의 목적이 의뢰인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공익과 제도 운영이라는 더 큰 기준 위에서 법률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법무부와 같은 기관에서는 단일 사건의 승패를 넘어,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주요 사건을 통해 정책·행정·외교적 맥락까지 함께 고려한 법적 판단과 대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민간 송무 변호사로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유형의 사건과 협업 구조를 접할 기회가 많아, 법리 검토뿐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 자료 축적과 선례 정리 같은 국가 법무 역량의 기반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 C: 저는 정책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해서 일반적인 사내변이나 송무변호사가 다루지 않는 일들을 해볼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특별히 수임에 대한 압박이나 송무의 승패에 대한 부담감, 의뢰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적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조직에서는 어떤 업무적 긴장감이나 부담감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송무가 잘 맞는 분야는 아니었고 공직에서 정책 기반의 일을 하는게 저는 더 보람이 있고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변호사가 하는 일에서 벗어나 여러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또 본인만의 독특한 경력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업무에서 다루게 되는 전문성이 공직 이후를 고려했을 때 법률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떤 기관의 경우 처우가 좋지 않더라도 공직 이후를 고려하여 경쟁률이 높은 자리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처우도 특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 경험이 주는 기대이익이 낮은 경우 빠른 이직 또는 낮은 경쟁률로 이어질 수 있다.

- D: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나갔을 때 무슨 전관예우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직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민간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분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이진 않죠. 저는 사실 그 전에 일하던 곳(공직)이 처우는 더 좋았어요. 그런데 뭔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오게 된 것이죠.
- E: 저는 조달청 근무를 끝내고 나서, 대전에서 개업을 하게 되었고 조달청 관련 송무도 어느 정도 하게 되긴 했어요. 그러나 실상 인기 있는 부처랑 달리 조달청은 특별히 이 경력을 살려서 개업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 경험상 조달청 업무 경험을 변호사 개업해서 살리는 것은 절반도 되지 않을거예요.
- F: 사실 우리 기관은 무엇을 하는 곳이다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소수의 인원을 간헐적으로 소방령(5급)으로 뽑았었고, 현재는 대부분 소방경(6급)으로 채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역별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래 국세청이나 경찰 같은 곳은 재직 이후 개업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크지만, 우리 기관은 그런 성격은 아니죠. 다만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코로나19 이후 송무 변호사들에 대한 처우나 급여가 올랐고, 그러면서 인기 기관이 아닌 이상 공직에 대한 지원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공직에서의 경험을 갖고 민간영역에서 다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해야 할 고민을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공직 이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임기제 공무원 등의 지위에서 신분이 불안정하거나, 6급 등 상대적 처우가 낮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후’를 고려해야 하는 비교형량을 할 수 있다.

(4) 고용안정성 및 처우 그리고 재직기간의 문제

공직에 진출한 경우에 계속해서 근무를 할 생각을 갖는 이들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짧은 경우는 임기제이거나 6급 채용인 경우로 보인다.

- A: 현재 일하는 기관에 변호사 중에는 6급으로 들어온 분도 아직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제가 전해 알기로는 한동안 6급 또는 7급 채용이 있었는데 대부분 퇴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제 변호사 6급 이하 채용은 이제 하지 않는 쪽으로 인사정책을 변경했다고 알고 있어요. 기관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요.
- D: 제가 알기로 6급으로 한동안 채용은 했는데, 거의 다 나가셨어요. 작년에 민간경력채용 5급을 새로 뽑았는데 기존에 6급으로 일하던 분이 지원해서 채용되었거든요. 6급으로 일하다가 5급 사무관 승진이 된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작은 조직이다보니까 승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회가 있으면 나가셨던 것 같더라구요.

기관 입장에서 6급으로 입사를 한 변호사가 자꾸 나가고, 채용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임기제 공무원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선택을 한다.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장기적 전망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해당 직무가 송무와 직결되는 것도 아니라면 장기적인 커리어나 전망을 세우는 문제가 있다.

B: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임기제로 일하는 이들이 많은데, 하는 일에 비해서 보상이 많은 편도 아니고 검사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래 일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법무부의 경우 여러 변호사들이 일하는데, 체감상 저연차 변호사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경력 검사를 지원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는 있습니다.

C: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연차는 쌓여가고 경험이나 업무범위도 넓어졌지만 임기제 공무원은 승진을 할 수 없고, 파견이나 연수 대상도 아닙니다. 또 이전 직장에서의와 마찬가지로 같은 업무만 장기간 반복하다 보면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지금의 조직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항상 있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가 항상 고민이 됩니다.

E: 저는 임기제로 근무했지만, 제가 일했던 기관에는 6급이 지금도 꽤 있죠. 그런데 사실 승진조차 보장되지 않아서 간간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조달청 입장에서는 일정한 숫자의 변호사는 업무상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요. 그리고 임기제든 6급이든 한 번 TO가 생기면 그걸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불만있는 사람은 나가고, 불만이 있더라도 다른 사정으로 그냥 다니는 사람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했던 것에서는 업무상 몇 명 정도의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기관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결국 예산 문제죠.

정보공개청구 결과 나타난 보건복지부의 경우 14명의 일반직과 7명의 계약직이 있는데 7명의 계약직은 평균 재직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는 것은 결국 처우의 문제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원편제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기관의 업무특성상 해당 업무에 변호사를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변호사를 짧게 채용해서 쓰는 경우 업무연속성이나 전문성의 축적이 유실된다는 점에서 기관차원에서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관에 따라서 6급으로는 처우 등의 이유로 변호사들의 재직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 등의 형태로 고용안정성은 낮지만, 급여는 당장 더 나은 방식으로 변호사 인력을 충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5) 지역의 문제

중앙행정기관은 대부분은 서울, 과천, 세종, 대전 등에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지역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큰 요소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매력이 지역 요소를 초과하는지는 개별적인 지원자의 성향에 따른 측면으로 파악된다.

- A: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사유로 '직장의 위치'도 적잖게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 것 같습니다. 로스쿨 동기 중에는 세종의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이들도 몇 명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있는 동기들이죠. 그런데 저로서는 개인적 사정상 세종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중앙행정부처에서 근무할 수 있는 민간경력직공채 시험에는 지원한 적은 없었어요.
- B: 사실 산업부에 합격을 했을 때 별다른 연고가 없는 세종시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망설였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꼭 세종시여서 안간 것은 아니지만, 공직이나 공공기관 중에 지역에 위치한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 E: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은 대전이었는데 저는 대전에 아무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갔지만, 대전에서 일하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A 변호사는 서울의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직을 하였다. 이직의 계기는 기존 직장에서의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고 본 것이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상 세종시로 이주하기는 어려웠고 과천에 소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지원을 한 경우였다. B 변호사는 법무부에 임기제로 먼저 취업을 한 이후 민간경력공채에 합격하여 산업부로 근무할 수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하던 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이직을 포기하였는데 그 이면에는 연고없는 지역으로 혼자 이사가는 것에 대한 망설임도 작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E 변호사의 경우 본인은 연고가 없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간 경우였지만, 대전에서는 대전에 있다는 이유로 지원하고 재직 중인 동료 변호사들도 많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에 관한 훨씬 광범위한 기초자치단체에 비하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결정적인 이슈인지는 판별하기 어려워 보인다.

2.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의회,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총 2명의 변호사를 인터뷰하였다. 1) 수도권 지역 기초지자체에서 장기 근속한 G와, 2) 비수도권 지역 광역지자체에 재직 중이면서 과거 다양한 공공영역 경력을 보유한 H이다. 두 사례를 통해 공공 영역의 공익적 변호사의 진입 경로, 업무 특성 및 장점과 단점, 조직 내 역할, 장기 근속의 가능성과 한계등을 살피고자 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 진출 계기: 행정에 대한 관심과 공익적 가치 추구

지자체 변호사로의 진출 계기는 크게 ①행정 업무에 대한 선행적 관심, ②공익적 가치 추구, ③일·가정 양립 등 생애 주기적 필요로 나뉜다. G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이전부터 행정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전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인허가 행정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지자체 진출의 결정적 동기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H 변호사의 경우 공익적 가치 추구가 진출의 주된 동기였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그는 기관 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경험을 통해, 제도까지 바뀌야 전체적인 정말 많은 큰 현장의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실천하였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 변호사가 단순한 법률 자문 및 해석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닌 법적 인프라 구축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2) 지자체 근무의 장점과 단점: 업무 안정성과 전문성 개발의 딜레마

지자체 근무의 가장 큰 장점은 ①업무 강도의 적정성, ②일·가정 양립 가능성, ③복지 제도 활용, ④법률 지식만으로 기여 가능한 구조 등이다. G 변호사는 퇴근 후 업무가 이어지지 않는 점을 주요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퇴근하면 업무는 거의 다 끝이라는 점에서 송무 변호사와 확연히 구분된다고 하였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육아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활용은 육아를 병행하는 변호사에게 경력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H 변호사는 지자체 변호사의 주된 장점을 “자율성”과 “제도 개선 기회”로 설명하였다. 특히 법령·조례 개정, 매뉴얼 작성, 약관 검토 등 “체계를 잡는” 일을 수행하며 보람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자체 근무의 단점도 명확하다. 가장 큰 문제는 ①직접 소송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한계, ②1인 변호사 체제의 고립감, ③조직 내 변호사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④형식적 업무의 부담 등이다. G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재직하지 않다 보니까 직접 소송 경험은 부족하며, 관련 경험을 좀 해야 되는거 아닐까 라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1인 변호사 체제로 인한 고립감도 주요 단점이다. G 변호사는 “소속(다른 변호사)은 없다”며, 주변 시·군 변호사와의 네트워킹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H 변호사도 특히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인력이 적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고립감이 심화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특정 기관에 근무하는 변호사들의 경우 중앙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간담회 및 전국 소속 변호사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점이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조직 내 변호

사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H 변호사는 “공공기관 안에서 이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 근데 그게 약간 서로 잘 공유가 안 되는 느낌”이라고 하며, “변호사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G 변호사도 공무원 사회의 형식적인 부분들(관련 없는 회의 참여, 형식적 업무 동원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

(3) 변호사의 전문성 발휘 가능성과 필요성

지자체 변호사는 크게 ①법률 자문, ②소송 지원, ③조례·법규검토, ④청문 주재, ⑤행정심판 검토, ⑥제도 설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G 변호사는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서 기본 업무는 법률 자문이며, 소송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담당 부서의 서면·재판 대응에 대해 자문하는 방식으로 ‘소송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조례안을 사전 검토하고 처분 전 청문절차를 주재하는 등 행정의 적법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H 변호사는 공적 영역에서 변호사의 핵심 기여를 ‘제도 설계’에서 찾았다. 그는 기관 간 피해자 지원 체계를 연결하고, 제도의 안내·홍보 체계를 개선하는 등 구조적 개입을 수행하였다. 또한 제도 운영 매뉴얼, 고충심의 절차, 약관 등을 검토하며 제도 운영의 표준을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그는 변호사의 독특한 역할을 현장의 불편과 고충을 ‘법적 쟁점으로 구조화’하는 능력으로 설명하였다. 비전문가가 단순 불만으로 인식하는 문제를 변호사는 규범·절차·권한 배분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이 실제 법령·지침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증언은 공적 영역에서 변호사의 필요성이 단순한 사후적 소송 대응이 아니라 ①법치주의 원칙의 일상적 구현, ②행정 리스크의 사전 관리, ③제도적 공백의 발견과 보완, ④공무원의 법률 역량 제고에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내부 변호사 확충은 외부 고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일부 대체함으로써 재정 효율성 측면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4) 장기 근속의 장애 요소

지자체 변호사의 장기 근속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제도적 장애는 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재직 연한 제한이다.³³⁾ G 변호사의 경우 최초 2년 계약 후 매년 연장하는 구조로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나, 5년 만기 후에는 연장이 아니라 재공고 절차를 거쳐 재입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근속은 인정되더라도 보수는 하한으로 조정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33) 공무원 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으로 제한된다.

있음을 진술하였다. 또한 매년 계약 갱신 구조는 상시적 고용 불안을 초래한다. G 변호사는 매년 기간 연장 시점마다 불안감을 경험하며, 특히 육아휴직 사용 시 근무평가 공백으로 갱신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이는 임기제 제도가 경력 연속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장애 요소는 1인 변호사 체제에서 발생하는 고립감과 학습 기회의 제한이다. G 변호사는 동일 기관 내 동료 변호사가 없고, 인근 지자체 변호사와의 교류도 부재하다고 하였다. H 변호사 역시 혼자 일해야 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업무적·정서적 고립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세 번째는 경력 전망의 불확실성이다. G 변호사는 지자체 업무에 적응하며 행정 분야 역량은 향상되었으나, 외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나 개인적 성장에 대한 확신이 약화될 수 있다고 토로하였다. 이는 공공부문 장기 근속이 전문성의 심화로 이어지는 한편, 다른 영역으로의 이동 가능성을 제약하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G 변호사는 내부 자문 중심 업무 구조로 인해 송무 경험이 축적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포트폴리오가 제한될 수 있다는 고민을 언급하였다. 이는 지자체 변호사 직무가 고도의 법률 판단을 요구함에도, 경력 관리 측면에서는 ‘사건 경험’ 축적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5) 장기 근속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

지자체 변호사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①네트워킹 구축, ②5년 기간 제한 완화, ③처우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요구된다. 우선 유사 기관에 근무하는 변호사들 간의 네트워킹 구축은 1인 변호사 체제의 고립을 완화하고, 유사 사건에 대한 대응을 표준화하며, 정책·소송 정보의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G 변호사는 지자체 소속 변호사를 모아 간담회 등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면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선행 판결·대응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H 변호사 역시 전국의 관련 기관 소속 변호사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정책 대응과 매뉴얼 개정 정보를 공유하는 경험을 제시하며, 네트워킹이 업무 효율성과 직무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높인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지자체 변호사 직군에서도 광역·전국 단위의 상설 협의체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임기제의 5년 제한의 확대 적용과³⁴⁾ 재공고 절차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현행 구조에서는 5년 만기 시점에 고용 안정성이 단절되고 보수도 하향 조정될 수 있어, 숙련 인력이 이탈

34)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6항에 따라, 5년에 이르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 공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5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할 유인이 커진다. 장기 근속을 촉진하려면 ①최대 근무기간의 연장, ②5년 제한의 확대 적용, ③재임용시 조건 현실화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처우 개선은 우수 인력 유치와 직무 지속성의 핵심조건이다. G 변호사는 변호사 직급 상향 등 보수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H 변호사는 특히 경찰 등 타 공공기관의 경우 처우가 개선되면 변호사 인력의 지원이 늘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의료 인력에 적용되는 전문 임기제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법률 전문인력 또한 일반임기제의 적용이 아닌 별도의 보수·승급 체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6) 소결

두 사례는 공공 영역에서 변호사가 ①법치주의 원칙의 일상적 구현, ②행정 리스크의 사전 관리, ③제도적 공백의 발견과 보완, ④공무원의 법률 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①임기제의 재직연한 제한으로 인한 고용불안, ②1인 변호사 체제의 고립, ③송무 경험 축적의 제약 등이 장기 근속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지자체 변호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채용 확대와 함께, ①고용 안정성 보장(5년 제한 완화 및 재임용 절차 개선), ②광역·전국 단위 네트워크 구축, ③보수규정 개정을 통한 처우 개선 등 다층적 거버넌스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3. 국선전담변호사

국선전담 변호사의 활동과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피해자 국선전담, 피고인 국선전담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26. 1. 경 각 대상자 별 대면 심층 인터뷰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사전 서면 인터뷰의 설문은 총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기본 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자격취득 시기, 소속 기관명, 근무 기간 및 담당 업무, 소속 기관의 주요 활동 분야를 질문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국선전담 변호사의 진로를 선택하게 된 동기와 그 과정에서 받은 영향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특징과 고유한 공익적 기능 내지 사회적 책무성 및 겪게 되는 어려움을 질문하였다. 마지막 부분은 국선전담 진로의 전망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기본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표 2-25 ■ 연구 참여 국선전담 변호사

이름	소속	경력	재직 기간	비고
I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변시 3회	6년 이상 7년 이하	공직 경험 有
J	서울권 법원 위촉 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	변시 8회	1년 이상 2년 이하	공직 경험 有
K	서울권 법원 위촉 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	사시 40기	14년 이상 15년 이하	공직 경험 無

(1) 담당 업무와 근무 형태

인터뷰 대상자들이 밝힌 자신의 담당 업무와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다.

I: 제가 근무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 국가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주로 하는 기관인데, 저는 공단 소속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이 끝날 때까지 법률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게는 법률 상담부터 시작해서 조사 동석, 합의, 사실관계 다툼이나 법률적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검토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J: 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로 일하며 형사 피고인의 국선 변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 법률사무소로 개업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위촉받아 사건을 배당받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K: 형사 국선 변호 업무입니다. 법원은 풀제로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는데, 보통 재판부 2-4 곳에 배정되어 국선사건을 20-35건 선정받습니다. 저의 경우 2025년에는 단독, 항소, 합의부로 부터 매월 30건 정도 국선 사건을 선정받아 처리했고, 2026년에는 세 개 재판부에서 매월 28건 가량 선정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진로 선택의 동기

진로 선택의 동기에 대하여, 인터뷰 대상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성향과 직전 직장에서 받은 영향을 언급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공적인 일에 관심과 의지가 있었고,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직장 선택에도 영향을 받았다. 인터뷰 대상자들 중 다수는 공공기관 근무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사선 변호의 경험이 없었다. 이 점 때문에 국선전담 변호사의 진로를 선택할 때에도 국선전담 변호사가 가지는 단점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I: 원래부터 변호사라면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부터 국토부, 인사혁신처 등 공직에 계속 있었고, 사선으로 변호사 업무를 해본 적은 없기도 했어서 전 직장에서 이직을 생각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공적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전 직장의 특수함 때문이긴 하지만 저는 국선전담 변호사가 되면서 연봉이 오른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월급을 많이 준다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J: 변호사가 되었을 때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부터 형사 사건에 관심이 많았기에 국방부 소속으로 일하다가 퇴직하고 국선전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내 변호사로 폼 변호사와 같은 다른 이직처를 알아보지 않았던 건 제 성향 자체가 공적인 일에 보람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었는데, 제가 당시 알고 있는 유일한 '공적으로 형사 사건을 할 수 있는 직업'이 국선전담 변호사였습니다.

K: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에 입사하였으나, 험한 사건, 많은 사건을 배정받다는 차별을 느끼고 격무에 시달렸습니다. 옆방 변호사님(별산제에서 옆방을 사용하던 같은 고용변호사)이 국선전담을 지원한 경험이 있어서 저에게 한번 지원해보라고 권유해주었습니다. 공익적인 일이고, 시간을 자유롭게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육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원하였습니다.

진로 선택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미친 영향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인터뷰 대상자들은 교육과 실습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답했다. 이는 각 인터뷰 대상자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닌 시기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수의 존재가 공익적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I: 제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던 시기에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법고시와 병행되던 시절이었고, 동기들 중에서도 법학사인 친구들이 매우 많아서 비법학사인 저로써는 공익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공부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리걸클리닉 역시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아서 실질적인 임상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얘기를 하다보니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일본법학회를 했는데 학회 담당 교수님이 위안부 할머니들 법률자문 등 공익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분 덕분에 공익에 대한 마인드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J: 제가 진로를 선택한 데에는 실무수습이나 다양한 교수님들과의 상담이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1학년 때 지도교수님이 군법무관 출신이셨는데 그 분의 추천으로 재학 중 군법무관 실무수습을 다녀왔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원래 군법무관이라는 진로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는데, 지도교수님 추천으로 고등군사법원으로 하계실무수습을 다녀와서 '형사 사건을 하면서도 공익에 종사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국방부에서 일했는데, 그 경험이 지금 진로랑도 연결되었습니다.

(3) 담당 업무의 공익성과 어려움

담당 업무의 공익성에 대하여, 인터뷰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도와주는 일이라는 점을 꼽았다.

I: 저는 여기 오기 전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무엇일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너무 많은 일을 가져가면서 사선 변호사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 때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피해자 국선변호 업무만큼은 결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도 받았는데, 자기 사비를 들여서까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국가의 보호의무를 생각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처음부터 로스쿨에 오게 된 게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대표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학부 전공 때문에 접하면서 ‘이런 분들을 위한 법률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분들의 돈을 쓰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해졌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지금 하는 일이 힘들어도 보람이 있습니다.

J: 에피소드를 통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심에서 공시송달로 징역형이 나온 피고인이 있었어요. 1심 국선 변호사님도 피고인이 연락이 안 되니까 조력을 못 한 상황이었었는데, 2심에서 어떻게 저랑 연락이 닿아서 상소권회복청구를 마지막 날 아슬아슬하게 했습니다. 사정이 여러모로 딱하고 합의 후 주장만 잘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서, 당사자를 설득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겨우 기간 내에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례를 조력하면서 이래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도 잘 몰라서 못 하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일하다보니 국선 변호사 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는 일에 가깝거든요.

K: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선변호인’은 헌법에 명시된 직무입니다.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려는 때이며, 동시에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기에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국선전담업무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피고인들 중에 지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는데 이들이 법률에 대한 이해나 보호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범죄를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투어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심신미약 등으로 선처를 받도록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보람이 있습니다.

담당 업무의 어려움에 대하여, 인터뷰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처우와 의뢰인 응대를 꼽았다.

처우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보수 자체가 적다는 의견 및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의견(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오래 장기 근속하는 경우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으로 나뉘었고, 의뢰인 응대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와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는 경우(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가 언급되었다.

J: 보수가 열악하다는 점은 (피고인) 국선전담을 진로로 고려할 때 첫 진입장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사무실의 관리비와 직원 월급 및 비품비(노트북, 스캐너, 열람복사비 등)를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높아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개인 사업자인 이상 들어가게 되는 사무실 운영비가 상당한 편입니다. 실질 임금은 월 400 정도이고, 열람등사가 많거나 새로 기기를 들어거나 하는 시기엔 더 적은 금액이 남기도 합니다. 퇴직금이나 4대보험도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다 보니 되지 않구요. 그런데 보수와 처우의 현실화, 위험성, 시설정비나 안전 문제 등을 매년 간담회 등에서 법원에 얘기드려도 잘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K: 처음 들어올 때 피고인 국선 전담의 처우에 대해 잘 몰랐고, 처음 지원한 2013년 당시 공고상 월 800만 원, 사무실 운영비 50만 원은 크게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 막연히 생각하고 현실적 상황을 모른 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첫날에 갔는데 텅 빈 사무실만 있어서 그 안에 가구며 컴퓨터 등을 모두 제가 구비해야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합계 월 850만 원이지만 세금, 직원을 위한 급여 및 퇴직금과 명절지원금, 사무실 관리비 및 운영비 등 모두 제하고 나면 630~50만 원 정도가 실수령액이며, 퇴직금도 없고, 상여금, 휴가비 등 전혀 없고, 힘든 사건, 기록이 방대한 사건을 해도 보수증액은커녕 기록 복사(인지, 종이) 등 실비도 전혀 정산받지 못하고,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것을 들어온 이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단위로 재위촉, 6년이 되면 다시 신규지원해야 해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안함이 크고, 재위촉이 안되는 경우 왜 재위촉이 안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떠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월 12월에서 2월은 떠나는 변호사님들로 인해 사무실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불안정한 지위를 해마다 체감합니다.”

I: 감수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 직업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변호사들도 최소한의 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하긴 어려우니까요. 피해자 국선전담의 경우 작년에 운 좋게 갑작스럽게 월급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전 600만 원으로 고정되었는데, 이제는 연차에 따라 4년 차 이상은 8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여전히 한계라고 생각하는 건 또다시 월급이 정액으로 상한선이 있다는 겁니다. 4년이 지나고 나면 나의 업무 퍼포먼스와 무관하게

평생 같은 금액의 월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런 방식이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을 고취시키는 데 적절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J: 저는 제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담 과정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제게 보이거나 하는 피고인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좋은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인 부분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정말 지난 달에도 제게 때릴 것 같은 언동을 하셔서 상담을 중단하고 재판부에 사임계를 낸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달에 법원에서 처음으로 저희 사무실에 시찰을 오셨는데 여성 변호사 둘과 여성 직원 한 분이 같이 쓰는 저희 사무실 모습을 보시고 '이건 정말 어떻게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탄식하고 가시더라고요. 아직 특별히 해결된 점은 없습니다.

I: 피해자들을 대할 때 어떤 피해자들은 '나는 피해자니까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제도 상으로는 고소장을 접수하면 피해자로 간주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가급적 존중해드리려고 노력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거나 저를 합의를 위한 기계처럼 생각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4) 개선방향

개선방향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보수 체계 및 처우, 그리고 소속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위치에 대해, 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는 재량국선 및 변호사의 소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수 관련:

I: 사실 공공분야에서 일하는 변호사 중에서 국선전담은 그래도 생계와 처우 문제에서 예외가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에 대한 불만은 사실 큰 편은 아닌데, 제 생각에 이 제도 자체가 가지는 한계가 언제부터가는 급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답답함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제도상으로는 4년이 넘으면 평생 같은 금액의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가 쌓임에 따라 월급이 오르지 않는 데에서 상당한 근로의욕 저하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도를 개선해서 연차나 퍼포먼스에 따라 월급이 오르도록 하는 방식이 베스트이지만, 어렵다면 어느 정도의 겸직을 허가해준다거나, 사적인 업무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주는 등의 방식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J: 실제 사용하는 금액을 고려하면 보수가 열악한 점이 진입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 과중도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과 지방의 업무 과중 정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 3회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여유 시간이 나는데 서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 결과 조력의 질 저하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보수의 현실화와 업무 가중도를 고려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 2013년 처음 업무를 시작했을 때보다 점차 국선선정 건수가 늘어나고 물가인상율도 반영하지 못하고 20년째 동결된 보수(일괄적으로 800만 원이었다가 2015년에 600, 700, 800만 원으로 조정되어 오히려 하향됨)입니다. 860만 원에서 제반경비 제외하면 실수령액 640만 원으로, 매월 28건을 처리하면 1건에 22만원에 처리하는 것이고 660만 원 받는 저년차 국선전담의 경우 10만 원대에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국선전담 예산 증액 및 보수 현실화에 대해 무심하고 노력을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정 건수가 줄어 들고 보수가 증액된다면 업무 자체는 보람이 있기에 지속할 수 있지만, 이런 조건이라면 오래 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소속 관련:

I: 소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법무부 소속인지 공단 소속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가 발생합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경계인으로 남겨두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소속이 필요합니다. 공단이든 법무부든 해당 조직 구성원으로 편입시켜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대우하거나, 아니면 확실히 독립시켜 피고인 국선전담처럼 개인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만 하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디 소속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계인처럼 느끼게 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점인 것 같습니다.

J: 국선전담을 필요로 하는 곳은 법원인데, 저희가 보수나 4대보험, 처우나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 말씀드릴 수 있는 때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간담회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얘기가 나오지만 개선은 잘 되지 않아서 어딘가의 소속이어야 처우 개선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노조도 없고, 파업도 할 수 없고, 다들 성향상 법원과 마찰을 빚고 싶어하지도 않아서요. 그래서 차라리 법률구조공단이나 제3의 단체에 저희가 소속되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처우가 개선되고 국선전담 변호사들이 오랜 시간 전문성을 가지고 장기 근속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K: 형사절차에서 법원, 수사기관,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립적 구조인데 국선변호인을 법원이 선발하고 위촉, 재위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판사를 지망하는 변호사들이 국선전담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법원이 제공하는 업무조건이 문제가 많음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법관으로 임관하지 않는 경우, 형사사건만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담당하면 변호사 스스로도 고갈됩니다.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소해야 하고, 그것에 실패한다면 개인적으로 자기관리에 실패한 이로 보일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근속연수가 되면 연수를 보내주거나 업무가 변화하거나 쉬고 재충전의 기회를 줘야지만, 국선전담은 승진, 휴가, 연수 등이 전혀 없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강력사건을 하면 상담을 받거나 하여 정신건강을 신경 써주는데 저희는 그 누구도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매월 기계적으로 선정되는 사건들과 점차 소통이 어려운 피고인들의 증가로 극심한 피로감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법원이 전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결국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일반국선, 영장관련 논스톱국선, 국선전담, 피해자국선, 가사조정전담, 회생전담, 민사조정전담 등 법원이 운용하는 전담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변호사센터를 만들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 업무 순환(형사만 오래 하지 않도록), 복지혜택 등을 주어야 하며, 이용자들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재량 국선, 피해자 지위 등):

J: 현실적으로 지금은 피고인이 신청만 하면 모두 국선을 선정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사회보장제도구나 생각한 또 다른 이유기도 한데요, 필요적 국선 요건(구속, 농아자, 심신미약, 70세 이상 등)이 아닌 상황에도 피고인이 신청하거나 사건의 진행 방향 상 정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모두 기각하지 않고 받아주십시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받아주시고요. 최근에 본 사건 중에 피고인이 혼자 출석해서 국선 원하지 않는다면서 부인하고 있었는데, 판사님이 국선 선정해줄테니 상담하고 오라고 하면서 신청도 없었는데 국선 선정을 해주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재량으로, 검수가 없는 수준으로 국선을 선정해주시는데 이러면 사건 수나 보수 현실화가 같이 가지 않는 이상 조력의 질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절차가 좀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 법원 판사들이 절차 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국선을 마구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강도는 줄어들지 않고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국선선정을 아무도 통제하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국선을 많이 선정해주는 것이 모양새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은 국선전담이 다 떠안고 가는 형국입니다.

L: 피해자 변호사가 뭘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형사 절차상 피해자 위치의 한계가 있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변호사가 사실관계 다툼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 피해자 변호사는 양형에 관한 자료 외에는 의견권이 없다며 안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고, 발언도 하지 못하게 하는 재판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번 피해자 변호사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변호사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려고 하는 재판부도 있고요. 어제 들어간 재판에서도 강제추행의 고의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재판부에서 피해자 변호사 의견을 묻더라고요. 열람복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게 법원만 그런 게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명확한, 예측 가능한, 일관된 기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법정 내 고정된 피해자 변호사 자리가 없는 게 일관되지 못한 일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각 피고인 국선전담, 피해자 국선전담으로 일하고 있는 인터뷰 대상자들은 기존부터 공적인 업무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대상자들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시기 교수자의 영향을 받아 국선전담으로 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

간을 공적인 영역에서 근무하였다. 이들은 국선전담으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돕는다는 점에 큰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고, 다만 보수 및 처우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 국선전담의 경우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피해자 국선전담과 달리 개인 사업자라는 특성상 보호·지원해줄 수 있는 조직이 부재하였고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 역시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보수 체계 및 처우 개선, 그리고 소속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는데, 보수 및 처우의 경우 사무실 운영비 비중이 적지 않은 피고인 국선전담의 경우 보수 자체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고, 피해자 국선전담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월급이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점이 근로 의욕 고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이들은 또한 본인의 소속이나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거나(피해자 국선전담), 소속 자체가 없어 보호·지원을 받지 못하고 관할 법원에 요청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피고인 국선전담)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두 직역 모두 안정된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4.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장기근속 중인 2명의 변호사를 인터뷰하였다. 각각 1)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팀장으로 7년째 재직 중인 L 변호사와, 2)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팀장으로 9년째 재직 중이면서 과거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M 변호사이다. 두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에 장기 근속하는 변호사의 진입 경로, 담당 업무의 성격 및 근무 환경, 공공기관 근무의 장단점, 공공기관 진출의 전망 등을 살펴본다.

(1) 소속 기관 및 담당 업무

L 변호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해당 공공기관은 문화예술 관련 지원 사업을 주로 시행하는 기관으로, 기관 내 유일한 변호사인 L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기관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형사 고발, 형사 대리 및 소송 직접 수행 등이며, 그 외에 기관 내규 관리, 개인정보 등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령 모니터링, 청렴 및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는 팀장으로서 법무 업무 외에도 기관사업에 AI를 도입하는 정보화 업무 및 팀원 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M 변호사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법률구조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국민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일반 지부와 달리, 본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과거사 사건(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등), 전세사기 사건 등 사회적 선도성이 있는 사건을 기획 및 발굴하여 수행한다. 아울러 전국 지부 및 출장소 운영에 관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진로 및 진출 동기

L 변호사는 일반 송무 변호사로 3년 6개월간 근무하며 커리어를 시작하였다. 이후 저작권 분야에 대한 경력을 쌓고 싶은 마음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 동기가 되어 2019년 현 소속 기관에 지원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M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국선전담변호사로 6년간 근무하며 경력을 시작하였다. 국선전담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 법정에서 만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였고, 본인의 사교적인 성향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하는 법률구조 업무와 잘 맞을 것으로 판단하여 2017년 공단에 지원하게 되었다.

(3) 고용 형태 및 처우

L 변호사는 전문계약직(전문위원)으로 1년 단위 계약직을 연장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의 특성상 기관 내부의 일반직 연봉체계에³⁵⁾ 편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급여는 일반 송무 변호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연봉 인상률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다만, 기관의 복지 제도 및 업무 환경이 좋아 장기근속 중이라고 한다.

M 변호사는 정규직 나급 신분이며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근무 초기에는 국선전담변호사 근무 때보다 급여가 줄었으나, 현재 10년차 기준으로는 호봉에 따라 급여 수준이 높아졌다. 다만, 공단 예산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라급으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어 변호사 처우가 종전보다 낮아졌으며, 일반 로펌에 비해서 급여 상승률도 제한적이다.

(4) 근무 환경 및 복지

L 변호사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사정이 자유롭다는 점 등 우수한 복지제도를 큰 장점으로 꼽는다. 고용변호사의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종종 보장되지 않는 일반 송무 시장과

35) 현재 기관의 내부 직급 체계는 1~5급으로, 직위는 주임~실장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 변호사는 처음 채용시부터 직급은 전문위원으로, 직위는 현재 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달리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점, 그리고 공공기관 특성상 동료들의 업무 매너가 좋은 편이라는 점도 짚어주었다.

M 변호사는 공단은 9~6시 근무시간이 비교적 잘 지켜지며, 본부의 경우 스마트워크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특히 특별육아 제도를 통해 하루 중 2시간(오후 4~6시) 휴가 사용이 가능한 점 등 가정생활과 밸런스를 유지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응답하였다. 다만, 관사 지원이 되지 않아 지방 순환 근무에 따른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을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

(5) 공공분야 근무의 장단점

L 변호사는 현 소속 기관 근무에 따른 장점으로 복지 제도와 업무 환경 외에 일반 송무 변호사에 비해 사건의 승패에 따른 스트레스와 성과 압박이 없다는 점, 기관 사업이 공익적인 성격을 가져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을 꼽았다. 반면,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장기근속하는 경우 관리직 등을 맡게 되면서 변호사보다도 ‘행정가’가 되어간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의 지침에 따라 업무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변호사로서 운신의 폭이 좁다는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공공기관은 일반 변호사에 비해 자율성이 적다는 점, 공공기관 특유의 조직문화나 행정체계에 적응해야 하는 점, 법무팀 규모가 작아서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거나 경력을 쌓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M 변호사는 공단 근무의 장점으로 공익 기여와 복지 제도 외에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의 협력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단점으로는 지속적인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변호사 처우 개선이 어려운 점 외에, 공단 소속으로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다 보니 타 기관에 법률상담 파견 업무를 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 개인의 역량이나 선호도는 고려되지 않는 점 및 법률상담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적은 경우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점을 단점 중 하나로 꼽았다. 또한, 지부 및 출장소에서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양한 사건을 통해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장점은 있으나,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도 설명하였다.

(6) 공공기관 진출의 전망 및 제언

변호사의 공공기관 진출에 대한 전망과 개선 방향에 대해 L 변호사는 처음 현 기관 지원 당시보다도 현재는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 규모가 확장되어 공공기관 근무 변호사 수는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다. 복지 제도, 일과 삶의 균형,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 강도와 같은 공공기관의 장점을 고려하여 진출하는 변호사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 전망은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M 변호사의 경우, 결국 처우 개선이 관건으로, 처우가 개선되면 공단 근무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사건 수행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익법률 분야를 접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M 변호사 본인은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국선전담변호사로 시작하여 공익법률 분야를 접해보았기에 공단에 지원할 수 있었다고 하며,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서는 예비 법조인이 공익법률 분야를 경험하기 어려운 점이 아쉽다고 하였다. 가능하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예산에 법무부 지원으로 공익법무실습 강화, 공익법률센터 지원, 공익법률 커리어 패스 설계 등을 도입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7) 소결

두 변호사의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기관 내의 법무 행정 및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추가로 근무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따라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일반 송무 시장의 압박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서 높은 만족감을 얻고 있으나, 예산 제약에 따른 낮은 처우는 변호사의 공공기관 진출 및 장기근속을 저해하는 주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향후 변호사의 공공기관 진출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채용 규모의 확대를 넘어, 급여 수준의 상향을 비롯한 근로 조건 개선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단계에서의 공익법률 커리어 패스 연계 및 보수 체계 현실화 등을 통해 변호사가 공공기관 내에서 법률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영역에 법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하였다.

IV

해외에서의 공공 영역의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과 시사점(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공공 영역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은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과 활동에 따라 각 변호사의 업무 및 업무 환경, 처우 등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공공 영역에서 근무하는 법조

인에 대해 커리어가 특정한 하나의 공공 영역 내지 하나의 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이후에도 공공 영역에서 법조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여 공공 영역에서 근무하는 법조인을 지원·양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국가인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 영역 법조인 양성 제도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싱가포르의 법체계와 변호사 자격 취득 요건

싱가포르는 1819년 동인도회사의 설립시기부터 1965년 독립에 이르기까지 그 법률체계가 영국 식민사령관과 얽혀있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법률체계 및 법조인 양성 제도 전반에 있어 상당 부분 영국의 영향을 받았다.³⁶⁾ 또한 싱가포르의 경우 1993년 이래 변호사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 그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이에 싱가포르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변호사법(Legal Profession Act) 제2조 제1항에 의해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동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 인정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1993년 5월 1일 이후에 「변호사법(Legal Profession Act) 시행령(Legal Profession Rules)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규정한 자격을 갖고 있거나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
- ② 「변호사법」 제7조에 의하여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자

제1항에 언급된 「변호사법」 시행령(Legal Profession Rules)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요건은 크게 9종류로 나뉜다.³⁷⁾ 그 중 대부분의 싱가포르

36) 고영미, 싱가포르의 법 교육, 변호사 실무 교육, 그리고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제38호, 2017, 109면.

37) ① 국립 싱가포르대학교에 1993년 5월 1일 전에 입학하고, 그 이후 법학사 학위 취득시험을 통과한 자(시행령 제4조)

② 1993년 5월 1일 이후에 국립 싱가포르대학교에 입학하여 최소한 낮은 2급 우등생(lower second class honour)으로 법학사 학위취득을 위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자(시행령 제5조)

③ 싱가포르 국민이거나 영주권자로서, 1993년 5월 1일 이전에 영국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후, 영국의 법정변호사나 사무변호사가 되었거나 국립 싱가포르대학교에서 싱가포르 법에 관한 학위(Diploma in Singapore Law, 이 경우 1년 만에 학위 취득 가능)를 취득한 자(시행령 제6조)

④ 싱가포르 국민이거나 영주권자로서, 1993년 5월 1일 이전에 영국에서 법과대학 입학허가받아 그 후 졸업하고, 영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국립 싱가포르대학교에서 싱가포르 법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시행령 제7조)

⑤ 싱가포르 국민이거나 영주권자로서, 1993년 5월 1일 이후에 영국에서 법과대학 입학허가받아 1994년

변호사들이 자격을 취득하는 경로는 크게 (i) 법학사(Bachelor of Laws, LL.B) 또는 법학 석사(Doctor of Jurisprudence, J.D.) 취득, (ii) 변호사 시험(Part B), (iii) 6개월의 실무수습기간을 거치는 것이다. 이때 법학사(LL.B)는 싱가포르 정부가 승인한 대학에서 전업 학생으로(Full-time) 최소 3년(4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싱가포르 정부가 승인한 싱가포르 국내 대학은 다음 3곳에 한정된다.³⁸⁾

- ① 국립싱가포르 법과대학(N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② 싱가포르 경영대학(SMU,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 ③ 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SUSS, Singapor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이 외에도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의 특정 외국 대학의 학위를 받은 경우에도³⁹⁾ Part A 시험을 추가로 통과하는 조건으로 싱가포르 변호사 시험(Part B)을 응시할 수 있다.

1월 1일 이전에 학위과정을 시작하여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졸업한 후, 영국 변호사가 되거나 국립 싱가포르대학교에서 싱가포르 법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시행령 제8조 제1항)

- ⑥ 싱가포르 국민이거나 영주권자로서, 1993년 5월 1일 이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9개의 영국 법과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1994년 1월 1일 이후에 학위과정을 시작하여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졸업한 후, 영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국립 싱가포르대학교에서 싱가포르 법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단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졸업하면 최소한 상위 2등급 우등생(upper second class honour)이어야 하고 국립 싱가포르대학교에서 싱가포르 법에 관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조 제2항)

- ⑦ 싱가포르 국민이거나 영주권자로서,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Melbourne 대학교 등 4개 대학교의 법과대학이나 뉴질랜드의 2개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졸업생중 상위 30% 이내의 성적으로 법학사를 취득하고 국립 싱가포르대학교에서 싱가포르 법에 관한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03년 7월 28일 이후에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 등 4개 대학교의 법과대학에서 졸업생 중 상위 30% 이내의 성적으로 법학사를 취득하고 국립 싱가포르대학교에서 싱가포르 법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시행령 제9조)

- ⑧ 1993년 5월 1일 이전에 영국에서 법학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일반변호사시험(Common Professional Examination)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거나 이에 합격한 자로서 이후 영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시행령 제13조)

38) Singapore Institute of Legal Education, "Qualified Person(Local Universities)", <https://www.sile.edu.sg/the-singapore-bar-admission-local-graduates/qualified-person-local-universities/> (2026. 6. 1. 접속)

39) 싱가포르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외국 인가 고등교육기관과 요구 학위 조건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하여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 Singapore Institute of Legal Education, "Qualified Person (Overseas Scheduled Universities)", <https://www.sile.edu.sg/for-overseas-graduates/qualified-person/> (2026. 6. 1. 접속)

2. 싱가포르 법조인사위원회 (LSC, Singapore Legal Service Commission)과 싱가포르 법조공무원단 (SLS, Singapore Legal Service)

싱가포르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공영역에서 변호사 커리어를 시작하는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싱가포르 법조인사위원회(LSC, Singapore Legal Service Commission)의 선발 절차를 거쳐 싱가포르 법조공무원단(SLS, Singapore Legal Service) 풀에 소속되어 근무하게 된다.

(1) 싱가포르 법조인사위원회 (LSC, Singapore Legal Service Commission)

싱가포르 법조인사위원회(LSC, Singapore Legal Service Commission)는 싱가포르 헌법 제111조에 의해 설치된 싱가포르 공공 영역의 법률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정부 조직으로, 법원 및 정부기관에 소속된 법조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통합된 법조공무원단을 통해 최고의 법률 인재를 육성하고 적절한 지위와 조직에 배치하며 최고 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One Legal Service, developing and deploying the best legal talent to provide the highest quality legal services)’하고, 그로 인해 최종적으로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싱가포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⁴⁰⁾

주된 업무는 싱가포르 내 사법부와 행정부의 법조 인력을 통합 관리하는 독립적 인사체계인 싱가포르 법조공무원단(SLS, Singapore Legal Service)의 인재를 선발, 육성, 배치하는 통합 인사 업무인데, 이 법조인사위원회(LSC, Singapore Legal Service Commission)에서 싱가포르 법조공무원단(SLS, Singapore Legal Service)의 임명·배치·진급·징계 등을 모두 관장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2) 싱가포르 법조공무원단 (SLS, Singapore Legal Service)

싱가포르 법조공무원단(SLS, Singapore Legal Service)은 앞서 살펴본 싱가포르 법조인사위원회(LSC, Singapore Legal Service Commission) 산하 조직으로 싱가포르의 공공 영역 내 법조인 양성제도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직이다. 싱가포르 법조공무원단(SLS, Singapore Legal Service)은 판사·검사·정부 소속 변호사를 모두 하나의 인사체계로 묶어 운영하는 통합 법조인력 양성 체계이자 공공 영역에 근무하는 법조인들(통칭 LSO, Legal

40) LSC와 SLS 관련하여 참고. <https://www.lsc.gov.sg/>

Service Officer)이 대부분 소속되어 있는 조직인데, 실제 싱가포르 공공 부분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조인들은 개별 기관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 법조공무원단(SLS, Singapore Legal Service)에 속한 상태로 다양한 공공 영역에서 순환 근무를 하게 된다. 법조공무원단(SLS, Singapore Legal Service)의 법조 공무원(LSO, Legal Service Officer)들이 근무하게 되는 다양한 공공 영역은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 법원(Supreme Court of Singapore, State Courts 등), 검찰 등 법무부(AGC, Attorney-General's Chambers), 그리고 여러 정부 부처의 법무팀 또는 법률 자문 담당 부서.

각 부서에서 법조공무원단 소속 법조 공무원(LSO, Legal Service Officer)들이 담당하게 되는 업무는 국가 형사소추, 법률 자문, 법령 초안 작성, 사법행정 지원 등의 업무로 우리나라의 각 기관 소속 법조인들이 담당하는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조직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해 가장 다른 점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공 영역에서 근무하는 법조인들을 모두 통합하여 법조공무원단(SLS, Singapore Legal Service)으로 선발하고, 이들의 양성 및 후속 커리어 관리까지 개입한다는 점이다. 법조공무원단(SLS, Singapore Legal Service) 소속 구성원들이 해당 조직에 속하게 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법학사(LL.B) 또는 법학석사(JD) 전공생(Undergraduate Law Programme/JD Programme)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 싱가포르 경영대학교(SMU), 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SUSS)에서 법학 학사(LLB) 과정을 이수 중인 학부생 또는 공인 대학교에서 법학 학사/법학 학사(우등)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그리고 NUS, SMU, SUSS 또는 공인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JD) 과정을 이수 중 최소 2학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지원자는 최소 2주간의 인턴십을 이수한 후 법조 공무원(LSO, Legal Service Officer)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임용이 가능하다.

2) 졸업생 및 저년차 변호사 (Fresh Graduates)

졸업생 및 관련 법률 분야에서 4년 이하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사람 (그리고 임용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선발 절차를 거쳐 법조 공무원(LSO, Legal Service Officer) 임용이 가능하다.

3) 경력직 변호사 (Mid-Careers)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의 탄탄한 법률 실무 경력을 보유한 경력직 지원자(임용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도 선발 절차를 거쳐 법조 공무원(ISO, Legal Service Officer) 임용이 가능하다. 즉 국가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부터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인재들에 대해 공공 영역에서 인턴십 등 관련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 및 검찰의 재판연구원 또는 신입 검사 채용을 연상시키나, 싱가포르의 특정 공공 영역에 속한 기관(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재판연구원), 검찰(신입 검사))에 한정되지 않고 싱가포르 법조공무원단(SLS, Singapore Legal Service) 제도를 통해 다양한 인재를 더 많은 공공 영역으로 유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법조공무원단 소속 법조 공무원(ISO, Legal Service Officer)들은 한 기관에서 꾸준히 커리어를 쌓을 수도 있지만 본인의 흥미와 역량에 따라 공공 영역 내에서 다양한 보직에서 순환 근무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고,⁴¹⁾ 일정 경력을 쌓으면 법원 판사나 정부 고위 법률직으로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싱가포르 법조공무원단(SLS, Singapore Legal Service)의 경쟁력 있는 임금 체계 역시 매우 인상적인데, ‘공공 영역 역시 크게 최고의 법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 대해 경쟁력 있는 임금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모토에 따라 그 보수 체계가 민간에 비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가는 싱가포르 법조인사위원회(LSC, Singapore Legal Service Commission)가 담당하며, 공무원 투명성 원칙에 따라 숨겨진 특혜가 없는 투명 급여(clean wage) 정책을 시행한다.

정리하자면 싱가포르 법조인사위원회(LSC, Singapore Legal Service Commission) 산하의 싱가포르 법조공무원단(SLS, Singapore Legal Service) 체계는 특정 공공기관 내지 정부 조직이라기보다는 정부 주도 하에 공공 영역 변호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싱가포르의 제도 내지 체계에 해당한다. 학부, 더 이르면 고등학교 과정부부터 개입해⁴²⁾ 훌륭한 인재를 선점하고, 이들에게 장학금과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해 공공 영역으로 적극 유치하며, 이후의 커리어에도

41) 실제로 싱가포르 법조 공무원(ISO, Legal Service Officer)들은 기초 배치를 거친 후 본인의 적성과 조직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부서를 거치는 ‘순환 근무 경로(Rotational Track)’나 특정 법률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전문 분야 경로(Specialist Track)’를 선택해 경력을 개발한다.

42) 싱가포르 법조공무원단(SLS, Singapore Legal Service) 자체는 법학부 대학생에 대해 “조건부”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싱가포르 공공인사위원회(PSC, Public Service Commission Singapore)는 싱가포르 법조공무원단(SLS, Singapore Legal Service)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법이나 행정 관련 학과 진학 예정인 고등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기도 하다.

본인의 흥미와 의지, 기관 적합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공공 영역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체계는 공공인사위원회(PSC, Public Service Commission Singapore)와 싱가포르 법조공무원단(SLS, Singapore Legal Service)의 인재 조기 선발, 싱가포르 법조공무원단(SLS, Singapore Legal Service)를 통한 통합적 경력관리, 싱가포르 법조인사위원회(LSC, Singapore Legal Service Commission)에 의한 인사 통제 등 국가 중심의 법률인력 운영 구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는 국가 규모, 제한된 법조인 수, 높은 수준의 행정집중성 및 공공부문 신뢰를 기반으로 법조인을 국가 전략 인력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갖추고 있는데 반면 한국은 대규모 법률시장과 분화된 법조 직역, 법조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독립성을 중시하는 법문화 속에서 판사·검사·변호사의 경력 경로가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주도의 조기 선발 및 통합적 경력관리 모델은 우리나라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게 된 연혁을 고려할 때 각 사법, 행정, 입법기관 사이의 독립성을 해치고 권력이 특정 집단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싱가포르 모델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제도의 전면적 도입 여부를 문제 삼기보다, 아래 각 공공 영역의 개선방향에 더해 공공·공익 법률인력의 안정적 양성, 경력 지원 체계 구축, 기관 간 인적 교류 활성화 등 그 기능적 요소를 한국의 제도적·문화적 맥락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접근이 가능할지 논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V

공공 영역 내 공익적 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방안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기관이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법률가로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관의 성격 등에 따라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보편화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비교적 좋은 조건인 경우가 많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처우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인터뷰 등에 비추어 보면 6급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변호사 재직기간이 길지 않아 보이나,

일부 인기 기관에서는 예외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기관에서는 더 이상 6급 채용을 하지 않는 방향을 설정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강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관해서는 보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경험자들이 모두 같이 전망의 불투명성에 대하여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만 임기제는 특성상 1-3급 공무원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 ‘일반’이라기 보다는 4-5급 대우의 임기제 공무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이유는 일반 행정사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편제의 한계, 6급 처우로는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의 절충적인 정부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임기제 보다 일반직이 좋다는 명제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변호사가 전망의 불투명성 때문에 이직을 반복한다면, 이는 전문성있는 인력을 공직에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손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임기제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가능성을 열어둔다거나, 5년 임기제 공무원이 재임용될 때 추가적인 처우개선 방안이 강구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공직 임용시에 민간경력채용 5급이나 경찰, 검찰의 경우처럼 기관들이 매년 채용을 하는 것도 아니므로 정보의 접근성 차원에서 홍보개선 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별로 자체 모집을 할 경우에 채용공고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는 기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간헐적으로 공직을 채용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및 직무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지원자가 적을 수 있고 이는 각 기관 차원에서도 손해라고 보여진다. 변호사 공직 채용에 있어서는 별도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해당 플랫폼에서는 단순한 공직 채용 정보 뿐 아니라 해당 기관의 재직자 및 퇴직자의 멘토링이나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서 정보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구에서 충분히 정보가 확보되지 못했던 재직기간이나 각 공직의 경쟁률 추이를 분석했을 때 조금 현실에 맞닿은 처방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의회, 교육청)

(1) 공공영역 진출 확대 및 장기 근속을 위한 개선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지자체는 51개 기관 중 15개(30%), 기초 지자체는 226개 중 155개(68%) 기관에 법조인력의 공백이 존재한다. 충실한 법치행정의 실현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가 공공 영역에 진출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근속 기간 제한, 일반 법조 시장에 비해 낮은 보수, 지역의 법조인력 수급 문제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 변호사는 일반 임기제로 채용되지만,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근속 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고용 안정성이 낮고 장기 근속 동기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5년 이상 근무한 임기제 변호사가 총 10년, 혹은 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의 확대 적용 및 개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상 하한액을 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변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하한액의 예외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 기관에서 소수의 법조 인력이 근무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경력 개발 기회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근무 환경의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자체 간 인사 교류 제도(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 파견), 지자체 소속 법무 인력 네트워크 구축(연 2회 간담회 및 사례 공유)을 마련함을 통해, 동료 학습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2) 수도권/비수도권 인력 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변호사 재직 현황 역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법조 인력 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나, 첫째로는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에 대한 법무 인력 최소 기준 설정을 제안한다. 현재 기초지자체의 변호사 채용은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이는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정부의 자체적인 지침 또는 권고안 마련을 통해, 인구 수를 기준으로 특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변호사를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이다. 최소 기준 설정 시, 인구뿐 아니라 예산 규모, 법률 분쟁 빈도, 개발 사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한 변호사 채용 확대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는 자체 예산만으로 법무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우므로, 중앙 정부가 법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지자체 법무 인력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비수도권 시·군·구가 변호사를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50~70%를 3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법무 인력 채용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광역 지자체 차원의 법무 공동 지원 체계 구축이다. 개별 기초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법무 조직을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 광역지자체가 '법무 공동 지원단'을 설치하여 기초지자체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 특정 지역의 경우 지리적으로 면적이 넓는데 비해 변호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묶어 변호사를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권역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직접 여러 지자체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출장 등을 통해 담당 시·군을 방문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 사안은 유선 또는 이메일로 즉시 대응한다. 이는 법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집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모델을 참고하여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법조인력을 활용하도록 하여, 기초지자체의 법률서비스 수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국선전담변호사

(1) 국선변호 전담 기관 설립 및 네트워킹 지원

1) 국선변호 전담 기관 설립

우선 피해자 국선변호와 피고인 국선변호, 나아가 다양한 직역의 국선변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 특히 개인 사업자인 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의 경우 더더욱 - 각 국선전담 변호사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국선변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지원 및 보호를 적절히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 또는 별도의 독립된 제3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 등 현실적인 제약이 수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현행 대한법률구조공단 내에 피해자 및 피고인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물론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므로 피고인 국선전담으로써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국선변호 업무에 수반되는 어려움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및 지원이 시급한 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들에 대해 추가적인 조직 신설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단기간 내에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며, 장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국선변호 전문기관의 설립 역시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된다.

2) 네트워킹 지원

다만 단기간 내에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독립적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국선전담 변호사 간의 네트워킹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와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는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 활동하고 있어 상호 간 교류가 제한적이며, 동일 관할 내에 속해 있더라도 개별 변호사가 각자 선정·배당 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특히 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들의 경우 유사한 어려움 내지 문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도 이를 함께 논의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 물론 별도의 조직 설립이 가장 실효적일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방식으로 국선전담 변호사 간의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킹을 제도로써 지원하면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조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개별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축적된 전문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보수체계 현실화

보수체계의 현실화 역시 피해자 국선변호와 피고인 국선변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먼저 피고인 국선변호의 경우, 현재의 보수 수준은 사건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직원 인건비나 열람·등사 비용 등 사무실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가 보수에 포함되지 않거나 별도의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는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저해하고 사건 수행의 질을 낮추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보수에 포함시키거나, 최소한 실비로 별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행 보수체계에 따른 전담 변호사들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량을 고려할 때 비전담 국선변호사들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되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역시 불가피하다.

피해자 국선변호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지적된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소속되지 않고 외부에서 활동하는 피해자 변호사들의 경우, 사무실 운영비에 대한 보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비 책정과 보수체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양측 모두에 대해서 현행 연봉 정액제 중심의 보수체계는 변호사들의 장기 근속과 전문성 축적을 유도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국선전담 변호사들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보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보수체계는 4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제도

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개선된다면 국선전담 변호사들의 전문성 축적에 따라 국선 변호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3) 업무 평가 방식 개선

마지막으로 피고인 국선전담 및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들에 대해 업무 평가 및 선정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우선 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의 경우 현행과 같이 사건을 일괄적으로 1건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개별 사건의 난이도와 투입되는 노력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사건의 경중, 공판 진행 기일 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은 변호사의 업무량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요소이므로,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 건수를 차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량국선의 경우에도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며 각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사의 업무가 쉽게 과중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한편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의 사건 산정 방식 역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피해자 1인당 수사단계 1건, 공판단계 1건으로 단순화되어 있으나, 실제 공판절차는 1심과 2심으로 구분되어 각각 별도의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를 독립된 사건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피고인이 다수인 경우 역시 현행 평가 방식에는 동일한 1건으로 취급되나, 사건에 따라 각 피고인 별로 방어 및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개별 사건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에 부합할 것이다.

4. 공공기관

(1) 공익적 가치에 기반한 보수 체계의 현실화

보수 인상은 단순히 시장 가격에 맞추는 차원을 넘어, 우수 인재가 공공부문에 남아서 공익적 전문성을 축적하게 만드는 사회적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 로펌과의 급여 차이를 좁히기 위한 명분으로 가칭 ‘공익 직무수당’과 같은 급여 항목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변호사가 사익을 추구하는 대신 공공 영역에서 헌신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이 된다. 이미 일부 기관에서는 승소율 같은 수치적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가 존재하나 그 밖에도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공익적 분쟁의 해결 실적, 관련 법령의 개선 건수, 사회적 기여도 등을 평가 지표에 반영함으로써 변호사가 공익적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보상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공익적 커리어 경로의 제도화

공공기관 근무가 한때 거쳐 가는 과정이 아니라, 공무 전문 법률가로 성장하는 경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공익적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정부의 ‘공공 법률전문가 인재군(행정 인사 DB)’으로 관리하고, 추후 정부 부처의 개방형 고위직이나 사법부 임용 시 해당 경력을 핵심적인 공익 활동으로 우대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단계에서부터 공공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직 특화 교육 및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 근속한 공익 변호사에게 국내외 대학원 유학 또는 공익 단체 파견 등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이 다시 공공기관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3) 소결

공공기관의 공익적 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변호사가 굳이 민간으로 나가지 않아도, 공공 영역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호사 시장의 일반적인 급여 수준을 고려한 보수 현실화는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나아가 공공 법률전문가 인재 양성, 안식년 도입, 국내외 유학 및 파견 등의 무형적인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

제3장

시민사회 영역의 변호사 진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김진영, 엄선희

I

연구 대상 및 범위

한국에서 시민사회 영역의 공익적 법률 활동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등장한 인권변호사 활동과 시민사회 인권운동의 전개와 함께 형성되어 왔다. 특히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창립은 변호사들이 시민사회에서 조직적으로 공익적 법률 활동을 수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시민사회 기반의 공익적 법률 활동은 장애, 노동, 아동·청소년, 이주·난민, 사회적경제, 국제인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환경·기후 및 동물권 분야로도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익변호사들이 모여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조직을 형성하고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2004), 공익법센터 어필(2011),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2012) 등이 설립되면서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공익변호사단체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공익변호사단체들은 장애인, 이주노동자, 난민, 성소수자, 빈곤층, 인신매매 피해자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하며 시민사회 공익적 법률 활동의 중요한 축을 형성해 왔다.⁴³⁾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는 로펌이 설립하거나 후원하는 공익법인, 로펌 내부의 공익활동 전담 조직, 시민사회단체 상근 변호사, 노동조합 및 법률기관 소속 변호사 등 여러 형태의 공익적 법률가 활동이 나타나면서 시민사회 영역 공익법 활동의 조직 형태 역시 더욱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공익적 법률 활동이 특정 조직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제도적·조직적 기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변호사 활동의 현황을 정리하고 활동 환경을

43) 엄형국,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공익과 인권」 통권 제13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2013, 12-13면.

분석하려는 연구 역시 일정 부분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공익변호사를 중심으로 공익법 활동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활동 영역, 활동 분야, 조직 유형 등 국내 공익변호사의 규모와 활동 양상을 파악하고 관련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⁴⁴⁾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공익변호사의 활동 현황과 활동 환경에 대한 분석에 주로 집중되어 왔으며,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법률가의 진출 경로와 이러한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공익적 법률가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해당 영역으로 진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진출 경로가 활동 조직의 유형이나 활동 방식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익적 법률가 활동의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공익적 법률가를 조직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표 3-1 ■ 시민사회 영역 공익적 법률가의 소속 조직 유형

상위 범주	세부 유형	설명
로펌 기반 공익법 활동	로펌 기반 공익법인 공익변호사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에서 상근하며 공익소송, 법률지원, 제도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는 변호사
	로펌 소속 공익전담 변호사	로펌 내부의 공익위원회 또는 프로보노 전담 조직에서 공익활동을 담당하는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기반 공익법 활동	변호사 중심 시민사회단체 (공익변호사단체) 소속 변호사	공익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단체에서 공익소송, 법률지원, 제도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는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상근 변호사	환경, 교육, 아동, 이주, 장애, 환경 등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상근하며 법률 대응과 제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변호사
노동운동 기반 법률 활동	노동조합 및 법률원 전임 변호사	노동조합 또는 노동 관련 법률단체에 소속되어 노동 사건 대응, 노동 운동 활동 등을 수행하는 변호사
국제기구 기반 법률 활동	국제기구 소속 법률가	국제기구 또는 국제 NGO에서 국제인권, 난민, 노동, 아동권리 등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가

44) 강정은·이소아 외,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보고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사단법인 두루, 2019; 엄형국,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공익과 인권」 통권 제13호, 2013 등 참조.

이와 같은 유형 구분을 통해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익적 법률 활동의 현황을 정리하는 한편, 각 유형에서 활동하는 법률가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해당 영역으로 진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진출 경로가 이후의 활동 방식, 활동 환경, 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주된 연구 방법으로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진출 경로와 활동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⁴⁵⁾

표 3-2 인터뷰 참여자의 구성

인터뷰 대상	활동 유형	활동 영역
A	시민사회단체 상근 변호사	아동
B	로펌 기반 공익법인 공익변호사	장애·후견
C	변호사 중심 시민사회단체 변호사	인권 일반
D	시민사회단체 상근 변호사	환경·기후
E	변호사 중심 시민사회단체	장애·재난
F	노동조합 및 법률원 전임 변호사	노동

II 시민사회 영역 내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기반과 현황

현재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공익적 법률가들은 다양한 조직적 기반 위에서 공익법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가령, 로펌이 설립하거나 후원하는 공익조직, 변호사 중심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및 법률기관 등 여러 조직에 기반하여 공익소송 수행,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시민사회단체 법률자문, 입법 및 제도개선 활동, 연구와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법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 영역 공익법 활동의 조직적 기반의 확대는 2000년대 이후 공익법 활동을 전담하는 공익변호사단체가 등장하고, 로펌이 공익법인을 설립하거나 공익활동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조직적 기반의 차이는 공익법 활동의 방식에도 일정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예컨대 로펌이 설립하거나 후원하는 공익법인에서 활

45) 편의상 인터뷰 참여자들의 성명은 비식별화하되 구별을 위하여 활동 유형과 활동 영역만 제시하였다.

동하는 변호사들은 로펌의 재정적·조직적 지원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익소송과 제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변호사 중심 시민사회단체나 일반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특정 인권 의제나 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공익소송, 권리옹호 활동, 제도개선 활동 등을 결합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노동조합 및 법률기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노동 사건 대응과 노동권 보호 활동을 중심으로 공익법 활동을 수행한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이후 법률가의 진출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시민사회 영역으로 진출하는 변호사의 경로 역시 이전보다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사회 영역 공익법 활동의 환경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절에서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공익적 법률가의 현황을 조직 유형별로 정리한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공익법 활동의 조직적 기반과 활동 양상을 개관하고자 한다.

1. 활동 기반 유형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기반은 다양한 조직적 형태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법 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직적 기반을 기준으로 활동 유형을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로펌 기반 공익법 활동, ② 시민사회단체 기반 공익법 활동, ③ 노동운동 기반 법률 활동, ④ 국제기구 기반 법률 활동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1유형: 로펌 기반 공익법 활동

로펌 기반 공익법 활동은 로펌이 설립하거나 후원한 공익법인 또는 로펌 내부의 공익위원회·공익활동 전담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익법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은 로펌의 재정적·조직적 지원을 바탕으로 공익법 활동이 수행된다는 점에서 다른 활동 기반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대형 로펌들이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조직화하면서 로펌 기반 공익법 활동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일부 로펌은 내부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로펌은 별도의 공익법인을 설립하거나 후원하여 공익소송, 취약계층 법률지원, 법·제도 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 표는 로펌 기반 공익법 활동 조직의 주요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 표 3-3 】 로펌 기반 공익법 활동 조직

공익조직 명칭	설립 또는 후원 로펌	조직 형태	설립 시기	상근(공익전담) 변호사 수 ⁴⁶⁾	주요 활동 분야
공익법단체 두루	지평	사단법인	2014. 9.	10	평등한 접근, 구금과 자유, 공익법 생태계
공익사단법인 정	바른	사단법인	2017. 9.	1	디지털 소외계층, 탈북민, 이주민·난민 지원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김앤장	로펌 내 위원회	2013. 5.	3	공익단체 법률지원, 법률교육, 법제도 개선
대륙아주 공익위원회	대륙아주	로펌 내 위원회	2013. 6.	1	아동·청소년 법률교육, 취약계층 법률지원
동인 공익위원회	동인	로펌 내 위원회	2016. 9.	1	장애, 홈리스, 난민·이주민, 아동청소년 법률교육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디엘지	로펌 내 센터	2023. 7.	1	아동·청소년,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이주민 법률지원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세종	사단법인	2014. 9.	1	북한이탈주민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사단법인 선	원	사단법인	2013. 11.	2	환경 공익소송 등
사단법인 희망과 동행	로고스	사단법인	2011. 11.	1	취약계층 법률조력, 출소예정자 법률교육
재단법인 동천	태평양	재단법인	2009. 6.	8	난민·이주민, 장애인, 여성/청소년, 북한/탈북민 법률지원, 사회적경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화우	재단법인	2014. 11.	4	홈리스, 이주민·난민, 장애인 등 법률지원

3. 2유형: 시민사회단체 기반 공익법 활동

시민사회단체 기반 공익법 활동은 공익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공익변호사단체 또는 일반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공익법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특정 인권 의제나 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공익소송, 권리옹호 활동, 제도개선 활동, 정책 연구 등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46) 상근 변호사 수는 2026. 5.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하 표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다음 표는 변호사 중심 공익변호사단체의 주요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 표 3-4 】 변호사 중심 공익변호사단체

공익조직 명칭	조직 형태	설립 시기	상근 변호사 수	주요 활동 분야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비영리민간단체	2014. 3.	2	이주민 인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비영리법인	2013. 7.	2	장애인 인권 등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2011. 4.	8	난민·기업과 인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2004. 11.	10	여성·장애·이주·난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비영리민간단체	2007. 3.	8	표현의 자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비법인 사단	1988. 5.	다수	인권 전반
장애인권법센터	법률사무소	2017. 1.	1	장애인 인권

또한 변호사가 특정 시민사회단체에 상근하며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 표 3-5 】 시민사회단체 상근 변호사 활동 사례⁴⁷⁾

단체명	설립 시기	상근 변호사 수	주요 활동 분야
국제아동인권센터	2011	0~1	아동
난민인권센터	2009	1	난민
녹색법률센터	1999	1	환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08	1	교육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03	0~1	장애
아시아의 창	2008	1	이주 인권
오픈넷	2013	0~1	표현의 자유
이주민센터 친구	2011	2	이주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명동	2015	0~1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플랜 1.5	2022	2	환경

4. 3유형: 노동운동 기반 공익법 활동

노동운동 기반 법률 활동은 노동조합 또는 노동 관련 법률기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공익법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노동 사건 대응과 노동권 보호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47) 현재 상근변호사가 없으나 과거에 1명이 활동한 시기가 확인되는 경우 '0~1'로 표시하였다(이하 동일).

다음 표는 노동운동 기반 법률 활동의 주요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표 3-6】 노동운동 기반 법률 활동 사례

단체명	설립 시기	상근 변호사 수	주요 활동 분야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2002	42	노동 사건 대응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2007	0~1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 권리
직장갑질119 ⁴⁸⁾	2017	0	직장 내 괴롭힘 대응

5. 4유형: 국제기구 기반 공익법 활동

국제기구 기반 법률 활동은 국제기구 또는 국제 NGO에서 활동하는 법률가들이 수행하는 공익법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국제 인권 규범이나 국제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국내 시민사회단체나 공익변호사단체와는 다른 활동 환경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법률가는 난민 보호, 노동 기준, 아동 권리 등 다양한 국제 인권 의제와 관련된 정책 연구, 법률 자문, 조사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일부 법률가들이 국제기구 또는 국제 NGO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다음 표는 국제기구 기반 법률 활동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표 3-7】 국제기구 기반 법률 활동 사례

기관	설립 시기	상근 변호사 수	주요 활동 분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1994	0~1	아동 권리 증진 및 아동 정책 활동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2001. 4.	1	난민, 무국적자 보호 및 관련 정책 활동

48) 직장갑질119의 경우 현재 상근변호사가 있는 조직은 아니지만, 노동 관련 법률 지원을 위해 여러 법률가들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다양한 조직에 소속된 법률가들이 사건 대응과 법률 자문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특정 조직에 상근 변호사가 소속된 형태라기보다 여러 법률가들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협력하여 노동 관련 권리 침해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인다.

III

시민사회 내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및 사례 분석

1. 공익적 법률가 양성 가능성과 한계

전통적 의미의 공익법단체에 한정하여 보면 제한된 재정 기반과 운영 여건 등으로 인해 경력 변호사의 유입은 물론 신입변호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기존의 공익법 활동이 일부 전통적인 공익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공익적 법률 활동은 반드시 시민사회의 후원에 기반한 전통적 공익단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다양한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공익적 법률가의 범위를 보다 확장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공익법 활동의 진출 경로와 기반을 넓히고 다원화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심층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 중인 ‘공익적 법률가’의 진출 과정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바로 해당 영역에 취업하였거나 공공기관 등 유사 직역에서 단기간 근무한 후 이직한 경우⁴⁹⁾와 ② 로펌 등 영리 영역에서 공익(비영리) 영역으로 이직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영리 영역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한 경력 법률가들이 어떠한 구조와 조건 속에서 공익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신입변호사의 공익 분야 진출에 관하여 검토하고, (2)항에서 경력 변호사의 공익 영역 이동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신입변호사의 진출 경로로서의 공익적 법률가

1) 진출 과정 분석

먼저 6명의 인터뷰 참여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직후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단기간 근무하고 현 직장에 취업한 인원은 총 3명인데, 대략의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직후 현 직장에 취업한 반면, E 변호사와 C 변호사는 각기 지방자치단체 법률지원과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8, 12개월 가량 근무하다가 이직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당시 E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여러 과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해 자

49) 공익 영역에 단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를 신입변호사와 함께 분류한 것은 영리 영역에서 공익 영역으로 이동한 경력 법률가의 사례와 특징을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문하였고, C 변호사는 사무처에서 민원상담을 하거나 탄핵 등 주요 사건의 변론 준비나 사건기록 아카이빙을 하였다. 이러한 업무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공익적 성격을 지니며, 특히 헌법재판 관련 업무는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직의 구성과 운영방식, 업무의 수행 목적이나 활동 방식 등에 있어서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익법 활동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실제 E 변호사는 현재 장애 및 재난참사 피해자 인권에 관한 일을 주로 수행하는데, 이전 직장과의 가장 큰 차이로 기존 법리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기보다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국제업무와 시민사회와의 연대체 활동을 하고 있는 C 변호사는 이전 직장의 경우 물적·인적 자원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었고 전산 지원이나 업무 서식이 명확하게 체계화되어 있었던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F 변호사는 별도의 전 직장 경험 없이 곧바로 현 직장에 진출한 사례로서, 최근 공익법단체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노동운동을 주요 활동영역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연구진은 연구의 주제가 공익적 법률가 양성에 있는 만큼, 인터뷰 참여자들이 왜 시민사회 영역의 공익활동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주목하였다. 특히 공익적 법률가를 양성하는 현행 교육·훈련 체계의 가능성과 한계를 훑아보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필요한 경우 학부 시절의 경험까지 함께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① 비공식적 요소로서 법학전문대학원 내 동아리나 학회 등의 활동 경험, ② 공식적 요소로서의 리걸클리닉·관련 과목 수강 및 실무수습 경험, ③ 공익 분야와 관련된 네트워크의 존재 및 참여 여부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① 법학전문대학원 내 동아리·학회 등 비공식적 요소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의 동아리나 학회 활동이 공익 분야 진출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는 비록 학교 차원에서 진행되는 정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연구진은 이들 모임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성적 평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른바 ‘검사·로클릭(재판연구원)·대형로펌’ 중심의 진로 환경에서 공익 영역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거나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경험이 공익 영역으로의 진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인터뷰 참여자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인터뷰에서는 공통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내 동아리 및 학회 활동으로부터 공익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기보다는, 학부에서의 경험이나 사회적 재난참사와 같은 외부적 요인을 계기로 공익적 지향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단순히 공익에 대한 관심을 갖는 수준을 넘어 학부 단계에서부터 이미 공익변호사에 대한 진로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생각한 상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이후 비로소 공익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향후 법률가로서의 진로에 대한 구체화가 일정 부분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학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F: 대학 때 신문사 끝나고 공감 자원활동을 했었어요. 공감 변호사들도 월급은 적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공감은 다양한 인권분야를 다루는데 노동 중에서도 조직 노동에 관심이 많았죠. 그걸 보고 저런 지향성을 갖되 조직 노동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E: 공익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처음 생각한 건 대학교 때였어요. 비정규노동 대응하는 동아리, 환경 관련 동아리, 과 내 신문동아리를 하면서 공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죠.

다만 외부적 요인에 의해 공익에 대한 관심이나 지향이 형성된 시점과 정도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이후 동아리나 학회 등을 활용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학부 단계에서부터 공익에 대한 관심은 물론 공익변호사 진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모의법정 경연대회나 학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진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이후 사회적 재난참사 등을 계기로 비로소 공익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에는 동아리나 학회 활동을 공익 관련 인식이나 인권 현황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F: '손잡고'에서 진행하는 모의법정 경연대회에 참여하여 노동법 관련 서면을 썼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법 담당 교수님께 도움을 받았죠.

E: 당시만 해도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학회 활동이 좀 위축되던 시기였어요. 그래도 학회에서 세미나도 자주 진행하고 모아서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전 학년에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서 선배 공익변호사를 불러 라운드테이블을 추진하기도 했어요.

C: 로스쿨에서 인권법학회, 인권법연합 활동 등을 통해 같은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게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인식, 인권 현황에 대한 학습도 되었던 것 같고요.

이를 종합하면 비록 동아리나 학회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공익에 대한 관심이나 지향 자체를 새롭게 형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학부 시절의 활동이나 사회적 재난참사 등을 계기로 형성된 문제의식과 관심을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

론에 이르게 된다. 달리 말하면, 동아리·학회 활동과 같은 비공식적 요소는 인권의식의 형성이나 공익 영역 진출 과정에서 충분히 중요한 매개로 기능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변호사시험의 난이도 상승과 합격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이와 같은 활동이 점차 축소된다면, 공익적 법률가 양성이라는 목표 역시 더욱 실현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② 리걸클리닉·관련 과목 수강·실무수습 등 공식적 요소

다음으로 리걸클리닉, 관련 과목 수강, 실무수습 등 공식적 경험 요소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는 대개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공익법 관련 단체 등에 의해 정규 프로그램의 형태로 기획·운영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이를 ① 리걸클리닉, ② 관련 과목 수강, ③ 실무수습 및 외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가. 리걸클리닉

분석 결과, 인터뷰 참여자 상당수는 리걸클리닉을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리걸클리닉 자체가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인터뷰에서는 국제인권 클리닉을 수강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학생들로 하여금 이후의 진로를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으며 긍정적 평가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에 관하여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존하였다.

C: 리걸클리닉은 좀 더 활성화되고 체계적이면 좋겠어요. 학생들에게 상담을 시키는데 개인적으로는 버거웠죠. 민법만 배운 상태에서 상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사안이 있으니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것보다 정확히 관련한 내용을 배우고 상담을 하는 것이 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수업만 듣다가 실전에 투입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보더라도 공익 관련 실무 경험과 문제의식을 접할 수 있는 리걸클리닉을 공익 영역에 관심을 가진 참여자 상당수가 수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일부 인터뷰 참여자의 긍정적 평가에 따르면 리걸클리닉은 학생들이 향후 진로를 모색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임에도, 상당수 참여자들이 이를 수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특별한 인상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이에 대하여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리걸클리닉을 수강하지 않은 인터뷰 참여자들의 경우, 이미 공익 영역으로의 진로를 비교적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리걸클리닉을 통해 관련 경험을 쌓을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리걸클리닉이 공익 영역 진출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험과 문제의식을 제공하는 장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특히 공익변호사들이 주요하게 다루는 장애, 여성, 아동·청소년, 탈북민, 이주·난민 등의 이슈가 리걸클리닉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인터뷰 참여자의 수가 많지 않고, 최근 기수의 경험까지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관련 과목 수강

다음으로는 공익 영역과 관련된 과목 수강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한 참여자는 관심 분야 자체가 ‘전투적 노동운동’과 같이 특수하여 관련 과목으로 노동법을 수강하긴 하였으나 특별한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노동법 과목이 노동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와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운동 자체를 다루지는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과목이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배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다른 인터뷰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중 수강한 ‘법철학’ 과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익변호사의 업무 특성상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정해진 결론이나 통설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실제로 공익 영역에는 기존 법체계가 충분히 포섭하지 못한 소수자나 예외적 상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이나 불합리한 처우가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과정이 시험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특정한 정답과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그것이 과연 공익적 법률가 양성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비판적 문제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민사법, 형사법과 같은 기본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에도 다수설만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소수설과 비판적 견해를 함께 다룬다면 학생들이 다른 관점에서 사고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는 단순히 어떤 과목을 개설할 것인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험 중심의 법학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학설과 해석론, 그리고 기존 법질서에 대한 비판적 관점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법학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 법철학은 판례 비판 수업이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됐어요. 판례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뀌나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는 전문인증과정(공익인권과정)의 일환으로 여러 수업을 수강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국제인권법’과 ‘공익인권법’ 과목이 이후 실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다만 이러한 경험이 공익 분야로의 진로 선택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취지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진로 형성과의 연관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가진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국제인권법 과목이 국내의 사회문제나 법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설명되지 못함에 따라 관련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내용이 충분히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C: 국제인권법을 통해 국제법이 다루지 않은 여러 가지를 배웠죠. 헌법과 유사하지만 그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헌법의 상식을 깰 수 있는지 흥미를 느꼈어요. 그 외에 미국 헌법, 공익인권법 등도 수강하였는데 외부 강사들이 한국 사례를 소개하고, 실습 비슷하게 마치 임상법학처럼 진행하는 것을 통해 현재 배우는 게 실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수업이 친절하진 않았죠. 그래도 지금 업무를 하는 데 당시 배운 것들을 몰랐다면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참여자들은 과목 수강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접하거나 특정 공익 분야에 관련된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경험이 공익 영역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 문제의식을 새롭게 형성하는 데까지 이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비판적 문제의식과 전문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교육과정 역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인증과정(공익인권과정)의 일환으로 여러 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공익 영역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형성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과목은 다양한 관점에 대한 사고를 확장시키거나 특정 공익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사전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학생들뿐 아니라 각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수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목과 교육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공익적 법률가 양성과 관련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어떠한 과목과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과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 실무수습 및 외부 프로그램

실무수습이나 관련 단체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의 경우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러 요소들 가운데서도 공익 분야로의 진로 선택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현 직장에서 실무수습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경험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했다.

F: 노동 이슈에 관심을 갖긴 했지만 막상 학점 경쟁이 있는 후로는 대형 로펌이나 로클럭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2학년 때 현 직장에 실무수습을 온 후로 생각을 굳히게 됐어요. 민변 실무수습은 재미있었지만 제가 원하는 사건은 현 직장에서도 가장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결국 직접 가보고, 일하는 변호사와 이야기도 해봐야 아는 거라서 실무수습이 대형 로펌 외에도 다양한 곳을 포함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

한편 E 변호사는 실무수습을 국회에서 진행하였는데, 입법절차를 경험하고 입법안을 수정하는 등의 업무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현재 공익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진로 선택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경험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당시 녹색법률센터에서 진행한 ‘환경분쟁지역 톨아보기’ 프로그램을 언급하였다. 특히 녹색법률센터 소속 공익변호사와의 관계 형성이 해당 경험과 함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아래 네트워크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 프로그램 중에 밀양 송전탑 사건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시 가보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직접 가보니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C 변호사는 ‘법무법인 덕수 공익센터’와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의 실무수습 경험이 공익 분야로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C: 법무법인 덕수 공익법센터 실무수습 경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주민센터 친구’에 가보고 민변 회의에 참석하면서 세상에 다양한 일들을 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대형로펌, 기업 등 양지에 있는 직업선택의 경로만 경험하게 되는데, 민변회원들이 있는 사무실에 갔을 때

변호사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시험 마치고 난 후 졸업 직전에는 희망법 실습을 갔었어요. 희망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되었을 때인데 사무실 운영이나 상근 변호사가 각자가 가진 생각을 많이 듣는 자리였죠. 각 단체에서 변호사들이 실제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진 게 아닐까 해요.

특히 여러 요소 중 인터뷰 참여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공익 영역 진출에 직접적이고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실무수습 및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중에서도 실제 해당 단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경험 역시 공익 영역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던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제 의식이나 진로 의식을 형성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형성되어 있던 관심과 지향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역할에 가까웠다. 실제로 인터뷰 참여자들은 실무수습 등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공익 영역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나 지향을 갖고 있었거나 이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었던 만큼, 실무수습 경험이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유사한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공익 영역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 공익법단체 등에서의 실무수습을 신청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에게 공익 영역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제공하려는 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19년부터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계 방학 기간 공익기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는 「공익법무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⁵⁰⁾ 이처럼 학생들이 공익 영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경우, 공익 분야를 보다 현실적인 진로 선택지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거나 연결하는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 영역 관련 실무수습 참여가 개별 학생의 관심과 자발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공익 분야를 보다 현실적인 진로 선택지로 접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차원에서 관련 프로그램의 연계 및 지원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관련 네트워크의 존재 및 참여 유무

인터뷰에서는 공익 영역에 대한 깊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5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법무실습」은 2019년부터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계 방학 기간 공익기관에서 공익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한 후 결과 발표와 성과 공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에 진로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당수는 실무수습을 계기로 공익 분야 진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이 단순히 ‘실무수습 경험’ 자체였는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형성된 ‘네트워크와 관계’였는지를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각각의 영향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구별하여 검토하는 작업은 향후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제도적·교육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E 변호사의 경우 녹색법률센터에서 진행한 ‘환경분쟁지역 토크보기’ 프로그램에서의 경험과 해당 단체 소속 공익변호사와의 인연이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E 변호사는 녹색법률센터에서 만난 공익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직하면서 “안에 들어와 보면 더 느낄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이러한 조언이 첫 직장을 지방자치단체로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E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통해 선배 공익변호사를 만난 경험이 있었고, C 변호사 역시 학교에서 외부 공익변호사를 초청하여 진행된 특강에 참여한 바 있었다. 즉 실무수습 이전에도 일정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만일 네트워크의 존재 자체가 진로 선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였다면 실무수습 이전 단계에서도 진로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E 변호사와 C 변호사의 경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E 변호사가 첫 직장으로 지방자치단체 법률지원과를 선택한 것 역시 단순히 공익변호사와의 인연이나 네트워크 때문이라기보다는, 해당 변호사가 밀양 송전탑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로 활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한 데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E 변호사는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머무르지 않았고 8개월 후 현 직장으로 이직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공익 분야로의 진로 선택 과정에 있어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네트워크의 존재 자체라기보다는, 실무수습과 같이 공익변호사가 실제로 활동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네트워크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실무수습 등과 분리된 별개의 요소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단순한 네트워크의 존재만으로는 진로 결정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실무수습과 같이 상대적으로 밀도 높은 접촉과 경험이 수반된 경우에는 네트워크 역시 진로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C 변호사는 첫 직장으로 헌법재판소를 선택하였는데, 당시에는 공익법단체 등의 채용 공고가 많지 않았고, 학부에서 노동법을 공부한 영향으로 기업 측 업무를 수행하는 진로는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본래 희망하였던 최종적인 진로라기보다는, 현실

적인 선택지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근무 기간도 약 1년 정도로 길지는 않았다.

결국 E 변호사와 C 변호사는 졸업 직후 곧바로 시민사회 영역의 공익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으나,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 영역에서 근무하였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현재의 공익변호사 활동으로 진로를 옮겼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이동은 현재의 직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상의 과도기적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연구진은 당초 단기간이라도 다른 공익 영역에서 근무한 뒤 현재의 직장으로 이동하게 된 배경에 별도의 요인이나 동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이동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유의미한 공통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④ 소결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익 영역으로의 진출은 대체로 ‘관심의 형성’, ‘관심과 지향의 심화’, ‘현장 경험을 통한 진로의 구체화 및 확정’이라는 단계적 구조를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① 여러 요소 가운데 공익 영역 진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실무수습 및 관련 단체에서 주관하는 외부 프로그램이었고, ② 동아리·학회 등의 비공식적 요소와 공식적 요소 가운데 리걸클리닉, 교과 수강, 네트워크의 존재 및 참여 여부 등은 이미 공익에 대한 관심이나 진로 의식이 어느 정도 형성된 학생들에게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다만 실무수습 및 외부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요소에 대하여 당초 공익 영역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던 학생들에게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인터뷰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를 종합하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에는 학생들에게 공익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문제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걸클리닉이나 관련 교과 수강이 예상보다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운영되는 공익 관련 강의의 내용, 실제 수강 인원, 폐강 비율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증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방론으로서 공익 영역 진출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으로는 급여 등 재정적 요소와 자신이 취업을 희망한 단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가 언급되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실무수습 등을 통해 해당 단체를 직접 방문하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실제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지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은 공익 영역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이나 편견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도 실무수습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경력자 이직 경로로서의 공익적 법률가

1) 의의

여기서는 로펌 등 영리 영역에서 비영리(공익) 영역으로 이직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 관련 연구가 신입 공익변호사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경력 법률가의 공익 영역 진출을 분석하는 작업은 공익적 법률가 양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경력자의 경우 경력이 축적될수록 영리 영역에서 비영리 영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이나 재학 중 경험이 이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하에서는 인터뷰 참여자들이 어떠한 계기와 문제의식 속에서 공익 영역으로 활동 영역을 옮기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요소나 도움이 된 경험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실제 이직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한계를 경험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신입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의 경험과 활동 등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 대상은 앞서 (1)항에서 살펴보지 않은 3명이며, 그 경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표 3-8 ■ 경력자 인터뷰 참여자의 주요 경력

구분	이직 전 주요 경력	전 직장 근무 기간	현 직장 근무 기간
A	송무 및 기업자문, 특별수사관, 사내변호사	총 약 10년	약 3년
B	보건복지부 및 공동모금회 주관 사업 수행, 일반 송무	각 1년 6개월, 1년 가량	약 9년 3개월
D	일반 로펌, 비영리 사단법인	각 7년, 4년	약 3년 8개월

이 중 B 변호사는 영리 영역으로 이동하기 이전에 이미 공익 영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었고, 당시 수행하였던 업무 역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일정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신입변호사의 사례와 함께 분석할 여지도 있다. 다만 엄밀하게 보면 이후 영리 영역에서 근무한 뒤 다시 공익 영역으로 이동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리 영역에서 공익 영역으로 전환한 경력자 범주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A 변호사와 D 변호사는 각각 영리 영역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후 비교적 고년차에 이르러 공익 영역으로 이직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인터뷰 참여자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D 변호사의 경우에는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에 이직한 후 다시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2) 진출 과정 분석

① 공익 영역으로 진출하게 된 이유와 배경

분석 결과 인터뷰 참여자들이 영리에서 공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로는 ‘네트워크’와 ‘전문성’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공익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지향을 가진 주변인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전문성이란 현재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분야 및 업무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뜻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인터뷰 참여자 중 2인은 영리 영역에서의 경력이 각각 약 7년과 10년에 이를 정도로 길었는데, 공익 영역으로의 이직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주변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이 자신이 관심을 가진 공익 분야와 유사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인의 경험을 듣거나,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던 지인이 설립한 단체를 보고 이직을 결심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별도의 외부 기관이나 공식적 연결망이 아닌 가까운 지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물론 영리 영역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자들이 현실적으로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와의 접점을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영리 영역에서 공익 영역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연결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인터뷰 참여자들이 이직하였던 시기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크게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적 관심이나 문제의식을 기존부터 가지고 있었던 경력자가 아니라면, 영리 영역에서 공익 영역으로의 이직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르게는 중학교 시절부터, 늦어도 학부 시절에는 막연하게나마 공익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관심은 결과적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야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인터뷰에서 확인된 네트워크는 공익적 지향 자체를 새롭게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다기보다는, 이미 형성되어 있던 공익적 지향을 바탕으로 실제 이직 경로와 활동 영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 ○○○(국제어린이양육기구, 단체명은 연구진이 익명처리함)에서 일했던 지인한테 얘기 들어요. 혼자 시장조사하고 주변 사람의 조언과 도움을 얻어서 알음알음 해온 것 같고 특별히 제도적 지원이 있지는 않았어요.

D: 영리에서 비영리로 갈 때가 큰 선택이었는데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레퍼런스, 벤치마킹할 부분이 없었어요. 경계인처럼 구경만 하고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었던 경우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몰라서 두려움이 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전 직장동료들이 만든 단체여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욱이 특정 분야에서 경력이 장기간 축적될수록 일반적으로는 경로 의존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단순히 중학교나 학부 시절부터 공익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익 영역으로의 이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네트워크 역시 이직처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데에는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나, 그것만으로 공익 영역으로의 전환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낸 것은 아니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약 7~10년 가량의 비교적 긴 경력을 가진 인터뷰 참여자들이 특별한 결정적인 사건이나 계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지점에서 공익 영역으로의 전환을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기간 휴직 이후 다시 업무를 시작하거나, 로펌에서 유학 여부 등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에서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공익적 문제의식과 지향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공익 영역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특정한 결정적 계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이나 재학 중 경험을 통해 일정 수준의 공익적 관심과 지향이 형성될 경우 당장, 비록 졸업 직후 곧바로 공익 영역으로 진출하지 않더라도 이후 다양한 경력을 거친 뒤 다시 공익 영역으로 이동할 가능성 역시 존재함을 시사한다.

A: 이제 연차도 좀 쌓였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대학 전공이 아동학이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아동 분야를 떠올리게 된 것 같아요.

D: 환경에 관심은 있었지만 안전한 선택으로 대형 로펌을 갔어요. 환경팀이 있는 로펌이었거든요. 균형 잡힌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입사했지만 대형 로펌의 업무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유학 갈 타이밍이 되어 고민 후 원래 생각했던 길을 시도해 보아야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유학을 다녀오면 다른 길을 가지 못할 것 같았죠.

다만 인터뷰 과정에서는 영리 영역에서 공익 영역으로의 이동이 경우에 따라 비가역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직에 앞서 충분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공익변호사가 실제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추정하건대 신입변호사보다 경력자의 경우, 기존에 형성된 경력과 전문성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선택이 비가역적인 결정이 아닌지에 대해 더욱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경력 법률가들에게는 단순히 공익에 대한 추상적 관심을 환기하는 수준을 넘어, 공익변호사라는 직역의 업무 내용과 활동 방식, 향후 경력 진로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는 앞서 신입변호사 부분에서 공익변호사 활동이 실제 진출 가능한 진로 선택지의 하나로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과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

D: 그럼에도 비영리를 택하였던 이유는 영리 영역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것에서 느끼는 한계 때문이죠. 일 자체는 보람이 있었지만 전부 법 해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없거나 규제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정말 무력했어요. 법적 의무가 아닌 것을 마치 그런 것처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윤리적이지도 않죠. [...]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 중 하나가 공익변호사 진로가 고민할 수 있는 흔한 진로가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진로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인식시켜 주어야 해요. 소송변호사로서의 실력이나 질을 봐도 공익변호사가 경험하는 것의 밀도가 굉장히 크고,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드는 진취적이고 강력하고 도전하는 형태의 진로로서 공익변호사가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한편,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공익 영역으로의 이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분야가 전통적 의미의 공익 업무와는 다소 다른 성격을 가지며, 보다 특수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반면 실제로 수행하고자 하는 변호사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공익 분야에 속하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을 보다 분명하게 축적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익 분야 중에서도 전문성의 축적과 발전 가능성이 큰 영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익 분야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이나 개인의 공익적 신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직역의 특성에 맞추어 어떠한 점에서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관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경험과 전문성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업무와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

B: 후견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되다 보니 변호사 되자마자부터 후견 전문가 소리를 들었어요. 역사를 같이하면서 왔기 때문에. 첫해부터 제가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일반 송무를 하면서 그게 다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 직장 공고가 났는데 후견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

겠다고 해서 오게 됐어요.

실제로 B 변호사의 경우에는 커리어의 출발점이 영리 영역이 아니라 공익 영역에 있었는데, 다른 인터뷰 참여자들과 달리 공익적 지향 자체보다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경험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영리 영역에서 공익 영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망설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실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경험한 동아리·학회 등의 비공식적 요소나 리걸클리닉, 관련 과목 수강과 같은 공식적 요소가 공익 영역으로의 이직 과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초기 기수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재학 당시 관련 수업 자체가 충분히 개설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수강 경험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것이 이후 진로 선택이나 이직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지는 못하였다.

② 진출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한계

인터뷰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영리 영역에서 공익 영역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의 주요한 어려움으로는 ①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 ② 충분하지 않은 일자리, ③ 네트워크 또는 레퍼런스 등의 부족이 제시되었다. 이 가운데 ③의 문제는 앞서 함께 살펴본 바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나 제한된 일자리의 문제는 공익 영역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인 만큼 별도의 상세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력이 축적될수록 기존의 경제적 기반이나 생활 수준 역시 함께 형성되는 만큼, 이직 과정에서 급여 수준의 차이가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A: 공익 섹터 중에서도 아동을 전담하는 변호사 수나 단체가 많지 않다고 느꼈어요. 선택의 폭이 좁았어요. 채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이다 보니 창업을 해야하나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죠. 게다가 연봉이 대폭 삭감돼요.

2. 공익적 법률가로서의 활동의 지속 가능성

분석 결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공익법 활동을 수행하는 법률가 활동의 지속 가능성은 개인의 가치 지향이나 헌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지속 가능성이 개인의 동기와 전문성뿐만 아니라 활

동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재정 구조, 공익소송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 전문성 형성과 학습 경로, 시민사회 내부의 네트워크 구조, 공익 영역 내외에서의 경력 이동 가능성, 그리고 장기적인 소진을 완화할 수 있는 삶의 조건 등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특히 이러한 요소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구조 속에서 경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조직의 재정적 기반은 단순히 급여 수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력 충원과 업무 분담, 사건 수행의 범위, 교육과 연수의 기회, 휴식의 가능성, 장기적 경력 설계의 선택지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또한 전문성의 형성과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사건 수행과 제도개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일 뿐 아니라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부담과 소진을 완화하는 동료 지원 구조로도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익변호사 활동의 현실을 다룬 언론 보도에서도 시민사회 영역의 공익법 활동이 제한된 재정과 인력 조건 등 쉽지 않은 환경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해당 보도에서는 국내에서 전업으로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규모가 전체 변호사 수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많은 공익단체가 후원금이나 프로젝트성 사업비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⁵¹⁾ 이러한 상황은 시민사회 영역 공익법 활동이 개별 법률가의 헌신만으로 지속되기 어렵고,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조직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공익적 법률가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개인의 직업 선택이나 헌신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익법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조직적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심층 인터뷰 분석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지속 가능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적 기반, 공익법 활동 과정에서 전문성 형성, 동료 및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다.

(1) 재정적 기반

인터뷰에서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공익법 활동을 수행하는 법률가의 활동 지속 가능성을 규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조건으로 재정적 기반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여기서 재정적 기반은

51) 더나은미래, “‘급여는 반토막, 업무는 두 배’...0.3% ‘괴짜’ 변호사들의 기막힌 생존기”, 2026.3.5., <https://futurechosun.com/archives/144550> (2026. 5. 31. 접속).

단순히 개인의 급여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의 재정 구조와 공익소송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까지 포괄하는 조건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재정적 조건이 개인의 경력 선택과 활동 지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특히 재정적 기반은 개인의 생활 안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인력 구조와 업무 분담, 사건 수행의 방식, 교육 및 연수 기회의 제공, 장기적인 활동 계획의 수립 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터뷰에서 나타난 재정적 조건은 크게 ① 개인의 보수 구조, ② 단체의 재정 구조, ③ 공익소송의 구조의 세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1) 개인의 보수 구조

인터뷰에서는 공익법 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재정적 조건이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다. 특히 공익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다른 법조 경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수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보수 격차는 동일한 시기에 법조계에 진입한 동료 변호사들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크게 체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인터뷰에서는 공익 영역에서의 보수 수준이 단순히 임금 차이의 문제를 넘어, 생활 안정이나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유지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함께 나타났다.

F: 일단 연봉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물론 다른 공익인권 분야에 계시는 변호사님들보다는 좀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민변 상근 활동 변호사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듣긴 했는데 [...] 대형 로펌 갔던 친구들 연봉 보면 부럽기도 하고 [...]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아쉬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C: 미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노후 대비나 이런 것들은 좀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또한 시민사회단체나 비영리기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경우 보수 체계 자체가 다른 법조 영역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역시 인터뷰에서 언급되었다. 특히 사건 수행 실적에 따른 보상이나 성과급 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기본급 중심의 보수 구조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A: 여기는 성과금도 없어요. 그냥 기본 급여밖에 없고 [...] 대형 NGO 대부분이 상황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보수 수준의 차이가 공익 영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감수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 역시 함께 나타났다.

C: 제가 생각했던 급여의 기준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어찌 되었건 사회 초년생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F: 다른 친구들 변호사 친구들에 비해서는 적게 받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거는 제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부터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제가 감당하고 결단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항상 괴롭기는 하지만 항상 행복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B: 어디서 일을 하든 간에 나는 어느 정도 사회에 기여하고 그걸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돈도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돈을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응답은 공익법 활동을 직업적 경로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활동의 의미가 보수 수준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부 인터뷰에서는 공익 영역에서의 활동을 단기적인 보수 수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활동 전망이나 직업적 의미와 함께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B: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은 그냥 씨 뿌리는 그런 거고 언젠가는 내가 이걸로 뭔가 돈은 아니라도 어쨌든 뭔가 이렇게 더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편 인터뷰에서는 공익 영역에서의 활동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특히 단순한 사명감이나 헌신만으로 활동이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성과 전문성의 활용 가능성이 결합될 때 활동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D: 귀한 겁니다. 전문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뭐 진로나 소득이나 앞으로의 생애 주기의 어떤 안정성 이걸 떠나서 그냥 전문가로서, 프로페셔널로서 법률가로서 나의 실력과 나의 가치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손해나거나 깎아 먹는다거나 버린다는 느낌을 안 가질 수 있었던 게 되게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죠. 당연히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때는 이제 재단 편당을 받고 어느 정도 최저임금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나 그에 준하는 임금을 주겠다고 했으면 저는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오래 하지 못했을 거다. [...] 처음에 이제 사명감과 희생 정신을 가지고 하다가 점점 이렇게 내 안에 약간 배신감과 왜 알아주지 않지 막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금방 나의 마음속에 그런 게 소진되고 약간 쓸쓸함을 가진 채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정도의 안정 최소한 지속

가능성,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 그리고 나의 진로의 가치에 있어서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한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보였다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사실 같은 이유로 예를 들면 대학 졸업하고 바로 NGO나 활동가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것도 있지만 그때 까지 파악한 정보로는 자신이 없었다 [...].

이와 같은 응답은 공익법 활동이 단순한 헌신이나 희생만으로 유지되는 활동 영역이라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성과 전문성의 활용 가능성이 함께 보장될 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터뷰에서는 공익법 활동의 지속 가능성이 개인의 선택이나 헌신만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역시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F: 근로시간이나 워라밸 같은 것들은 사실 이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거나 이미 어느 정도 감수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결국 남는 건 재정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재정 지원을 얘기하는 게 제일 현실적인 이야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공익적 가치와 활동의 의미를 중요한 동기로 삼아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장기적인 활동 지속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성 역시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익법 활동의 지속 가능성은 개인의 헌신에만 의존하여 유지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단체의 재정 구조

인터뷰에서는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지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개인의 보수 수준뿐 아니라 공익법 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재정 구조 역시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특히 시민사회 영역에서 공익법 활동을 수행하는 법률가들은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기반한 비영리 조직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재정 구조는 인력 운영, 업무 부담, 활동 환경의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조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터뷰에서는 기부금 기반 단체의 재정 구조가 공익법 활동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업무 환경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기부금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에서는 매년 일정 수준의 모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조직에서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거나 확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법률가들의 업무 부담과 업무 강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 확보의 불확실성은 단순히 조직 운영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활동가들이 체감하는 심리적 부담과 장기적인 활동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언급되었다.

E: ○○○(소속 단체명을 연구진이 익명 처리함)도 이제 계속 좀 그리고 이제 인력난이 있는데 사실은 이 단체의 어떤 인력난이라는 건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근데 저희는 기부금 단체다 보니까 항상 모금을 계획을 세우고 그 연도에 모금을 항상 채워야 되는 사실 압박감이 있어서 그래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지금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재정적 어려움이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심리적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인터뷰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재정 구조가 단순히 재정 규모의 크고 작음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재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성되고 사용되는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함께 언급되었다. 특히 후원금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원을 조직 운영에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구조는 단체가 확보한 재원을 인력 운영이나 조직 유지에 활용하는 데 일정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A: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인건비는 비지정 후원금이라는 재원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한 지정 후원금이라는 재원에서는 사업비만 쓸 수 있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등을 쓸 수가 없게 법적으로 막혀 있거든요.

이와 같은 응답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수행되는 공익법 활동의 재정 문제가 단순히 재원의 규모가 충분한지 여부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와 같은 구조적 조건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단체가 일정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조직 운영이나 인력 유지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원 구조는 공익법 활동을 수행하는 법률가들의 활동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터뷰에서는 공익법 활동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재정 기반 자체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도 제시되었다. 공익 활동이 공공적 성격을 지닌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사회적 재정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시민

사회 영역의 공익법 활동은 개인 기부나 민간 후원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D: 일단은 공익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재정 지원이 우리나라가 약하고 개인 기부금에 의존도가 너무 높고 사실 그런 방식의 운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확산을 위해서는 재단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재단 기부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환경은 공익법 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재정 구조와 이를 둘러싼 사회적 재정 기반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부금 중심의 재정 구조와 제한된 재원 사용 구조는 조직의 인력 운영과 업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공익법 활동을 수행하는 법률가들이 장기적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공익소송의 구조

인터뷰 참여자 중 일부는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지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사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공익소송은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소송 절차에서는 일반 사건과 동일한 비용 구조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이 공익법 활동의 범위와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D: 지원이요? 뭐 사소하게는 사실은 뭐 정보 공개 청구라 이런 국가를 상대로 한, 아니면 공공의 영역을 상대로 한 소송 외에 그 유형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패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생각보다 큰 부담일 수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제한적인 예산이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몇 년 사이에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패소비용 부담 안 시켰는데 요즘은 막 400만 원씩 받고 이런 것들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응답은 공익소송이 사회적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이 활동의 범위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공익적 법률가들은 제한된 재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은 단순한 사건 수행의 문제를 넘어 공익적 문제 제기의 방식에도 일정한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터뷰에서는 공익소송이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D: 원고적격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법률적인 영역이라서 또 다른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제도적 지원이라면 그렇죠. 이제 공익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아니면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하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게 인정되면 실무적인 부담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장치가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라는 거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같네요.

이와 같은 응답은 공익소송이 공익적 법률가의 중요한 활동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익적 성격을 가진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공익법 활동 과정에서의 전문성 형성

인터뷰에서는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지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공익법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전문성 역시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다. 시민사회 영역의 공익법 활동은 환경, 노동, 장애, 재난 등 특정 사회 문제나 제도 영역과 결합된 사건을 장기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이 전문성 형성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법 활동에서는 동일한 사회 문제나 제도적 쟁점을 반복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축적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험 축적이 활동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에서는 공익법 활동이 단순히 개별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맥락에 대한 분석을 함께 요구하는 활동이라는 점이 언급되었다.

D: 비영리 섹터 시민 사회에서 [...] 기후 변화의 방지랑 우선순위를 두고 했을 때 어떤 해법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공부와 정보 소화와 분석이 필요한 일이겠구나.

이와 같은 응답은 공익법 활동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이 단순한 법률 지식의 축적을 넘어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맥락에 대한 분석 능력을 포함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익법 활동에서는 특정 사회 문제와 관련된 제도나 정책 환경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정보 분석이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또한 인터뷰에서는 특정 제도 영역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축적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례도 제시되었다.

B: 이게 후견 제도가 2014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는 변호사 되자마자부터 후견 관련 일을 계속 해 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도 시작할 때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첫해부터 계속 제가 제일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은 응답은 특정 제도나 사회 문제와 결합된 활동 경험이 장기간 축적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형성되는 사례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한편 인터뷰에서는 공익법 활동이 조직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분업화되기보다는 제한된 인력 구조 속에서 각 영역의 활동이 비교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E: 가끔 너무 좀 약간 게릴라 전투처럼 각자 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응답은 시민사회 영역의 공익법 활동이 비교적 작은 조직 규모나 제한된 인력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성 형성이 체계적인 교육이나 분업 구조에 의해 형성되기보다는 활동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부 인터뷰에서는 특정 분야의 사건을 장기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형성되는 동시에 활동 경험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F: 저는 계속 변호사 된 이후로 8년 동안 노동 사건밖에 안 했어요. [...] 노동법밖에 계속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저는 법학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었는데 많은 사건들을 물론 노동 분야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 외에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조금 아쉬움이 드는 건 개인적으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시민사회 영역의 공익법 활동에서 형성되는 전문성은 특정 사회 문제나 제도 영역을 지속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 기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문성은 단순한 법률 지식의 축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와 정책적·제도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함께 요구하는 활동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공익법 활동의 지속 가능성 역시 특정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며 장기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3) 동료 및 시민사회 네트워크

인터뷰에서는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지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동료 법률가 및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익법 활동은 개별 법률가의 독립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른 법률가,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관계망은 사건 수행 과정에서의 협력, 공익 소송 사례의 공유, 활동 경험의 축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동을 지속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인터뷰에서 확인되었다.

먼저 일부 인터뷰에서는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법률가들 사이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실제 활동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제시되었다.

B: 저는 ‘로펌 공익 네트워크’의 모델이 되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각 펌이 부담스럽지 않고 하지만 각자 사실 각자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는 것만 해도 사실 엄청 서로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도 별로 이런 모델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사회적 조직들도 보면은 그렇죠. 물론 근데 그런 조금 더 강화하는 강화를 하는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있기는 있어요. 그게 과연 현실적인지도 잘 모르겠고 [...].

이와 같은 응답은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법률가들이 서로의 활동 영역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협력의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특히 서로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는 관계가 형성될 경우 사건 대응이나 공익 활동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또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분야의 조직 네트워크 사례가 언급되기도 하였다. 다음 발언에서는 사회적 조직 네트워크 사례로 ‘임팩트 얼라이언스’가 소개되었다.

B: 저희 ○○○(소속단체명을 연구진이 익명 처리함)이 재작년인가 작년인가부터 임팩트 얼라이언스에 가입해가지고 저희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루트 임팩트가 거기가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그쪽 성수동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조직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혈거운 단체인데 거기는 활동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임팩트 얼라이언스 차원의 사무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일을 기획을 해가지고 쪽쪽 계속 뭔가 활동들을 해나가고 거기 매월 뭐가 있고 뭐 엄청 뭐가 많은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계속 협업하는 고리들을 찾아가지고 각자 계속 네트워크 하면서 더 이게 활동 영역들을 넓혀가고 아니면 더 깊게 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발언에서 언급된 ‘임팩트 얼라이언스’는 법률가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 조직들의 네트워크 사례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사례는 네트워크가 단순한 교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을 중심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협업을 촉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언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공익 활동 네트워크 역시 단순한 관계 형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조직적 기반과 운영 구조를 갖추는 때 보다 활발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인터뷰에서는 공익 영역의 네트워크가 존재하더라도 새로운 참여자에게는 이러한 관계망에 접근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경험도 언급되었다.

A: 사실 이게 변호사들이 네트워킹을 이제 조금 하잖아요. 안에서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사실 그런 거를 지금 후보로 이제 이쪽에 뛰어든 제가 끼어드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판 깔고 저도 기웃기웃 하지만 워낙에 서로 이미 친하시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해요.

이와 같은 응답은 공익 영역에서 활동하는 법률가들 사이에 일정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더라도, 해당 영역에 새롭게 진입한 법률가에게는 이러한 관계망에 참여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터뷰에서는 공익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료 법률가와의 관계나 네트워크의 부재가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도 제시되었다.

C: 좀 공익소송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활발히 교류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 뭐 하는지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공익 변호사가 되면은 제가 이제 주변에서 봤을 때 혼자 일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좀 도태되지 않고 내 자만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같이 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게 이제 외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

든 아니면 내부에 혼자서 일하게 되면은 계속 더 빨리 소진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좀 2명 채용하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응답은 공익법 활동이 개별 법률가의 단독 업무로 이루어질 경우 사건 경험이나 활동 전략을 공유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동료 법률가와의 협력 관계가 활동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에서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경우 조직 내에서 단독으로 법률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 자체가 활동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제시되었다.

E: 저희가 자립 지원 같은 사업을 해보면은 사실은 계속 계시는 게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재정적 지원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슬기로운 공변생활⁵²⁾도 하지만 어떤 한 단체에서 변호사가 이제 한 명 있는 건 사실 굉장히 외롭고 두려운 일이거든요. 왜냐면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변호사 한 명이 모든 법률적 판단을 또 하게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법률적 판단이 법률적 판단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행정이나 아니면은 정말 가치관의 판단이 이제 얹히기 때문에 그런 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걸 또 많이 들어서[...].

이와 같은 응답은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의 경우 단순히 업무량의 문제를 넘어 조직 내에서 법률적·행정적·가치판단을 사실상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활동 지속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동료 법률가와의 네트워크 협력 구조가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활동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과 책임을 분산하는 역할 역시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인터뷰에서는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도, 이를 실제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 역시 함께 언급되었다.

E: 만약에 거기를 이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서 들어가시게 한다면 뭔가 그분들과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변호사들끼리 근데 그런 게 조금 없는 상황이라서 지속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 근데 생각해 보면 네트워크 하려면 우선 좀 쉼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업무 과중이 좀 심한 상황이라서 [...] 네트워크를 하고자 하면 네트워크만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불가능이었던 것 같아요.

52) ‘슬기로운 공변생활’은 공익법단체 두루, 법조공익모임 나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2020년부터 매년 공동 주최하고 있는 새내기 공익변호사 실무교육 프로그램의 명칭이다.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익법 활동은 동료 법률가와 시민 사회단체, 활동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사건 수행 경험의 공유나 협력 활동 형성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인된다. 동시에 일부 인터뷰에서는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과정의 어려움이나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유지하기 위한 시간과 조직적 기반의 부족이 함께 언급되었다. 이러한 점은 동료 법률가 및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지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요소인 동시에, 실제 활동 환경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충분히 형성되거나 안정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조건 역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V

해외 시민사회 영역 내 공익적 법률가 지원 제도

공익적 법률가로의 진출 및 지속적 활동은 단순히 개인적 선택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공익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상대적으로 공익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어떠한 지원 정책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크게 ① 국가 차원, ② 법학전문대학원 등 대학 차원, ③ 변호사회 및 법조단체 차원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특히 본 연구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바 해외 로스쿨 차원의 지원 현황을 자세히 분석한다.

1. 국가 차원의 법·제도

(1) 미국

1) Legal Services Corporation (LSC)⁵³⁾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의 민사 법률구조 지원 체계가 Legal Services Corporation(LSC)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LSC는 1974년 미 의회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 법률구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 제공 기관으로 기능한다. 특히 LSC는 직접

53) Legal Services Corporation (LSC), “Who We Are”, <https://www.lsc.gov/about-lsc/who-we-are> (2026. 5. 31. 접속)

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전국의 독립적인 비영리 법률구조기관에 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해당 재원은 매년 연방 의회의 예산 배정을 통해 마련된다.

2)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SLF)⁵⁴⁾

공익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간접적 재정 지원 제도로써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PSLF)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우 학자금 대출의 잔액을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로스쿨 졸업 이후 높은 학자금 부담으로 인해 공익 분야 진출이 제한되는 문제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법률구조기관이나 공공변호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게 중요한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3) Interest on Lawyer Trust Accounts (IOLTA)⁵⁵⁾

IOLTA 프로그램은 주 단위에서 운영되며, 변호사 신탁계좌(trust account)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민사 법률서비스 제공 재원을 조성하는 제도이다.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 IOLTA 프로그램은 미국 50개 주,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운영되고 있다. IOLTA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기능하며, IOLTA 프로그램을 통해 배분되는 보조금의 90% 이상이 법률구조기관 및 프로보노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된다.

(2) 캐나다

1) Interest on Trust Accounts

캐나다에서는 변호사 신탁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주 법률에 따라 변호사회, 법률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금으로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뉴브런즈윅에서는 일반 신탁계좌를 개설하여 둘 이상의 의뢰인으로부터 수탁받은 금전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를 New Brunswick Law Foundation에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54) 미국변호사협회(ABA), "How PSLF Works", https://www.americanbar.org/advocacy/governmental_legislative_work/priorities_policy/legaleducation/pslf-homepage/how-pslf-works/ (2026. 5. 31. 접속)

55) 미국변호사협회(ABA), "IOLTA Overview", https://www.americanbar.org/groups/interest_lawyers_trust_accounts/overview/ (2026. 5. 31. 접속)

Law Society Act, 1996 제101조 제1항에 근거한다.⁵⁶⁾ 한편,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경우, 대부분의 신탁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1969년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인 Law Foundation of British Columbia에 귀속된다.⁵⁷⁾

2) Law Foundation Fellowship and Awards

주별 법률재단(Law Foundation)은 변호사 신탁계좌 이자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공익 법률활동 및 법률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재단은 법률구조, 법률교육, 법률연구 및 공익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한 예로 Law Foundation of Ontario는 Public Interest Articling Fellowship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 법률단체가 아티클링(articling, 수습) 학생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공익 법률서비스 제공 역량과 차세대 공익 법률 인력 양성을 동시에 지원한다.⁵⁸⁾

- British Columbia의 Law Foundation 역시 공익 법률활동 및 법률 접근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가령, University of Victoria를 포함한 기관을 통해 Law Foundation of BC Public Interest Award와 같은 장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익 법률 분야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⁵⁹⁾

(3) 호주⁶⁰⁾

1) Legal Aid Commissions

호주의 법률구조 제도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공익 법률활동을 수행하는 법조인을 지원하는 구조로

56) 뉴브런즈윅 변호사 협회(LSNB), "Interest on Trust Accounts", <https://lsnb-educ-bnb.ca/node/954> (2026. 5. 31. 접속)

57) 브리티시 컬럼비아 변호사 협회(LSBC), "Trust Accounts", <https://www.lawsociety.bc.ca/for-the-public/working-with-lawyers/trust-accounts/> (2026. 5. 31. 접속)

58) 온타리오 법률 재단(Law Foundation of Ontario), "Public Interest Articling Fellowship", <https://lawfoundation.on.ca/apply/fellowships/public-interest-articling-fellowship/> (2026. 5. 31. 접속)

59) 빅토리아 대학교(University of Victoria), "Law Foundation of BC Public Interest Award", <https://www.uvic.ca/safa/scholarships/in-course-scholarships/law-foundation-of-bc-public-interest-award.php> (2026. 5. 31. 접속)

60) Latham & Watkins, A Survey of Pro Bono Practices and Opportunities in Australia, <https://www.lw.com/admin/Upload/Documents/Global%20Pro%20Bono%20Survey/pro-bono-in-australia.pdf> (2026. 5. 31. 접속)

서, 연방정부와 주·준주 정부가 협력하는 체계를 기반으로 8개의 주·준주별 법률구조위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준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National Legal Assistance Partnership(NLAP)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정책 우선순위가 설정되고 재원이 배분된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Community Legal Centres(CLCs)와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Legal Services(ATSILS)는 시민사회 기반의 공익 법률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기능한다.

NLAP에 따른 공공 재정은 이들 조직이 법률 인력을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부 외부에서 활동하는 공익 법률 실무 생태계를 뒷받침한다. 또한 National Legal Aid(NLA)는 전국 법률구조위원회 간 협력 및 정책 조정을 통해 제도적 연계를 지원한다.

2. 로스쿨 등 대학 차원의 법·제도

(1) 미국

American Bar Association(ABA, 미국 변호사 협회)의 로스쿨 인가 기준 및 절차(Standards and Rules of Procedure for Approval of Law Schools)는 모든 ABA 인가 로스쿨에게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특히 일정 시간 이상의 공익 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⁶¹⁾ 이에 따라 미국 로스쿨은 교내 기관, 프로그램, 재정 지원 제도 등을 통해 공익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진로 탐색, 실무 경험,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1) 경력 개발 지원

① 경력 개발 센터

학교별 경력 개발 지원 기관을 통해 공익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진로 탐색 및 경력 개발을 지원한다. 명칭은 학교별로 상이하며, Yale Law School,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등에서는 Career Development Office로, UCLA School of Law, NYU Law School 등에서는 Office of Career Services로 불린다. 대표적

61) 미국변호사협회, 2025-2026 로스쿨 인가 기준 제3장: 법학교육 프로그램(Standards and Rules of Procedure for Approval of Law Schools: Chapter 3), 2024, https://www.americanbar.org/content/dam/aba/administrative/legal_education_and_admissions_to_the_bar/standards/2025-2026/2025-2026-standards-chapter-3.pdf

으로 Yale Law School의 Career Development Office에서 제공되는 공익 관련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²⁾

A. 상담 및 정보 제공

재학생과 졸업생은 경력개발센터 내 분야별 특화된 카운슬러에게 1:1 면담을 신청하여 해당 분야 중심의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Yale Law School의 경우, Career Development Office 내 Public interest employment and fellowship 담당 카운슬러가 존재한다.

B. 각종 이벤트 및 프로그램

-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및 동문을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강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개별 상담, 펠로우십 정보 세션을 운영 (예: Mentors-in-Residence Program)⁶³⁾
- 교내 커리어 페어: 매년 9-10월 경에 YLS Student Public Interest Career Fair를 주최하여 공익 분야에 관심 있는 로스쿨 학생들이 여름 실무를 경험한 2-3학년 학생들의 이야기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지원⁶⁴⁾
- 매년 공익 및 정부 기관 고용주들이 참여하는 면접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외부 커리어 페어(Equal Justice Works Career Fair and Conference(EJW), the NYU Public Interest Legal Career Fair 등) 참여를 후원하여 자교 학생들에게 여름 실무, 인턴십, 펠로우십, 정규직 등의 우선 인터뷰 기회를 제공⁶⁵⁾

② 교내 각종 공익 센터 및 프로그램

경력개발센터 이외에도 교내 각종 공익 센터와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 활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각종 펠로우십 프로그램, 교육 및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한 예로 The Arthur Liman Center for Public Interest Law에서는⁶⁶⁾ 로스쿨 학생 대상 리서치 수업 및 워크숍을⁶⁷⁾ 진행하고, 연구, 토론회, 콜로퀴움 등 공익 관련 행사를 주최한다.

62) 예일 대학교 로스쿨(Yale Law School), "YLS Support for Public Interest Careers", <https://law.yale.edu/student-life/career-development/students/career-pathways/public-interest/yls-support-public-interest-careers> (2026. 5. 31. 접속)

63) 예일 대학교 로스쿨, "Public Interest Programs and Resources", <https://law.yale.edu/student-life/career-development/students/career-pathways/public-interest/public-interest-programs-and-resources> (2026. 5. 31. 접속)

64) 예일 대학교 로스쿨, "Other YLS Job Search Resources / Events", <https://law.yale.edu/student-life/career-development/students/career-pathways/public-interest/yls-support-public-interest-careers#heading-32278892> (2026. 5. 31. 접속)

65) 예일 대학교 로스쿨, "Interview Programs", <https://law.yale.edu/student-life/career-development/students/interview-programs> (2026. 5. 31. 접속)

66) 예일 대학교 로스쿨, "The Arthur Liman Center for Public Interest Law", <https://law.yale.edu/centers-workshops/arthur-liman-center-public-interest-law> (2026. 5. 31. 접속)

③ 펠로우십

가. Yale Law School 여름 공익 활동 보조금 (Summer Public Interest Funding)⁶⁸⁾

공익 활동 경험을 쌓고자 하는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 및 비영리 단체에서 무급 여름 인턴십을 수행하는 Yale Law School 학생들에게 최대 12주간 최대 8,000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은 두 번의 여름 동안 SPIF 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 후 여름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나. Liman Summer Undergraduate Fellowship⁶⁹⁾

Yale Law School의 The Arthur Liman Center for Public Interest Law 운영하는 펠로우십으로, Yale University를 포함한 9개 협력 대학 1~3학년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다. 여름 방학 동안 공익 분야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비 지원 펠로우십이다. 지원 자격은 전공과 무관하며 로스쿨 진학 예정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지원 과정에서 공공 서비스와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 선정자에게는 8~10주간의 전업 인턴십 수행을 위한 활동비(학교별로 상이, 약 \$5,000~\$7,000)가 지급된다. 활동 기관은 반드시 미국 내 501(c)(3) 비영리 단체나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이어야 하며, 공익 법률 서비스 제공이나 소외 계층 지원, 공공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 졸업 후 펠로우십 (Post-Graduate Fellowship)

- Liman Law Fellowship⁷⁰⁾

Yale Law School의 The Arthur Liman Center for Public Interest Law가 운영하는 펠로우십으로, 로스쿨 졸업 예정자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자는 1년간 수행할 구체적인 공익 법률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존의 비영리 법률 단체나 정부 기관 등 협력 기관(Host Organization)으로부터 활동 승인을 받아야 한

67) 예일 대학교 로스쿨, "Liman Center Classes", <https://law.yale.edu/centers-workshops/arthur-liman-center-public-interest-law/classes> (2026. 5. 31. 접속)

68) 예일 대학교 로스쿨, "Summer Public Interest Fellowship (SPIF)", <https://law.yale.edu/admissions/cost-financial-aid/summer-aid-spiif#heading-32281034> (2026. 5. 31. 접속)

69) 예일 대학교 로스쿨, "Liman Summer Fellowship", <https://law.yale.edu/centers-and-workshops/arthur-liman-center-public-interest-law/fellowships/liman-summer> (2026. 5. 31. 접속)

70) 예일 대학교 로스쿨, "Liman Law Fellowships", <https://law.yale.edu/centers-and-workshops/arthur-liman-center-public-interest-law/fellowships/liman-law-fellowships> (2026. 5. 31. 접속)

다. 선정된 펠로우는 1년간 전업으로 공익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약 \$60,000의 급여(Stipend)를 제공받으며, 대체로 협력 기관에서 건강보험을 보장한다. 또한 Yale Law School에서 매년 개최되는 Liman Colloquium에 초청되어 역대 펠로우 및 공익법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신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사회적 현안을 논의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Gruber Fellowships in Global Justice and Women's Rights⁷¹⁾

해당 펠로우십은 학생이 직접 발굴한 외부 협력 기관과 함께 글로벌 정의나 여성 인권 관련 프로젝트를 전업으로 수행하도록 급여 성격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예일 대학교 일반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와 졸업생(졸업 후 3년 이내)이다. 선정자는 12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60,000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해외로 파견될 경우 미국발 왕복 일반석 항공권 1매(최대 \$2,000)를 지원받는다. 협력 기관(Host organization)에서 건강보험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 프로그램 측에서 최대 \$5,000달러까지 건강보험 비용을 환급해 준다.

2) 재정 지원

①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Loan Repayment Assistance Program, LRAP)

로스쿨 졸업 후 공익법, 정부기관 등 저임금 공공 분야에서 근무하는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학교, 정부 등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공공 부문의 고용주, 로스쿨, 주 정부, 연방 정부에서 LRAP를 운영한다. 지원 조건은 프로그램 운영 주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1(c)(3) 비영리 단체나 정부 기관, 국제기구 근무를 요구한다. 예외적으로 Yale Law School은 법률직이 아닌 일반 공익 활동이나 학계 진출도 폭넓게 인정한다.

LRAP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줄여주거나 향후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닌, 현재 대출금 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와 같은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과 구분된다. 따라서 PSLF로 탕감을 받기 전까지의 상환금을 LRAP가 대신 내주는 등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⁷²⁾

71) 예일 대학교 로스쿨, "Gruber Fellowships", <https://law.yale.edu/centers-workshops/gruber-program-global-justice-and-womens-rights/gruber-fellowships> (2026. 5. 31. 접속)

72) Equal Justice Works, "Loan Repayment Assistance Programs", <https://www.equaljusticeworks.org/law-students/student-debt-resources/resources/loan-repayment-assistance-programs/> (2026. 5. 31. 접속)

② 기타 지원

경력 개발 관련 행사 참여를 위한 경비, 면접 비용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Yale Law School의 경우, Career Development Office(CDO)에서 외부 커리어 페어(Equal Justice Works Career Fair and Conference(EJW), the NYU Public Interest Legal Career Fair 등) 참가비 및 경비를 지원한다. EJW 경비로는 최대 \$250까지 환급해준다. 또한 CDO에서 운영하는 Travel Reimbursement for Interviews in the Public Interest (TRI PI) 프로그램을 통해 2-3학년 학생들의 펠로우십 및 면접 경비를 학년당 최대 800달러까지 환급해준다.

(2) 영국

LawWorks 2020 보고서에⁷³⁾ 따르면, 영국의 로스쿨들은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프로보노로 유입시키기보다는 다양한 실무적 경험을 제공하여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익변호사의 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미국과 같은 직접적인 로스쿨 차원의 재정적 지원보다는 경력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1) 정규 교과과정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niversity College London, UCL) 로스쿨에서는 공익활동을 총괄하는 UCL 사법접근권 센터 (UCL Centre for Access to Justice)가 교과과정, 클리닉, 인턴십, 멘토링이 결합된 방식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 예로 정규 과정 중 사법접근권 및 지역사회(Access to Justice and Community Engagement) 과정의 경우 최종 학년 학생들이 일정한 지도 하에 공익 법률 활동을 진행한다.⁷⁴⁾

2) 리걸클리닉

대표적인 예로서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의 리걸 클리닉의⁷⁵⁾ 과정 내용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73) James Sandbach and Richard Grimes, Law School Pro Bono and Clinic Report 2020, LawWorks and CLEO(Clinical Legal Education Organisation), 2020, https://www.lawworks.org.uk/sites/default/files/files/LawWorks%20Law%20Schools%20Report%202020_0.pdf (2026. 5. 31. 접속)

74) UCL 로스쿨, "Study with the Centre for Access to Justice", <https://www.ucl.ac.uk/laws/access-to-justice/study> (2026. 5. 31. 접속)

75) LSE 로스쿨, "LSE Legal Advice Centre", <https://www.lse.ac.uk/law/legal-advice-centre> (2026.

- LSE Legal Advice Clinic: 취약계층 개인과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법률 지원과 교육을 제공한다. 주요 활동으로 노숙자 법률 상담소, 오심 사례 해결 프로젝트 등이 있다. 그 중 Student Outdoor Clerks Scheme (SOCS)를 통해 학생들은 법정 보조원으로서 재판, 선고 공판, 변호인 회의 등에 참관한다. 중범죄 사건 및 공공 시위 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 난민법 클리닉: 학생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관련 법률 및 정책뿐 아니라 실무, 윤리, 전문적 책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로펌 소속 자원봉사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며, 담당 변호사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다.
- 유럽인권재판소 개입 클리닉: European Information Society Institute와 협력하여 디지털 자유 관련 사건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한다. 판결 이전 단계에서부터 법 해석 방향을 제시하거나 재판 과정 및 판결 형성 과정에 참여한다.

3) 기타

- UCL 로스쿨 CAJ Public Interest Careers Mentorship:⁷⁶⁾ LLB과 LLM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공공 및 비영리 부문에서 활동하는 동문 및 전문가들과 연결하여 진로 지도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멘티로 선정될 시 최소 2회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공공 및 비영리 부문의 자원봉사, 인턴십 / 공익 분야 지원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캐나다

캐나다 로스쿨들은 전국적 네트워크인 Pro Bono Students Canada(PBSC)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NGO, 정부 기관과 매칭된 후 무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무를 익힌다. 캐나다 전역 22개 로스쿨이 PBSC에 참여하여 매년 약 1,500명의 학생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약 12만 시간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⁷⁷⁾ 한편, 일반적인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제도는 갖고 있으나 특별히 공익 영역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것은 찾지 못하였다.

5. 31. 접속)

76) 런던 대학교 로스쿨, "CAJ Public Interest Careers Mentorship Scheme", <https://www.ucl.ac.uk/laws/caj-public-interest-careers-mentorship-scheme> (2026. 5. 31. 접속)

77) 오타와 대학교 로스쿨(University of Ottawa Faculty of Law), "Pro Bono", <https://www.uottawa.ca/faculty-law/common-law/probono> (2026. 5. 31. 접속)

3. 변호사회 및 법조단체 차원의 지원 사례

(1) 미국

1) ABA Model Rule 6.1. Voluntary Pro Bono Publico Service⁷⁸⁾

ABA Model Rule 6.1은 미국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 직업윤리 모범규칙(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의 일부로, 미국 각 주의 변호사 윤리규정의 모델이 된다. 이에 따르면 모든 변호사가 연간 최소 50시간의 프로보노 공익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권고된다. 50시간의 상당 부분(substantial majority)을 보수 없이 또는 보수에 대한 기대 없이 1) 경제적 능력이 제한된 사람 또는 2) 경제적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의 필요에 주로 대응하기 위한 사안에서 자선, 종교, 시민, 지역사회, 정부, 교육 단체에 대하여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ABA Membership⁷⁹⁾

ABA는 공익 분야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할인 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 법률 분야 종사자는 경력에 따라 낮은 수준의 연회비가 적용되며, 초기 4년차 변호사는 120달러, 그 이후 경력자는 195달러의 회원비가 적용된다. 해당 제도는 공익 법률 분야 종사자의 협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

3) 기타

미국의 공익법단체는 대부분 연방정부, 민간재단 기부금, 기부금, 주정부 등 순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고, 공익단체도 정부, 사기업, 재단, 개인기부 등에서 받은 기금으로 운영된다. ABA 등 변호사협회, 법조단체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공익/공익법단체에 기금 또는 재정지원을 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었으나, 간접적으로 1) 주 변호사협회(state bar), 지역 변호사협회(local bar), 또는 특정 변호사협회(Affinity Bar)가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일시적 기금, 2) LGBT와 같이 특정 공익 분야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3) 공익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공익지원상은 존재한다.

78) 미국변호사협회, "Model Rule 6.1: Voluntary Pro Bono Publico Service", https://www.americanbar.org/groups/probono_public_service/policy/aba_model_rule_6_1/ (2026. 5. 31. 접속)

79) 미국변호사협회, "Public Interest Membership & Resources", https://www.americanbar.org/groups/legal_services/public-interest-membership/ (2026. 5. 31. 접속)

(2) 영국

영국 프로보노 협력 플랜(UK Collaborative Plan for Pro Bono, UKCP)는 영국 내 법률 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는 법조직역 주도(profession-led) 이니셔티브이다. 80개 이상의 법률 사무소가 UKCP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사무소는 프로보노 및 사법접근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UKCP 회원 법률사무소들은 영국 전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UKCP의 권고적 목표(aspirational target)는 영국 내 변호사 1인당 연 평균 25시간의 프로보노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UKCP에 참여하는 법률사무소는 분기별 UKCP 회의에 참석자를 파견하고, 매년 프로보노 활동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영국 내 충족되지 않은 법률 수요를 개선하고, 프로보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체계와 기반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한다. UKCP 참여 법률사무소가 권고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미달성에 대한 제재는 없으며, 참여 법률사무소의 프로보노 활동 시간은 비식별 처리된 형태로 공유된다.⁸⁰⁾

V

법·제도 및 정책적 개선방안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면, 공익적 법률가로의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 영역으로의 진입 경로와 활동 환경에는 교육 제도, 실무 경험 기회, 정보 접근성, 재정적 기반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정리할 수 있다.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육환경과 엄격한 상대평가 체계로 인해 학생들이 시험 준비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입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변호사시험 과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법학 분야의 과목을 충분히 수강하거나 탐색하기 어

80) 글로벌 프로보노 허브(Global Pro Bono Hub), "UK Collaborative Plan for Pro Bono", <https://www.globalprobonohub.com/resource/gpbh/uk-collaborative-plan-for-pro-bono> (2026. 5. 31. 접속)

려운 구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의 절대평가 도입 등 평가방식의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법학 분야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시험 중심 교육 구조에서는 공익 관련 분야에 대한 학습이나 관심 형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다양한 법학 분야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관련 교과목의 개설 및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인권법, 젠더법, 노동법, 국제인권법 등 공익과 밀접한 분야의 교과목이 안정적으로 개설되고 관련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이 마련될 경우 학생들이 공익 영역을 하나의 진로 선택지로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공익 법률활동 경험 기회의 확대 및 체계화

공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 공익 법률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리걸클리닉은 공익 분야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체계적이지 않거나 학생들이 충분한 사전 교육 없이 실무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익 관련 교육과 실무 경험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학생들이 구체적인 사건과 쟁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걸클리닉, 실무수습,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실제 사례를 경험하고 공익 영역의 법률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이 공익 영역을 하나의 진로 선택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익 분야에서 일정 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펠로우십 프로그램이나 공익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졸업 이후 공익 영역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공익 법률활동을 단기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익 법률가 진출을 위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공익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법률가들이 관련 채용 정보나 활동 기회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채용 규모가 크지 않고 공개적인 채용 공고가 많지 않아, 공익 분야 진출을 희망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공익단체, 공익재단,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공익 분야 채용 정보와 활동 기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호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공익활동의 유형과 참여 방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만큼,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공익활동 기회를 안내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윤리연수 등 기존 교육 프로그램도 징계 사례 중심의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공익활동 사례, 시민사회 협력 사례 등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은 신입변호사뿐 아니라 경력변호사에게도 공익 활동에 대한 관심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공익법 분야를 진로로 고려하는 예비 법률가들이 공익적 법률가의 실제 활동 환경과 노동 조건, 경력 형성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비영리 섹터에서도 일반 로펌의 취업설명회와 유사한 형태의 진로 설명회나 정보 제공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공익 진로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익 분야에서 활동 중인 법률가를 초청한 정기 강연, 공익 분야 채용 정보 제공, 졸업생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익 영역을 추상적인 이상이 아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진로 선택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공익 법률활동의 지속을 위한 재정적 기반의 강화

인터뷰 분석 결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법률가의 진출과 활동 지속을 위해서는 재정적 기반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나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경우 단체의 재정 구조가 활동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운영이나 활동 범위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또한 공익법 활동은 사건 수행, 정책 활동, 연구 및 교육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정적 기반이 필요하다. 특히 공익단체의 경우 개인 기부나 단기 사업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공익법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와 법률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익재단이나 공익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공익법 활동을 위한 공적 지원 제도의 마련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정적 기반은 단순히 법조인의 공익 영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공익법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제4장

민간 기업 내 공익적 직역의 변호사 진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이태영, 전가영

I

연구 대상 및 범위

민간 기업의 영역에서 ‘공익’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전통적으로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로 이해되어 왔으며, 기업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 체계도 영리법인으로 대표되는 주식 회사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업 의사결정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범주도 상법상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마을기업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법인들이 법제화되고 중요한 경제 주체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기업의 책임도 단순한 법령 준수 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사회적 책임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⁸¹⁾ 특히,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기업에도 ESG 경영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기업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제 기업은 영업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⁸²⁾ 즉,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개별 법적 분쟁을 넘어 기업의 평판이나 투자 유치, 장기적 존속과 직결되는 경영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적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한편,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⁸³⁾ 신용정보나 개인정보 보호도 매우 중대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역할 또한 기업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체계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⁸⁴⁾ 과거 법무팀이나 사내 변호사의 역할은 기업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응하거나, 법률자문

81) 변원규·이정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선언과 ESG 리스크 관리 성과”,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3호, 2025. 9., 8면.

82) 김용기, “기업의 ESG전략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3권 제4호, 2025. 12., 278-279면.

83) 박경미, “ESG 리스크와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 의무”, 법학연구 제24집 제2호, 2021. 6., 48-49면.

84) 이형우, “금융기관과 ESG 리스크 관리 : 기후변화 리스크를 중심으로”, 이음연구소, 2022, 214-215면.

이나 계약서 검토 등 법률 지원 업무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부통제 체계 설계, 준법 기준 설정, 리스크 관리 등 기업 의사결정 전반에 관여하는 역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⁸⁵⁾ 변호사는 기업의 법적 위험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기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주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⁸⁶⁾ 특히, ESG 경영이 확산됨에 따라 기업의 ESG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체계적인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와 같이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새로운 법인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법인들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이윤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이나 시민단체와도 구분되는 성격을 가진다. 정부나 공공기관과는 달리 자율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조직 자체의 미션과 사업 구조를 통해 공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서 일정 수준의 공익성을 추구하므로 법인 운영과 사업 관리에 있어 전문적이 법률적인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민간 영역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변호사(이하 ‘공익적 변호사’ 또는 ‘공익 지향 변호사’)의 직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공익 또는 사회적 가치가 기업 활동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는지를 기준으로 변호사의 역할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징과 제도적 기반을 검토함으로써 민간 영역 내 변호사의 공익적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해외 사례를 함께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진행한 인터뷰의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 표 4-1 ■ 인터뷰 참여 변호사

참가자	유형	소속	이전 경력
A	규범·준법 기반형	대기업 외부 독립 감시기구	법무법인
B	ESG·지속가능경영 기여형	리만코리아	대기업 사내변호사
C	ESG·지속가능경영 기여형	서스틴베스트	금융권 사내변호사
D	전략적 공공가치 창출형	사회혁신기업 더함	재단법인 동천
E	전략적 공공가치 창출형	비엔지 파트너스	법무법인 지평

85) 매일경제, “[Industry Review] 변호사들이 ESG시대를 이끌어야 하는 이유”, 2021. 12. 30., <https://www.mk.co.kr/news/business/10156419> (2026. 6. 1. 접속)

86) 강민주 외, “ESG 실무자를 위한 매뉴얼”,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30-31면.

II

민간 기업 내 공익적 변호사의 지역적 역할과 제도적 기반

1. 유형 분류의 기준 및 필요성

민간 기업과 공익적 가치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기업 경영에 ESG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점차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특히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민간 기업 내 공익적 변호사의 유형을 새로운 지역으로 분류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민간 영역에서 공익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그 양태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익이 기업 활동 속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주목하여,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지역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① 법률에 따른 준법·내부통제 체계를 통해 공익이 실현되는 유형(이하 ‘규범·준법 기반형’), ② ESG 및 지속가능성 기준이 기업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유형(이하 ‘ESG·지속가능경영 기여형’), ③ 공익을 사업을 통해 직접 구현하는 유형(이하 ‘전략적 공공가치 창출형’)이다.

2. 유형의 분류

(1) 규범·준법 기반형

규범·준법 기반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에 부과된 준법 및 내부통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이 유형에서 공익은 법적 강행규범을 통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는(또는 준수하도록 하는) 형태로 작동하며, 기업의 자율적 가치 판단보다는 외부 규범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구현된다.

대표적인 예로 「상법」에 근거한 준법지원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의 핵심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 경우 변호사는 기업 활동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의 안정이라는 공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⁸⁷⁾

87) 양만식,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사내변호사의 역할”, 법학논총 제41권 제3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규범·준법 기반형 변호사의 유형 및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4-2>와 같다.

■ 표 4-2 ■ 규범·준법 기반형 변호사의 유형 및 법적 근거

직위	법적 근거	선임대상
준법지원인	상법 542조의1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준법감시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5조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이하 '금융회사')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의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7조의4, 신용협동조합법 제76조의 3, 새마을금고법 제63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7조 제3항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 제5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위험관리 책임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최근에는 법적 의무에 따라 설치되는 내부통제 직위 외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준법·윤리 관련 독립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구는 법령상 설치가 강제된 제도는 아니지만, 그룹 차원의 준법·윤리 기준을 점검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검토와 권고를 수행하는 등 기능적으로는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과 유사한 내부통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규범·준법 기반형 직역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규범·준법 기반형에서 공익은 별도의 사업이나 전략을 통해 만들어지기보다는, 기업 활동이 법적·사회적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구현된다. 즉 준법과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에서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라는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규범·준법 기반형은 민간 기업 안에서 공익적 기능이 제도와 조직 운영 속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ESG·지속가능경영 기여형

ESG·지속가능경영 기여형은 기업의 ESG 전략 수립, 비재무정보 공시, 공급망 리스크 관리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며, 연성 규범과 시장 규율을 중심으로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변호사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 공익은 단순한 법령 준수를 넘어, 기업의 중·장기적 경영 방향과 리스크 관리 체계 속에 내재화되는 기준으로 실현된다.⁸⁸⁾

최근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공급망 실사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규제가 구체화되고, 국내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비재무정보 공시 기준의 설계, ‘이중 중대성’ 판단,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등에서 법률적 검토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또한 국내외 ESG 평가기관의 평가 기준에 대응하고, 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기관의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정합성과 공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⁸⁹⁾

기업 ESG 담당 변호사는 기업의 공시 내용과 ESG 전략이 국내외 규제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익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시장 신뢰, 투자자 보호와 결합되어 실현되며, 규범·준법 기반형에 비해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된 성격을 가진다.

또한 ESG·지속가능경영 기여형에는 ESG 평가기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도 포함된다. ESG

88) 임성택, “ESG 시대 법과 법률가의 역할”, 한국법제연구원 제1차 ESG 포럼 자료집, 2022. 3. 24.

89) 법률신문, “ESG 경영 위한 법률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2022. 1. 27.,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040> (2026. 6. 1. 접속)

평가기관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활동과 공시 내용을 분석하여 평가 등급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투자자와 시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평가는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비재무적 리스크 정보를 시장에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평가 기준 설정, 공시 정보 해석, 거버넌스 구조와 리스크 관리 체계 분석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며, 변호사는 규제 환경과 제도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의 법적 정합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SG 평가는 기업 내부의 준법 기능과 달리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갖지는 않지만, 평가 결과가 투자자와 시장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기업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3) 전략적 공공가치 창출형

전략적 공공가치 창출형은 공익 또는 사회문제 해결을 사업의 출발점으로 삼는 조직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이 유형에서 공익은 외부 규범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목적 그 자체로 설정된다.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사 등은 취약계층 지원, 환경 보호,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공익적 목적을 사업모델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변호사는 이러한 목적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 투자 구조, 지배구조를 설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⁹⁰⁾

이와 같은 조직은 전통적인 주식회사와 달리 공익적 목적, 이해관계자 참여, 수익의 재투자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복합적인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⁹¹⁾ 예컨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출자 구조, 의결권, 이익 배분, 공익 목적 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소셜벤처의 경우 투자 유치, 지배구조 설계, 공공지원사업 참여, 공공·민간 협력 모델 구축 등의 분야에서 특수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계약 구조 설계, 조직 형태 선택, 투자 및 자금 조달, 사업 구조 설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협동조합 금융 및 사회적금융 영역에서도 변호사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합 금융기관은 지역사회 기반의 금융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가 신탁의 제도 설계와 정책 개선에

90) 법률신문, “사회적경제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 삼총사”, 2018. 12. 3.,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745> (2026. 6. 1. 접속)

91) 이로운넷, “협동조합이 원칙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환경 만들고파”, 2021. 8. 4.,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712> (2026. 6. 1. 접속)

참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신협중앙회 주도로 회원 조합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개선을 추진하거나,⁹²⁾ 조합의 지역사회 연계 복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타법인 출자와 관련된 법제 개선을 검토하는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여 법적 구조를 설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⁹³⁾

임팩트 투자 및 지속가능금융 영역에서도 변호사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후금융, ESG 투자 등이 결합되면서 투자 및 금융거래 과정에서 환경·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구조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인수합병(M&A), 지분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금융거래에서 ESG 요소를 반영한 법률자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⁹⁴⁾

이 유형은 공익을 기업 활동을 통해 직접 구현한다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공익 지향성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법인 유형과 관련 법적 근거는 다음 <표 4-3>과 같다.

■ 표 4-3 ■ 법인 유형에 따른 설립 관련 근거

주요 유형	설립 관련 법적 근거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유형별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마을기업	마을기업법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셜벤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임팩트투자사	상법(주식회사 등), 민법(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등

3. 각 유형의 특징 및 비교

앞서 구분한 세 가지 유형은 모두 민간 영역에서 공익 또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직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공익이 기업 활동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과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역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해당

92) 뉴시스,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출범…포용금융 늘리면 규제 완화 검토”, 2026. 4. 30.,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29_0003612204 (2026. 6. 1. 접속)

93) 이태영,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고찰”, 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2022. 6., 631-634면.

94) 법률신문, “공익과 사익의 조화, 사회적경제를 위해 일하는 법률가들”, 2018. 10. 1.,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968> (2026. 6. 1. 접속)

직역의 제도화 수준과 직업적 안정성, 나아가 예비 변호사의 진입 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규범·준법 기반형은 법령상 준법 의무 이행과 내부통제 기능을 중심으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를 예방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익을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유형이다. ESG·지속가능경영 기여형은 연성 규범과 시장 규율을 매개로 공익을 기업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내재화하는 중간 단계의 성격을 가진다. 전략적 공공가치 창출형은 공익을 사업을 통해 직접 창출하는 유형으로, 가장 적극적인 공익 실현 방식을 취한다.

구체적으로 준법지원인, 준법감시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를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지니며, 그 자체로 공익 기능을 전제로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ESG 및 지속가능경영 분야에서는 기업 의사결정이 사회적 가치와 직결되며, 변호사가 이러한 기준을 경영 전략에 반영하는 데 핵심적으로 관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임팩트 투자사처럼 공익을 사업 목적으로 삼는 조직에서는 변호사의 활동이 공익 실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이러한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 4-4>과 같다.

■ 표 4-4 ■ 민간기업 내 공익적 직역 변호사 유형별 특징 비교

구분	규범·준법 기반형	ESG·지속가능경영 기여형	전략적 공공가치 창출형
공익의 제도적 근거	법률·강행 규범 중심	연성 규범·시장 규율	기업의 미션·사업 목적
공익 실현 방식	위법·부당 행위 예방	의사결정 기준으로 내재화	사업을 통한 직접적 창출
변호사의 핵심 역할	감시·통제	전략적 조정·자문	구조 설계·공동 창출
제도화 수준	높음	중간	낮음

III

민간 기업 내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및 사례 분석

1. 민간 영역 공익적 변호사 직역의 전체적 진출 현황

(1) 규범·준법 기반형 변호사의 역할 및 진출 현황 (1유형)

1) 준법지원인

준법지원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서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준법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주체이다.⁹⁵⁾ 즉,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에 근거하여 회사의 경영활동과 임직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 중 특히 법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핵심적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ESG기준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른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 대상기업은 총 437개사이며, 이 중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기업은 260개사(59.5%), 선임하지 않은 기업은 177개사(40.5%)로 나타났다.⁹⁶⁾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351개사 중 230개사(65.5%)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86개사 중에서는 30개사(34.9%)만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 간 선임률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표 4-5】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대상기업의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대상 기업	유가증권·코스닥		유가증권		코스닥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	260	59.5	230	65.5	30	34.9
준법지원인 미선임 기업	177	40.5	121	34.5	56	65.1
합계	437	100	351	100	86	100

상법은 준법지원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준법지원인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첫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둘째, 법학을 전공한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사람, 셋째, 상장회사에서 감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법학 석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5년 이상) 등이다.⁹⁷⁾

95) 상법 제542조의13 제2항,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 제2조 제3호

96) 김희경, “국내 상장기업의 준법통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준법지원인 제도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KCGS Report 제14권 1호, 한국ESG기준원, 2024. 1., 5면.

97) 상법 시행령 제41조(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 법 제542조의13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8. 9.>

1.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2. 법률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이와 같은 규정은 준법지원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법령 해석, 내부통제 설계, 법적 위험 관리 등 고도의 법률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선임 현황을 보면,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260개사 중 공시를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은 237개사(91.2%)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자격 유형을 살펴보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가 6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장회사 감사·준법감시 관련 경력자 등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경우가 2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⁸⁾

【표 4-6】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의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현황

구분	유가증권·코스닥		유가증권		코스닥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변호사(1호)	171	65.8	151	65.7	20	66.7
법학 교수 5년(2호)	0	0.0	0	0.0	0	0.0
법무부서 경력 10년 또는 5년(3호)	66	25.4	59	25.7	7	23.3
자격 없음 기타	23	8.8	20	8.7	3	10.0
합계	260	100	230	100	30	100

준법지원인 제도는 본래 개인 단위의 책임자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기업에서는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준법지원인은 총괄 책임을 부담하고, 그 하위에 법무부서, 준법감시부서, 내부통제 부서 등이 배치되어 준법지원 기능을 분담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와 같은 조직화 경향은 기업 규모가 확대되고 규제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준법지원 기능이 단일 인력으로 수행되기 어려워진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2) 준법감시인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선임되는 내부통제의 핵심 주체이며, 금융회사의 업무가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⁹⁹⁾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기준의 수립 및 운영, 법규 준수 여부

98) 김희경, “국내 상장기업의 준법통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준법지원인 제도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KCGS Report 제14권 1호, 한국ESG기준원, 2024. 1., 8면.

9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점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통제 활동을 총괄하며, 그 결과를 경영진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준법감시인은 단순한 사후적 감시기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영업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규제적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관리하는 내부통제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볼 수 있다.¹⁰⁰⁾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준법감시부서, 법무부서, 자금세탁방지 조직 등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은 이러한 조직을 총괄하면서 내부통제 기준의 운영 및 준수 여부 점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영업점 관리 등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각 부서를 통해 분담되는 구조를 갖는다. 특히 영업점 단위의 법규 준수 여부 점검과 내부통제 기준 준수 확인 등은 조직 단위로 이루어지며, 준법감시인은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¹⁰¹⁾

최근 금융기관은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준법감시 관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준법감시 관련 인력은 총 712명으로 전년 대비 116명 증가하였다.¹⁰²⁾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217명, 우리은행 196명, 신한은행 151명, 하나은행 148명으로 나타나며, 특히 국민은행은 준법추진부, 자금세탁방지부, 법률지원부 등으로 조직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¹⁰³⁾

금융당국 역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 조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금세탁방지 인력을 제외한 준법감시 인력을 전체 임직원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준법감시 인력을 전체 인원의 0.8%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¹⁰⁴⁾ 또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도입으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면서,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구체적으로 4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준법감시인은 모두 약 30년 이상의 내부 경력을 보유한 임원들이 맡고 있다.¹⁰⁵⁾ 이는 금융업무의 특수성상 준법

100) 공민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에 관한 검토 - 준법감시인 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법현논총 제1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2., 57-58면.

101) 김성균,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관한 법적 소고 -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기준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4호, 2021, 112면.

102) 비즈워치, “4대 은행, 준법감시 인력 116명 늘렸는데”, 2025. 3. 16., <https://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5/03/26/0015> (2026. 6. 1. 접속)

103) 더벨, “금융권 ‘최대’ 전담조직 갖춘 KB국민은행”, 2025. 7. 25., <https://www.thebell.co.kr/front/newsview.asp?key=202507230350512950106281> (2026. 6. 1. 접속)

104) 금융감독원,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 최근 금융사고에 대응한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 발표”, 2023. 12. 21.자 보도자료 참조.

감시 기능 수행에 있어 법률지식뿐 아니라 영업, 여신, 리스크관리 등 금융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이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이다.

준법감시인의 경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법학 전공 또는 준법·법무 관련 경험을 갖춘 인물이 선임되고 있다.¹⁰⁵⁾ 구체적인 사례로, NH투자증권의 준법감시인은 변호사 출신 임원이 선임되어 조직을 총괄하고 있다.¹⁰⁷⁾ 특히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계약 검토, 투자 및 자금운용 관련 법률 검토, 분쟁 대응 등 법률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변호사 출신 준법감시인의 선임은 준법감시 기능의 전문성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한편 준법감시조직 내 변호사의 구체적인 규모나 비중은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우나, 법무부서를 중심으로 사내변호사가 법령 해석, 감독당국 대응, 내부조사 등 핵심적인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 기능은 비변호사 임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도, 실질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보인다.

3) 외부 독립 감시기구

최근에는 법령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내부통제 직위 외에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 준법·윤리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는 대형 리스크 사건 이후 내부통제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별 회사가 아니라 주로 그룹 차원에서 설치되어 여러 계열사의 준법·윤리 체계를 함께 점검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외부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계열사의 주요 의사결정, 내부거래, 대외후원 등 준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관계사 준법지원 조직과 연계하여 공통 기준과 통제 체계의 정합성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실무적 지원 역할을 담당하며, 기업 운영이 법적 기준과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한화·롯데·KT의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카카오의 준법과 신뢰위원회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외부 준법·윤리 감시기구가 운영되고 있다.¹⁰⁸⁾ 특히

105) 아이코노미뉴스, “은행권, 준법감시 조직 개편 박차”, 2025. 8. 22., <https://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41> (2026. 6. 1. 접속)

106) 비즈니스포스트, “책무구조도 핵심은 준법감시인, 4대 시중은행 모두 ‘내부출신’ 주류는 ‘법학’”, 2024. 10. 31.,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1110 (2026. 6. 1. 접속)

107) 정지영(편집위원), “NH투자증권 손승현 준법감시인 인터뷰”, 서울지방변호사회보, 2024. 5. 8., <http://news.seoul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05> (2026. 6. 1. 접속)

이러한 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위원장으로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률가가 선임되고 있다. 이는 외부 감시기구가 계열사 전반의 준법·윤리 리스크를 점검하고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독립적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전문성과 공적 신뢰를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민간 기업을 넘어 공공 영역에서도 참고 사례로 논의되고 있다.¹⁰⁹⁾

한편 해외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나 내부통제 조직이 법제화되어 있는 경우는 일반적이거나, 우리나라와 같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형 준법·윤리 감시기구가 그룹 차원에서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비교적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ESG·지속가능경영 기여형 변호사의 시장 기반 현황 (2유형)

ESG·지속가능경영 기여형 변호사의 진출은 법적 강행 규범보다는 기업 환경과 시장의 변화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최근 다수의 상장기업과 대기업 집단을 중심으로 이사회 내 ESG위원회 또는 지속가능경영 전담 조직이 설치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이러한 조직을 상설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2024년 344개사(55.8%), 2025년 361개사(57.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¹¹⁰⁾

또한 2024년 6월 말 기준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회사와 상장 금융·보험사 등 301개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주요 상장회사 중 ESG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187개사로 62.13%를 차지하였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사의 설치 비중이 87.50%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에도 69.6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ESG위원회는 평균 4.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의 85.61%가 사외이사로 구성되고 위원장이 사외이사인 경우도 93.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구성원의 역량을 보면 147개사 586명의 이사 중 거버넌스(G) 분야 전문성이 91.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회(S) 4.77%, 환경(E) 3.41% 순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중심의 구성 경향이 확인된다.¹¹¹⁾ 이처럼 ESG 의제가

108) 법률신문, “준법경영의 상징이 된 위원회”, 2024. 6. 1.,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676> (2026. 6. 1. 접속)

109) 예컨대 경기도의회는 2024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5년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켜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2025. 2. 24., <https://www.yna.co.kr/view/RPR20250224007000353> (2026. 6. 1. 접속)]

110)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 -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현황, <https://www.egroup.go.kr/egps/wi/thema/visualPage8.do> (2026. 2. 20. 접속).

이사회 차원의 지배구조·내부통제 이슈와 밀접하게 결합되면서, 법률적 검토와 규범 해석을 담당할 수 있는 법조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게 요구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적 기반의 확대 속에서 법무 또는 사내변호사가 ESG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시·평가 대응·공급망 실사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펌, 자문사, 평가·리서치 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ESG 관련 법률 전문성의 활용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표 4-7】 ESG위원회 구성원의 역량 구성표(Skills Matrix) 분석 (단위 : 명)¹¹²⁾

구분	역량(Skill)	사외이사	사내이사	합계
환경(E)	기후/기후변화	9	1	10
	환경/환경오염	8	1	9
	(재생)에너지	1	0	1
	계	18	2	20
사회(S)	인권/소수자보호	3	0	3
	공중보건/산업안전	4	1	5
	노사관계	4	0	4
	(개인)정보보호	3	0	3
	지역사회	2	0	2
	소비자보호	9	2	11
	기타	1	0	1
	계	25	3	28
거버넌스(G)	기업경영/마케팅/글로벌	51	54	105
	재무/회계	165	46	211
	노무/인사	2	2	4
	법률/정책	104	6	110
	지배구조	2	1	3
	핵심산업/사업전문성	79	18	97
	기타	7	2	8
	계	410	129	539

ESG는 기존의 법규 준수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넘어, 기업의 비재무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예컨대 환경오염, 산업재해, 인권침해, 금융

111) 강정민, 주요 상장회사 이사회 BSM 분석-ESG위원회의 기후전문성을 중심으로-, 이슈&분석 2025-01호, 경제개혁연구소, 2025.1.23.

112) 위의 글.

상품 불완전판매, 내부자 거래, 부패 및 횡령 등은 ESG 평가에서 ‘컨트로버시(controversy)’로 반영되어 투자 의사결정과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¹¹³⁾ 이에 따라 기업은 사후적 분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사전적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역에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ESG·지속가능경영 기여형 변호사는 법률상 의무에 의해 형성된 직역이라기보다 시장의 요구와 규범의 확산에 따라 자발적으로 형성된 영역으로서, 그 활동 범위는 기업 내부의 법무 및 준법 기능,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 ESG 평가 및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향후 공급망 실사, 지속가능성 공시, 기후관련 금융규제 등 ESG 관련 규범이 점차 제도화될수록, 이러한 영역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전략적 공공가치 창출형 변호사의 진출 기반 현황 (3유형)

전략적 공공가치 창출형 변호사는 주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임팩트 투자 조직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인 유형의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영역은 전통적인 영리기업과 공공부문 사이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과 조직을 등장시키고 있으며, 그 운영 과정에서 법률적 전문성에 대한 수요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적경제 영역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사회적기업은 총 3,762개소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¹¹⁴⁾ 2025년 12월 말 기준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31,895개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¹¹⁵⁾ 또한 소셜벤처 기업 역시 2024년 기준 3,259개사로 전년 대비 21.6%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¹¹⁶⁾ 이러한 수치는 공익성과 시장성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략적 공공가치 창출형 변호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협동조합 금융 및 사회적금융, 공공-민간 협력사업, 임팩트 투자 및 지속가능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법률문제 해결을 넘어 사업 구조 설계, 제도 개선, 금융 구조 설계 등으로 확장되

113) 황성준·박경보, “기업의 ESG 성과가 미래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 제19권 제1호, 한국창업학회, 2024, 89-91면.

114) 사회적기업 포털 자료 참조(<https://www.seis.or.kr/subPage.do?menuId=20401>)

115) 협동조합 포털 자료 참조(https://www.coop.go.kr/home/statistics/statistics1.do?menu_no=2035)

116)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30년, 외형 성장 넘어 ‘혁신’까지!- 2025년 벤처기업·소셜벤처 실태조사 발표(‘24년 기준)”, 2025. 12. 27.자 보도자료 참조.

고 있다. 특히 이 영역에서는 변호사가 내부 구성원 또는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여 공익적 목적을 직접 구현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방식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2. 유형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본 직역의 실제와 역할 구조

(1) 규범·준법 기반형 변호사 사례 (1유형) - 외부 독립 감시기구 소속 A변호사

규범·준법 기반형 변호사 중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제도 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와 통계가 비교적 축적되어 있는 반면, 법률상 설치 의무가 없는 외부 독립 감시기구에서 준법·윤리 기능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역할과 직무 구조에 대해서는 분석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기업의 외부 독립 감시기구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규범·준법 기반형 직역의 역할 구조를 정리하고자 한다.

현재 대기업 외부 독립 감시기구에 종사하는 A변호사는 기존 대형 로펌과 기업 사내변호사 경력을 거치며 소송·자문 중심의 사후 대응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분쟁 발생 이후 대응보다는 의사결정 단계에서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예방하는 역할에 매력을 느껴 외부 독립 감시기구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개별 계열사 단위가 아니라 그룹 차원의 주요 의사결정과 리스크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직무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했다.

A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조직은 그룹 차원의 준법·윤리·리스크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계열사 전반에 적용될 공통 정책·기준을 수립하고, 주요 리스크 아젠다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프로세스 설계, 대외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상생·책임 이행체계 점검, 이사회·경영진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책임성 관점의 내부통제 강화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해당 조직에는 이사회 상정 이전 단계에서 안전을 공유받아 법적·평판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 이전에 검토·차단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준법 기능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러한 업무 특성에 따라 조직 내 변호사 비중도 약 80%로 높게 구성되어 있었고, 동시에 회계사와 리스크·내부통제 전문 인력 등이 함께 참여하여 법적 검토와 실제 점검·평가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는 조직 구조를 보였다.

변호사의 역할 역시 단순한 위법 여부 판단을 넘어선다. A변호사는 “된다/안 된다는 이분법이 아니라 가능한 선택지와 조건을 설계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입법 취지와 규제 방향, 이해관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칙과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기능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계열사 공통 정책 수립, 투자·거래 관련 사전 검토, 제보 조사 및 정책 점검 과정에서 변호사는 법적 기준뿐 아니라 평판·지속가능성·사회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는 판단 기준 설정자로 기능하는 것이다.

다만 외부 독립 감시기구의 영향력에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해당 조직은 권고기구의 성격을 가지므로 강제력은 제한적이며, 실제 반영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변호사 또한 인터뷰에서 “독립 감시기구가 계열사에 권고 의견을 제시해 의사결정이 철회되거나 수정된 사례도 있었지만, 경영 판단과 직접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그대로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투자·사업 전략과 같이 경영 자율성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에서는 권고가 참고 의견에 머무는 경우가 있었던 반면, 절차적 정당성이나 리스크 관리와 직결되는 사안에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A변호사는 “충돌을 숨기지 않고 의사결정 테이블 위로 올리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외부 독립 감시기구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역할은 기업의 의사결정 이전 단계에서 리스크와 이해관계자 영향을 구조적으로 드러내고 논의하도록 만드는 조정·관여 기능에 가깝다. 이는 사후 분쟁 대응 중심의 전통적 변호사 역할과 달리, 기업의 의사결정과 내부통제 과정에서 법적 기준과 준법 요구가 사전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ESG·지속가능경영 기여형 변호사 사례 (2유형)

ESG·지속가능경영 기여형 변호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ESG 대응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 관여하며, 법률적 검토를 넘어 시장 규율과 공시 체계를 매개로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가진다. 이 유형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자문가가 아니라, 규제와 투자 기준, 공시 요구를 기업 내부의 정책과 의사결정 구조에 연결하는 조정자로 기능한다.

1) 민간 기업 ESG 업무 담당 B변호사

B변호사는 대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소송 대응, 계약·자문, 내부 규정 정비, 컴플라이언스 및 대외 대응 업무 등 폭넓은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뷰티 브랜드에서 준법경영본부장으로 재직하며, 법무·컴플라이언스·감사·대외업무와 함께 ESG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내변호사의 역할을 넘어 조직 차원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기업 내 ESG 담당 변호사의 역할을 단순한 법적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경영 의사결정과 연결하는 조정자로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ESG를 별도의 사회공헌 활동이라기보다 공시, 투자 기준, 대외 신뢰 형성과 결합된 경영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규제 이해와 리스크 판단 역량이 실무적으로 활용된다고 보았다.

또한 강조된 지점은 ESG가 이제는 더 이상 ‘선언’에 머물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공시 체계와 결합될수록 기업의 설명 책임이 강화되며, 공시 내용의 정확성·정합성 자체가 법적·평판적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면 허위공시가 되고, 덜 했는데 더 했다고 하면 불완전공시가 된다”는 언급은, ESG가 가치 담론을 넘어 공시 기반의 검증·책임 메커니즘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대외 환경 변화, 특히 수출·투자와 연결되는 기준의 강화가 ESG를 실효적 과제로 만들고 있다는 인식도 확인되었다. “미국에 수출하려면 ESG라는 정당성으로 대변되는 무역 장벽을 통과해야 한다”는 언급은, 인권·환경 등 기준이 기업의 선택적 가치가 아니라 시장 접근 조건으로 기능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 내 ESG 담당 변호사는 규제·공시·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 의사결정이 외부 기준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ESG가 비용 조직으로 인식되거나, 초기에 CSR/홍보 중심으로 형식화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공시, 투자자 요구 등 외부 요인이 누적되면서 ESG의 필요성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규제 이해와 공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가진 변호사의 역할 역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평가된다.

종합하면, 기업에서 ESG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외부의 규제·공시 기준과 투자자·시장 요구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SG는 공시 정확성, 공급망 기준, 투자자 신뢰 등과 직결된 경영 요소로 작동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는 관련 기준을 해석하고 내부 기준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각종 ESG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내부 정책을 정비하고 의사결정 기준을 재정비하는 과정은 단발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조직 운영 전반의 기준과 절차를 재정렬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규제 대응과 공시, 시장 요구에 맞춰 ESG 기준을 정비해 가는 과정 자체가 결과적으로 공익과 연결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ESG 평가기관 소속 C변호사

C변호사는 금융지주 및 증권사 등 금융권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이후 ESG 평가 영역으로 진출하였다. 현재는 국내 3대 ESG 평가기관 중 하나에서 대표로서 조직 운영과 전략 수립, 평가 체계 고도화, 고객 대응 등을 총괄하고 있다. 위 평가기관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과 공시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의결권 자문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으로, C변호사는 이러한 평가 업무 전반을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영역에서 ESG는 도덕적 당위에 따른 활동이라기보다, 투자자와 시장이 기업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기능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C변호사는 국내 ESG가 그동안 기업 홍보(PR) 수준에 머물렀으며, 공시 정보의 신뢰성과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ESG 의무공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ESG 의무공시에 대해 “투자자가 신뢰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하며, 투자자가 ESG 요소를 자본 배분과 의결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때 기업의 행동 변화가 유도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ESG 평가의 기능을 사후적 제재나 등급 조정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산업재해 등 사회적 리스크를 사전에 측정하고 이사회 차원에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사건 발생 이후 공시나 패널티 부과에 그치기보다, 리스크 인식과 거버넌스 구조, 전략적 대응 체계를 드러내는 공시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거버넌스 구조와 리스크 관리 체계,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기업 내부 기준과 규제·공시·투자자 요구 사이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것이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인식을 제시하였다. 다만 ESG는 단순히 법적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넘어서는 영역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법을 준수하면 충분하다는 접근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언급하였다. 이는 변호사가 규범 준수 확인자에 머무를 경우 오히려 ESG의 발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자기 성찰적 인식을 보여준다.

제도 환경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ESG 대응 역량 격차, 단기 성과 중심의 정책 운영, 재무적 중요성(materiality)에 대한 기준의 미비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특히 재무적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없이 공시가 확대될 경우, 향후 분쟁이나 소송을 통해 공시 체계의 신뢰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시되었다.

3) ESG·지속가능경영 기여형 변호사의 종합적 특징

기업 내부에서 ESG를 수행하는 변호사와 평가기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역할은 위치와

기능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ESG를 도덕적 당위나 사회공헌 활동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기보다, 투자·공시·공급망 등 시장 규율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에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 내부에서는 공시와 외부 평가 대응 과정에서 여러 부서와의 협의 및 내부 기준 정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인권·환경·공정거래 등 이슈가 조직의 정책과 의사결정 절차 속으로 점진적으로 편입된다. 외부 평가 영역에서는 투자자의 자본 배분과 의결권 행사를 매개로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 강조된다. 양자는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ESG가 시장 메커니즘과 결합될 때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공유한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 공익은 기업 활동과 분리된 별도의 가치 실현 영역이라기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구조 속에서 구현되는 요소로 이해된다. 즉 ESG·지속가능경영 기여형 변호사는 외부 규제와 시장 기대를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기준으로 내재화하는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공익적 기준이 경영 전략 속에 반영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전략적 공공가치 창출형 변호사 사례 (3유형)

전략적 공공가치 창출형 변호사는 공익 또는 사회문제 해결을 사업의 출발점으로 삼는 조직에서 활동하며, 법률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업모델과 제도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 유형에서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기능한다.

1) 사회혁신기업에서 근무하는 D변호사 사례

사회혁신기업 더함의 D변호사는 로펌에서 기업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이후 공익변호사로 전환하여 재단법인 동천에서 약 6년간 공익법률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직접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혁신기업을 창업하였다. 현재는 조직 운영을 총괄하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법률업무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 기획과 실행에 중심으로 관여하고 있다.

D변호사의 진로 선택은 초기부터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는 “막연히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한국 사회에서 세상을 바꾸려면 법조인이 되라는 조언을 듣고 법학을 선택하였다”고 밝히면서, 법률가라는 직업을 사회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였음을 설명하였다. 다만 준비 과정에서도 단순한 법률전문가로서의 진로에 머무르기보다는, “내가 왜 법률가가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회고하

면서 스스로 공익적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

이후 공익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 문제를 직접 경험하면서, 단순한 법률지원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델인 ‘위스테이’를 기획하였다. ‘위스테이’는 “사는 것(buying)이 아닌 사는 곳(living)”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개발·운영·이익 귀속까지 주도하는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 모델을 구현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 문제와 공동체 해체라는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모델은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등 다양한 법제를 결합하여 설계된 것으로, 법률전문성이 사업모델 설계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D변호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모델 설계가 본질적으로 법적 구조 설계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을 통해 수요자와 입주자가 개발·운영·이익 귀속까지 주도하는 구조는 다양한 법률 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야만 설계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하면서, 법률전문성이 단순한 자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의 핵심적 기반이 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사업 추진 과정에 관한 설명에서 법률가로서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의 협력,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법률가로서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D변호사는 “단순히 제안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히며, 법률가가 정책 제안자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 주체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D변호사의 사례는 법률가가 단순히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는 ‘소셜 디벨로퍼(social developer)’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공익변호사의 역할이 전통적인 법률구조나 권리구제 중심의 활동을 넘어, 사업과 제도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2)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회사 소속 E변호사 사례

비엔지파트너스(Beyond Net Zero Partners)의 E변호사는 녹색금융 및 지속가능금융 분야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정책 및 기준 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해당 조직은 녹색금융 외부검토포로기로 등록되어 있으며,

녹색분류체계에 기반한 평가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E변호사는 녹색금융과 전환금융 영역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설계하고 자문을 제공하며, 정책 설계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자문을 제공하고,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정책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구조 설계에 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심사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사업이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부합할 경우 보증 한도를 확대해 주는 구조를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엔지 파트너스는 기술보증기금에 택소노미 관련 자문이나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심사체계에 부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변호사의 업무는 단순한 법률자문을 넘어, 금융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을 변화시키는 구조를 설계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 특히 녹색금융은 단순한 금융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업이 ‘녹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과 이를 금융과 연결하는 구조의 문제라는 점에서, 법률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E변호사는 녹색분류체계의 설계 및 해석 과정에서 법률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녹색분류체계를 만들 때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법을 잘 알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예를 들어 재활용의 개념이 우리나라와 해외가 다른데, 이를 법률 체계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은행들이 어떤 경우에 녹색인지 판단할 때 기준을 더 직관적으로 만들고, 그 기준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밝히면서, 법률가가 기준 설계와 해석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녹색금융은 기존의 담보 중심 대출과 달리 사업의 구조와 장기적인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에 따라 사업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녹색금융은 법률, 금융, 정책이 결합된 복합적 구조 설계 영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E변호사는 이러한 구조 설계 과정에서 법률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확인하고 있다.

E변호사는 소속 법인의 준법감시인으로서 계약서 검토 및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녹색금융 기준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AI 기반 솔루션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E변호사의 활동은 금융과 투자 영역에서 공익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 구조를 설계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공익을 개별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금융 및 정책 구조를 통해 확산시키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이는 기업 단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검토 및 시사점

전략적 공공가치 창출형 변호사는 제도 설계를 통해 공익적 가치를 직접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법률가가 분쟁 해결자나 리스크 관리자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의 설계자이자 실행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D변호사의 사례는 법률전문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공익변호사의 역할이 전통적인 법률구조 중심의 활동을 넘어, 사업을 통한 문제 해결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변호사의 사례는 공익적 가치가 개별 프로젝트를 넘어 금융시장과 정책 구조에 내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법률가가 규제 설계와 기준 해석, 금융구조 설계를 통해 시장 전체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사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법률가가 단순한 자문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정책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구조를 설계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역할로서, 공익적 가치 실현이 개별 사건이나 프로젝트 수준을 넘어 구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두 사례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률가의 '정체성'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D변호사는 스스로를 공익변호사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문제 해결을 직업적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모델의 설계와 실행을 통해 이를 직접 구현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반해 E변호사는 자신을 전통적인 의미의 공익변호사와는 구별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민간 기업에 소속되어 영리적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공익변호사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녹색금융 및 지속가능금융 영역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를 변화시키고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의 활동은 결과적으로 공익적 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E변호사의 역할은 일반적인 영리기업 내 법률가의 활동과는 구별되는 공익 지향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략적 공공가치 창출형 변호사는 법률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법률가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공익변호사의 개념이 전통적인 비영리·법률구조 중심의 영역을 넘어, 영리 활동과 결합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직역은 여전히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안정적인 수익모델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사회혁신기업의 경우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하며, 지속가능금융 영역에서도 시장의 확대와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략적 공공가치 창출형 변호사의 역할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회혁신기업, 임팩트 투자, 지속가능금융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시장 확대가 필요하며,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영역을 반영한 교육 및 실무 연계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민간 영역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가의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법률전문성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IV

해외에서의 민간 기업의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과 시사점

1. 미국

미국은 자본시장과 기업법 체계가 발달한 국가로서, ESG, 임팩트 투자, 사회적 기업, 공익적 금융 구조 등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함께 베네핏 코퍼레이션(Benefit Corporation)과 같은 새로운 기업 형태가 도입되고, 임팩트 투자 시장이 확대되면서 민간 영역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률가가 전통적인 거래 자문이나 분쟁 해결을 넘어, 기업 구조 설계, 투자 모델 구축, ESG 규제 대응, 공익적 사업 구조 형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공익적 측면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기업법 제도 형성, 임팩트 투자 및 금융, ESG 및 책임경영, 사회혁신 조직 등 여러 영역에서 나타난다.

(1) 기업 법제 및 조직 구조 설계 영역

미국에서는 공익 목적을 반영한 기업 형태와 법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법률가의 역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베네핏 코퍼레이션(Benefit Corporation) 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목적을 주주이익 극대화에서 사회적·환경적 가치 창출까지 확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 변호사는 모델 법안을 작성하고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익

적 기업 구조의 형성에 관여하고 있다. 윌리엄 클라크(William Clark)는 오랜 기간 기업법 분야에서 활동하며 공익 목적 기업 제도의 도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¹¹⁷⁾ 그는 B Lab의 입법 자문 변호사로서 베네핏 코퍼레이션 관련 모델 법안을 작성하였으며, 해당 모델은 미국 다수의 주에서 채택되어 제도화되었다.

또한 그는 미국 변호사협회(ABA) 산하 위원회에서 비영리법 모델법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펜실베이니아주 기업법 입법 과정에서도 주요 법률을 작성하는 등 기업 및 비영리 조직의 법적 구조 형성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다. 이러한 활동은 법률가가 개별 기업에 대한 자문과 함께 기업 활동의 공익적 방향을 규정하는 법적 틀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영역에서는 법률가가 기존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기업 구조와 제도를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임팩트 투자 및 금융 영역

미국은 임팩트 투자와 사회적 금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법률가는 투자 구조 설계, 금융거래 자문, 규제 대응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Social Finance와 같은 임팩트 투자 기관에서는 법률가가 조직의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레슬리 코넬(Leslie Cornell)은 해당 기관의 General Counsel 및 Chief Compliance Officer로서 임팩트 투자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투자 구조 설계, 정책 및 규제 대응, 투자자문업 관련 컴플라이언스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¹¹⁸⁾ 이 과정에서 법률가는 투자자의 권리 보호, 규제 준수, 공익적 목적 달성이라는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LOHAS와 같은 조직에서는 기부금과 투자자본을 결합한 임팩트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릭 데이비스(Rick Davis)는 재단, 가족오피스, 기부자 자금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환경적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구조를 설계하고, 세제 혜택을 고려한 금융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임팩트 투자 자본의 유입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¹¹⁹⁾ 이러한 활동은 자선 자금과 투자 자본을 결합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금융 구조를 설계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영역에서는 법률가가 단순히 금융거래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17) 글로벌 임팩트 변호사 연합 홈페이지 참조(<https://gailnet.org/profile/william-clark/>)

118) 소셜파이낸스 홈페이지 참조(<https://socialfinance.org/person/leslie-cornell/>)

119) 로하스 홈페이지 참조(<https://lohas.org/the-lohas-team/rick-davis/>)

(3) ESG 및 책임경영 관련 자문 및 분쟁 해결 영역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면서, 관련 법률 자문과 분쟁 해결 영역에서도 법률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공급망 관리, 인권 보호, 노동 문제, 환경 규제 등은 기업 활동의 중요한 법적 리스크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전문적 자문이 요구되고 있다.

Impact Advocates APC의 패트릭 밀러(Patrick Miller)는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 조직을 대상으로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을 대상으로 ESG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¹²⁰⁾ 특히 기업과 인권, 공급망 관리 등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다루며, 소비자 및 노동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ESG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전문가 그룹 활동에 참여하여 공급망 책임과 관련된 법률 개정 논의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법률가가 기업의 규제 준수를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기업 활동이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영국

영국은 ESG, 지속가능금융, 임팩트 투자 및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제도적 기반과 시장이 형성되어 온 국가로, 민간 영역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가의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법률가는 전통적인 분쟁 대응이나 계약 자문, 투자 구조 설계, 지속가능성 전략 수립, 사회혁신 프로젝트 실행 등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자본시장, 사회적경제, 공공-민간 협력 영역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1) 지속가능금융 및 ESG 컨설팅 영역

영국에서는 ESG 및 지속가능금융이 자본시장 인프라로 기능하면서, 법률가가 컨설팅, 교육, 전략 수립 등의 영역에 참여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스토리즈 이블브드(Stories Evolved)는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ESG 전략 수립과 지속가능성 교육을 제공하는 컨설팅 조직으로, 법률전문가가 규제 대응과 내부통제 기준 설정을 지원한다. 이 회사의 공동창립자인 크리스티나 바솔로뮤(Christina Bartholomew)는 기업의 지속

120) 럿거스 로스쿨 기업법 및 지배구조센터 홈페이지 참조(<https://www.responsiblecontracting.org/patrick-miller>)

가능성 전략 수립, 규제 검토, 교육 프로그램 설계 등에 관여하며 ESG 기준이 기업 경영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¹²¹⁾

글로벌 로펌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에서는 책임 있는 기업 활동과 인권, 환경 이슈와 관련된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페넬라 챔버스(Fenella Chambers)는 기업 자문과 함께 비영리 조직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ESG 관련 자문과 공익적 법률지원이 결합된 형태로, 법률가가 기업과 사회 영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영역에서는 법률가가 규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 기준에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임팩트 투자 및 개발금융 영역

영국은 임팩트 투자와 개발금융 분야가 발달한 국가로, 법률가는 투자 구조 설계, 금융거래 자문, 규제 대응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브리티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British International Investment)는 영국 정부 산하 개발금융기관으로, 아시아·아프리카·카리브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와 금융지원을 수행한다. 이 회사의 최고법률책임자인 마크 켄더다인-데이비스(Mark Kenderdine-Davies)는 투자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법률·규제·세무 업무를 총괄하며, 투자 구조가 생산성 향상, 환경 보호, 사회적 포용과 같은 목표를 반영하도록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¹²²⁾

립프록 인베스트먼트(LeapFrog Investments)는 신흥국 금융 접근성 확대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임팩트 투자기관으로,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란시스 홀리데이(Frances Holliday)는 투자 계약 구조 설계, 규제 검토, 투자 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가는 투자 수익성과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¹²³⁾

또한, 미로바(Mirova UK)의 대표인 크리스 가너(Chris Garner)는 투자펀드 및 구조화 금융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해 온 전문가로, 임팩트 투자 분야에서 펀드 구조 설계, 채권 및 금융거래 자문, 국제 투자 규제 대응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와 임팩트 투자 법률 워킹그룹 활동에도 참여하며 관련 제도 형성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¹²⁴⁾

121) 글로벌 임팩트 변호사 연합 홈페이지 참조(<https://gailnet.org/people/christina-bartholomew/>)

122) 브리티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홈페이지 참조. (<https://www.bii.co.uk/en/people/mark-kenderdine-davies/>)

123) 립프록 인베스트먼트 홈페이지 참조(<https://leapfroginvest.com/people/frances-holliday/>)

(3) 사회적경제 및 공공-민간 협력 영역

영국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공공-민간 협력 사업에서도 법률가의 활동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베테르 소사이어티 캐피털(Better Society Capital)은 사회적기업과 사회혁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관으로, 법률고문 샬럿 벤슨(Charlotte Benson)은 법률 및 규제 업무를 총괄하며 투자 구조 설계, 규제 대응,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의 결합 구조를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¹²⁵⁾

아동투자펀드재단(Children's Investment Fund Foundation, CIFF)은 국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으로, 부총괄 법률고문 다우다 자와라(Dawda Jawara)는 기부금 운영, 국제 사업 수행, 글로벌 규제 대응을 담당하며 공익사업의 법적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¹²⁶⁾

Systemiq은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지속가능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성 전략 및 투자 플랫폼으로, 정부, 기업,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수석 법률고문 JJ 볼(JJ Ball)은 다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규제 환경을 반영한 계약 구조를 마련하며,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¹²⁷⁾

이와 같은 사례는 법률가가 공공-민간 협력 구조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업 모델과 제도 설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V

기업 내 공익적 법률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방안

1. 제도적 개선방안

(1)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법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도입되었으나, 현행 제도는 선임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미선임에 대한 실효적 제재규정이 부재하여 제도의 실질적 작동력이 제한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124) 글로벌 임팩트 변호사 연합 홈페이지 참조(<https://gailnet.org/profile/sunfunder/christopher-garner/>)

125) 베테르 소사이어티 캐피털 홈페이지 참조(<https://betersocietycapital.com/contact/our-team/charlotte-benson/>)

126) 아동투자펀드재단 홈페이지 참조(<https://ciff.org/team/dawda-jawara/>)

127) 글로벌 임팩트 변호사 연합 홈페이지 참조(<https://gailnet.org/profile/systemiq/>)

한국ESG기준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 대상기업 437개사 중 177개사(40.5%)는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²⁸⁾ 이는 상당수 기업이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를 시사한다.

최근 ESG 경영의 확산과 내부통제 강화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준법지원인은 단순한 법적 형식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기능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법적 리스크, 평판 리스크, 투자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위험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며, 준법지원인은 이러한 내부통제 구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인과 같이 미션임에 따른 제재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션임 사실에 대한 공시 강화, 시정명령 부과,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실질적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

(2)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 선임 대상의 확대

기업의 규모 확대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통제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는 상장회사에 한정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회사로 확대되는 입법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외부감사제도에서 명확하게 확인된다.

예컨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일정한 자산, 매출, 종업원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상장회사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된다.¹²⁹⁾ 또한 같은 법 제8조는 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128) 김희경, “국내 상장기업의 준법통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준법지원인 제도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KCGS Report 제14권 1호, 한국ESG기준원, 2024. 1., 5면.

129) 상법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상법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이러한 규정은 기업의 내부통제 문제가 단순히 자본시장 참여 여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에 비례하여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즉, 외부 감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례를 고려할 때, 준법지원인 제도를 상장회사에만 한정하는 현행 구조는 내부 통제 제도의 체계적 적합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특히 동일한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비상장회사라도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내부통제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이해관계자 보호 및 시장 신뢰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회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¹³⁰⁾ 예컨대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 동일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한 준법감시인 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일정 규모 미만의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에 대해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를 예외적으로 완화하고 있다.¹³¹⁾ 그러나 금융상품 판매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위험은 사업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지 단순한 자산규모만으로 제한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예외를 유지할 필요성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준법감시 기능을 의무화하고, 조직·인력·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준법지원인 및 준법감시인 제도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을 제고하고 법적·평판·투자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를 가진다. 나아

130) 고범준, “ESG와 사회문제의 해결”, 로펌공익네트워크 2021년 하반기 심포지엄 자료집, 2021. 11. 25.

1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가 이는 민간기업 내부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가의 활동 기반을 확장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 ESG 공시 의무화의 단계적 확대 및 인권·거버넌스 영역 법제 정비

ESG 공시 의무화는 단순한 보고 형식의 정비가 아니라, 기업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을 법적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다.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 침해 등에 대한 투자자·소비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사회적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주요국 (특히 유럽)에서는 이미 이를 법제도화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ESG 공시 의무화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보다 두텁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안)’을 발표하여 2028년(2027 사업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단계적 의무 공시를 도입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¹³²⁾ 그러나 적용 대상이 자산 30조 원 이상 초대형 상장사로 한정되어 있고, 의무 공시 항목 또한 기후공시 등 환경(E) 영역에 사실상 국한되어 있어,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¹³³⁾ 및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¹³⁴⁾ 등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그 범위와 내용 모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 결과 사회(S) 및 지배구조(G) 영역에 대한 공시 의무는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 국내 기업의 인권·노동·거버넌스 위험이 시장과 사회에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시 대상기업의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 대기업·금융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시 항목 또한 기후 중심에서 벗어나 인권, 보건·안전, 이사회 등의 ESG 의사결정 등 S·G 영역으로 구체화·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S 영역의 핵심 축인 인권경영 및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지면서 국내 기업의 활동이 해외 사업장·협력업체의 인권·환경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그 위험은 더 이상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거래 중단, 수출 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 구체적 법적·경영적 위협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인권경영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¹³⁵⁾ 유엔 「기업

132)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안)”, 2026. 2. 25. 발표자료 참조.

133)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CSRD) 참조.

134)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CSDDD) 참조.

13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2014 참조.

과 인권 이행원칙」(UNGPs)¹³⁶⁾ 등 연성규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EU CSDDD,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¹³⁷⁾ 프랑스 기업주의의무법¹³⁸⁾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미 인권·환경 실사를 법적 의무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년 6월 13일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른바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은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2,000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 사업장 및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침해를 사전에 식별·예방·구제하도록 하는 실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¹³⁹⁾¹⁴⁰⁾¹⁴¹⁾ 이 법안의 입법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받는 거래 상대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자, 국내 노동자·이주 노동자·지역사회 등이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구제할 통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요한 공익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법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은 인권영향평가(HRIA), 실사 설계, 고충처리 메커니즘 구축, 거래상대방에 대한 계약상 인권·환경 조항 반영, 시정조치 및 구제절차 운영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¹⁴²⁾¹⁴³⁾ 이는 국제인권규범의 해석, 노동·산업안전·차별 등 관련 국내법령의 종합적 검토, 공급망 계약 구조 이해 등의 법률적 판단이 결합되어야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이 법적 책임의 토대 위에서 형성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배구조(G) 영역에서도 ESG 위험을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책임 있게 다루도록 하는 제도 정비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적용 대상 확대 외에도,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ESG 리스크 관리 의무를 포함시키고

136) UN Human Rights Council,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2011. 참조.

137) 독일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공급망실사법, LkSG), 2021. 7. 22. 제정, 2023. 1. 1. 시행 참조.

138) 프랑스 「Loi n° 2017-399 du 27 mars 2017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기업주의의무법), 2017. 3. 27. 제정·시행 참조.

139) 2025. 6. 13. 정태호 의원 대표 발의(의원 14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참조.

140) 더나은미래, “정태호 의원이 밝힌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법’, 핵심 내용은” 2025. 7. 8., <https://futurec hosun.com/archives/126225> (2026. 6. 1. 접속)

141) 같은 취지의 법안으로 2025. 11. 4. 박홍배 의원 대표 발의(의원 15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참조.

142) OECD,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2018. 등 참조.

143)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202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의 상법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거버넌스 영역 공시 또한 형식적 보고를 넘어 이사회 ESG 관련 의사결정 과정, 책임 배분, 보상 연계 등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과정에서 법정 판단의 중요성은 한층 커질 수 있다.

결국 ESG 공시 의무화의 단계적 확대와 인권·거버넌스 영역의 입법 강화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을 법적 기준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과 지역 사회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 사회·거버넌스 영역 공시 항목의 구체화 및 공시 의무화 등은 그 자체로 공익적 의미를 가지는 입법 과제이며,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안에 인권과 공익이 일관된 법적 기준을 통해 반영되도록 하는 토대를 형성한다.

(4) 사회혁신기업 생태계 기반 법제 정비

전략적 공공가치 창출형 변호사의 활동은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임팩트 투자조직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영역은 개별 법률과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로 인해 공익 지향 변호사의 진출이 가능하더라도, 경력의 안정성과 보수 구조 측면에서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사적 이윤과 자본 중심의 경제구조가 심화되면서 소득 불평등, 계층 간 양극화, 지역 공동체의 약화, 사회적 신뢰 저하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사회서비스 격차, 환경 문제 등은 기존의 성장 중심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증시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3년 유엔(UN)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하여 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및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핵심 수단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역시 각국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기본법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통합적 정의와 기본 원칙이 정립되지 못하고, 정책 또한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을 저해하고,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또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⁴⁴⁾ 해당 법안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범부처적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공공조달 연계, 재원조달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시장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포용적 성장과 지역사회 혁신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¹⁴⁵⁾

이러한 입법은 단순히 특정 조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나의 경제 영역으로 제도화하고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사회혁신기업이 공공·민간 협력사업(Public-Social-Private Partnership)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정책금융, 투자,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혁신적 사업모델의 실험과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결국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같은 기반 법제의 정비는 사회혁신기업의 성장과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가 사업 구조 설계, 투자 구조 설계,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민간 영역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익적 가치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지속가능하게 구현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정책적 지원방안

(1) 사회혁신 영역 리걸클리닉 확대

민간 영역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역에 대

144) 2025. 11. 7. 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21403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등 참조.

14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은 26. 4. 22.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의안번호 221855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한 인식 제고와 함께, 예비 법률가가 실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략적 공공가치 창출형 변호사의 경우,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사업 구조, 정책 환경, 투자 및 금융 구조 등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요구되므로,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만으로는 해당 직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연계된 리걸클리닉 제도를 사회혁신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공익법 리걸클리닉이나 공공기관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기관, ESG 관련 조직 등과의 연계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영역은 실제로 법률문제와 사업구조가 결합된 복합적 성격을 가지므로, 리걸클리닉의 교육 효과 측면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사회혁신기업,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ESG 평가기관, 임팩트 투자기관 등을 리걸클리닉 협력기관으로 확대하고, 프로젝트 기반의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혁신기업의 사업모델 검토, 공공-민간 협력사업 구조 설계, 임팩트 투자 계약 구조 분석, ESG 공시 및 내부통제 체계 검토 등 실제 업무를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법률가가 공익적 가치 창출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집중형 프로그램(예: 단기 프로젝트, 워크숍, 현장 탐방 등)을 병행하여 학생들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사회혁신 영역을 “추상적인 관심 분야”가 아니라 “실제 진로 선택이 가능한 영역”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리걸클리닉의 확대는 민간 영역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직역을 제도적으로 가시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의 경험 제공은 향후 해당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혁신 생태계 내 법률전문가의 유입을 촉진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법률사무증사기관 인정 제도 활성화

현행 「변호사법」은 신규 변호사에 대하여 일정 기간 법률사무증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법률사무증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1조의2에 따르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일정 기간 법률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정 요건과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¹⁴⁶⁾

이에 따라 「변호사법 시행령」 제2조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도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사무종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도변호사 요건, 법률업무 수행체계, 교육·지도계획 등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구조에 따르면, 사회혁신기업, 사회적경제 조직, ESG 평가기관, 임팩트 투자기관 등도 내부에 변호사를 두고 일정한 법률업무 수행체계를 갖춘 경우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현행 제도상으로 가능하다. 즉, 법률사무종사기관 제도는 특정 조직 형태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민간 조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2026년 1월 23일 기준 법무부 법률사무종사기관 현황을 보면, 전체 지정기관은 3,827개로, 법무법인(1,874개)과 법률사무소(1,769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¹⁴⁷⁾ 반면 주식회사(306개), 국가기관(63개), 지방자치단체(24개), 기타기관(127개) 등 비전통적 기관의 참여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혁신기업, 사회적경제 조직, ESG 관련 기관 등은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참여한 사례가 아직 제한적이며, 전체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이 제도상 참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정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운영체계 구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참여 가능한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위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변호사법 시행령」 및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따른 지정 요건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회혁신기업, 사회적경제 조직, ESG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제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수의 변호사를 보유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지도변호사 지정, 교육계획 수립 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 진단, 서류 작성 지원, 운영모델 제시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식회사, 공공기관,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형태의 기존 지정 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써, 유사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46) 변호사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47) 법무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현황” (2025. 1. 23. 기준) 참조.

제5장

법학전문대학원·연구기관 내 공익적 직역의 변호사 진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이유진

I

연구 대상 및 범위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한 이후, 시민단체나 로펌 내 프로보노 전담 변호사 등 이른바 ‘공익변호사’의 활동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다수 축적된 반면, 전통적인 법조계 이외의 영역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률가의 현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음을 앞서 서론에서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법률가를 양성하는 유일한 통로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여러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법률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진 바 있다.¹⁴⁸⁾

그러나 위의 두 선행연구에서도 공익변호사의 활동 형태로 연구조사, 공익법 교육을 언급하거나(염형국, 33), 특히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하여 “공익법률 관련 커리큘럼 강화, 공익변호사 연구 협력 등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이나 졸업 후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 연구교수 채용 등” 법학전문대학원이 공익법률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을 남기기도 하는 등(강정은, 이소아 외, 216), 법률가의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활동의 가능성 내지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과거 공익변호사의 활동과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의 교육이나 연구와 연계한 공익법률활동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고, 특히 최근 몇 년 간 여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내 리걸클리닉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일제 교원을 채용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또한 공익사건의 수행에 집중된 기존 공익변호사의 활동과는 달리, 공익법을 학문적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공익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법률가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48) 염형국,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법문사, 2018(언급되지 않음), 강정은, 이소아 외,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보고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사단법인 두루, 2019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소속 변호사를 ‘기타’로 분류하여 소개)

이러한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연구기관에서 공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가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는 그동안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공익적 진로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공익변호사 진로 외에 새로운 형태의 공익 법률가의 진로를 모색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는 향후 관련 제도적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진행한 인터뷰의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 (1) A(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B(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C(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 (2) D(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인권법)
- (3) E(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F(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II

법학전문대학원·연구기관 내 공익적 변호사의 직역적 역할과 제도적 기반

1. 1유형 :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전일제 임상교수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이념)¹⁴⁹⁾, 제20조(교육과정)¹⁵⁰⁾, 동법 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¹⁵¹⁾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149)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150) 제20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1) 제13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 1. 법조윤리(法曹倫理)
-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 4. 모의재판
- 5. 실습과정

일환으로 리걸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¹⁵²⁾¹⁵³⁾ 리걸클리닉은 법조실무의 종합적 학습을 통해 실무와 이론에 대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정의의 실현하는 법조인의 사명을 체험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의 하나”로 알려졌다.¹⁵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서는, 리걸클리닉에 대한 구체적 평가요소로 리걸클리닉의 개설, 적절한 내용 구성, 리걸클리닉 운영비 확보, 리걸클리닉 송무실습 실적,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리걸클리닉의 인적 구성 및 운영조직, 리걸클리닉의 자료집 발간, 가이드라인 및 자료 제공 등을 정하고 있다(4.교육과정 > 4.3실무과목 > 4.3.3.리걸클리닉).¹⁵⁵⁾

평가기준에서는 리걸클리닉의 인적 구성으로 책임자인 전임교원 법조실무교원과 유급 담당직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리걸클리닉의 취지와 특성 상 실무경력이 풍부하고 실제 진행중인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지도가 요구되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기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수의 경우 변호사 휴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리걸클리닉에서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52) 선행연구에서는 근거법령의 ‘실습과정’을 통상 ‘리걸클리닉’으로 지칭하고 있다. 리걸클리닉이라는 용어는 그 용어가 유래한 미국에서도 협의의 의미(교내에서 학생들이 교수의 지도 아래 실제 사건을 다루면서 실무를 배우는 교육과정) 또는 광의의 의미(실무능력을 배양하는 엑스텐션 등을 포함한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모든 교육과정)로 혼용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전일제 임상교원 대상의 인터뷰 과정에서도 협의의 교육과정 또는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적 활동을 다루는 (행정적) 조직 등 리걸클리닉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의미를 아우르고 있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리걸클리닉을 ‘임상법학’ 등의 이름으로 개설되는 수업을 의미하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교내 조직으로서의 리걸클리닉의 적절한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리걸클리닉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선행연구인 정영환, 한국 리걸클리닉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2013.1), 9-14면 참조.

153) 다만, 평가기준에서는 4.3.3. 리걸클리닉에 이어 4.3.4. 실습과정, 4.3.5.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의 공익성을 별도의 목차로 구분하고 있는 등, 리걸클리닉과 실습과정을 별도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154) 정영환, 위의 연구, 5면.

155) 4.3.3. 리걸클리닉 - 평가요소

- (1) (리걸클리닉의 개설) 리걸클리닉 과목 담당교원이나 변호사 등의 지도하에 리걸클리닉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 (2) (적절한 내용 구성) 민·형사 등 실제 사건을 가지고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체험하는 데 적합하도록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3) (리걸클리닉 운영비 확보) 리걸클리닉 운영비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다.
- (4) (리걸클리닉 송무실습 실적) 리걸클리닉 운영을 통한 송무실습 실적이 있다.
- (5)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개별 또는 집합적인 지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지도되고 있다.
- (6) (리걸클리닉의 인적 구성 및 운영조직) 책임자로서 전임교원인 법조실무교원과 유급 담당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 (7) (리걸클리닉의 자료집 발간) 법률상담, 그룹세미나, 법률문제 검토사례 등을 반영한 리걸클리닉을 위한 자료집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 (8) (가이드라인 및 자료 제공) 리걸클리닉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및 자료가 적정하다.

실제 진행중인 사건을 지도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리걸클리닉을 담당하는 임상교원을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포함된 리걸클리닉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의 구성에 대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교내 인력과 교외 인력을 조합하여 리걸클리닉 관련 과목 강의를 담당하게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율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¹⁵⁶⁾

리걸클리닉 담당 임상교원은 교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위촉하여 강의 지도를 맡기는 형태가 많으나, 최근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여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를 전일제 임상교원의 형태로 채용하여 리걸클리닉 지도와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채용형태는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타 기관과의 겸임이 불가하고 교내에 상주하도록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리걸클리닉의 공익성에 대하여 평가기준 “4.3.5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의 공익성”이라는 제목으로 평가요소를 두고 있고, 해석지침에 따르면 ‘사회봉사기회’란 자선 내지 기부, 단순노동과 같은 경우를 제외한 법률을 통한 공익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리걸클리닉 내에 공익적 요소를 포함하는 실제 사건이 어느 정도의 비중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¹⁵⁷⁾

2. 2유형 :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특성화 분야에 인권을 포함하고 있는 학교는 총 4개교(서울대, 영남대, 전남대, 한양대)¹⁵⁸⁾이다. 전공 연구분야에 인권, 공익, 인권정책, 국제인권, 장애인 인권 등을 포함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으로는 공수진(전남대), 권건보(아주대), 박인환(인하대), 박찬운(한양대), 백범석(경희대), 신윤진(서울대), 에르말 프라세리(서울대), 오동석(아주대), 오시진(강원대), 이세련(전북대), 정영선(전북대), 조정현(한국외대), 패트리샤 게디(성균관대), 허완중(전남대), 홍관표(전남대)(이상 가나다순) 등이 있다.¹⁵⁹⁾

156) 교내 교수의 참여 정도에 대하여 0명(6개교), 1-5명(15개교), 6-10명(2개교), 교외 인력의 참여 정도에 대하여 0명(7개교), 1-5명(10개교), 6-10명(6개교)으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의 시점이 2013년으로 현재와 시간차가 다소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정영환, 위의 연구, 71-72면 참조.

157) 4.3.5.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의 공익성

- (1) (실무경험의 적합성)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이 실무경험이라는 교육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 (2) (사회봉사기회 제공)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이 사회봉사기회 제공이라는 교육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 (3) (학생의 실질적 참여)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을 통하여 사회봉사 활동에 매년 입학정원대비 30%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158) 구체적인 특성화 분야는 ‘공익·인권’(서울대, 영남대, 전남대), ‘공익/소수자인권’(한양대)이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홈페이지 내 학교별 입학정원 및 특성화 분야 현황 참조(<https://akls.kr/company/present.php>).

■ 표 5-1 ■ 2025년도 인권분야 특성화 법학전문대학원 내 관련 개설과목¹⁶⁰⁾

학교	개설학기	교과목명	교과구분	학점
서울대	25-1	인권법	전선	3학점
	25-2	현대인권론	전선	3학점
영남대	25-2	환경인권세미나	전선	3학점
전남대	25-1	차별금지법	전선	3학점
	25-1	소수자인권법	전선	2학점
	25-2	공익인권법클리닉	전선	2학점
	25-2	범죄피해자와 인권	전선	3학점
한양대	25-1	인권법	전선	3학점

3. 3유형 : 연구기관 연구자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는 법률가들이 증가하면서 법률과 연관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자로 일하는 경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사법부 내의 연구기관(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에 국한되지 않고, 최근에는 입법부 산하 연구기관(국회입법조사처), 행정부 산하 연구기관(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법률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직책들에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 요건은 박사학위 소지 등의 요건과 함께 자격요건이나 우대요건의 하나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고, 담당 분야가 특정되어 있어 특정 분야 입법·정책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진로로 고려될 수 있다.

III

법학전문대학원·연구기관 내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및 사례 분석

법학전문대학원·연구기관 내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과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의 전일제 임상교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특히 변호사를 겸직하는 형태가 아니라 상근 형태로 재직하는 법학전

159) 2026. 5. 25. 자 각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임교원 연구분야/전공 기준.

160) 특성화 분야에 '인권'이 포함된 학교에 개설된 25년도 1학과 2학과 교과목으로, 상기 과목 중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전공 전임교원 이외의 인접전공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과목도 있었다.

문대학원과 연구기관 내 직위를 조망하면서 공익 분야에 관심있는 변호사들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대상을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 중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과 연구기관 내 공익적 법률가들의 활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하였다.

분석 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의 전일제 임상교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자 유형에 해당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례가 통계적 분석을 위한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각 대상자 별로 사전 서면 인터뷰와 대면·화상 심층인터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2025. 12. 29.부터 2026. 2. 13.까지 약 7주간 실시하였다.

사전 서면인터뷰의 설문은 총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기본 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변호사시험 합격 연도와 현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기간과 업무, 소속 기관의 설립배경·현황·조직·공익인권 분야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공익적 성격의 진로를 선택하게 된 동기와 교육자·연구자로서의 지향을 구체화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현재 업무의 동력과 의의, 어려움과 응답자의 정체성, 그리고 향후 본인 진로에 대한 전망을 질문하였다. 마지막 부분은 현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연구기관 관련 진로의 전망과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1.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전일제 임상교원

(1) 담당 업무와 업무 형태

인터뷰 대상인 임상교원들은 모두 1년 단위의 계약직이자 전일제 임상교원 신분이다. 전일제 임상교원의 역할은 대체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 실무교육을 위하여 공익소송을 수행하면서 실제의 법률문제를 접하게 하는 체험형 교과목인 임상법학(리걸클리닉) 과목을 지도하고,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익법률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실무를 처리하며 그에 수반되는 행정업무를 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일제 임상교원은 변호사 개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소송을 수행하고 그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며, 학생 지도와 동시에 진행되는 실제 소송 수행이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전임 신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¹⁶¹⁾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의 직원으로 겸임이 허용되지 않는 전일제 교원 신분으로 인하여, 학생 지도와 관련있는 소송만을 수행하되

소송 수행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도 교내 리걸클리닉 운영위원회 등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¹⁶²⁾

임상법학 과목의 지도에 있어 전일제 임상교원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은 아니나, 인터뷰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임상교원이 전일제 교원으로 학교에 상주함으로써 공익 실무 내용을 더욱 집중하여 교육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공익소송 실무를 지도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상법학 과목의 연속성을 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들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을 다룰 수 없으므로 이미 종료된 사건의 판례에 근거한 교육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의과대학의 임상교수라는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임상교수(clinical professor) 체계를 만들었고, 이 중 본업이 변호사인 외래교원과 달리 전일제 교원이 있는 셈입니다.”

“공익소송의 수행이 가능한 전일제 임상법학 교원을 채용하면 다른 전일제 임상법학 교원이 없는 학교와 비교했을 때 학생들의 공익적 활동 경험의 폭을 확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진로 선택의 동기

인터뷰 대상인 임상교원들은 공통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이전부터 공익적 진로에 대한 지향이 있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이러한 지향에 기초하여 인권법학회 활동 등 공익인권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임상교원들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전일제 임상교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근무하기까지의 사이에 일반 송무 업무 외에도 여러 공익적 진로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권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 법(희망법)’을 만든 것도 그 이유였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법률센터로 자리를 옮긴 것도 장애인권 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161) 실무경력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기준에 따라 변호사 자격의 휴업이 요구되므로, 전임교원이 수업 지도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62) 인터뷰 대상자들이 소속된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교내에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리걸클리닉 운영위원회가 있어 임상법학 교원이 수행할 공익소송을 소송수행 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사회적 약자를 돕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법률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전업 공익변호사의 길을 택한 것은 아니지만 공익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4년 동안 일반 로펌에서 재직하다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지도변호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 공익적인 업무를 하기를 희망하여 일반 송무 업무 외에도 후견 분야와 관련된 기관들(한국후견협회, 중앙치매센터 공공후견팀)에 근무하였습니다. 공익적인 진로를 계속 이어가려던 중 임상법학교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더 다양한 업무를 하고자 하여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임상교원을 진로로 택한 동기에 대해서는, 전일제 임상교원이 공익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외부 공익인권단체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실무 경험을 통해 경험한 공익적 소송들을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응답하였다.

“임상법학교원은 변호사 실무 경험을 학생들에게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공익적인 소송들을 알리면서 저 또한 공익소송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지도변호사로 근무한 이후) 커리어를 살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공익진로에 대해서 안내하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교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진로로서 (전일제) 임상교원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로, 현재 전일제 임상교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손에 꼽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진로의 하나로 고려되기 어렵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임상법학 교육의 경우 워낙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곳 자체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에서 4년을 일했다고 해도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법률가로서 성장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4년정도 경력을 쌓은 이후 우연적으로 부산대학교에서 임상법학교수를 뽑는다고 하여 그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다른 지도변호사들은 이후의 진로 전망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3) 리걸클리닉 수업 운영의 방향성

1) 학생들의 리걸클리닉 참여 동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리걸클리닉 수강 동기에 대하여, 인터뷰 대상자들은 ①실무 경험에 대한 욕구, ②공익 사건에 대한 관심 등의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가) 실무에 대한 경험과 학습

리걸클리닉 수업이 실제 진행중인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실무경험에 대한 욕구가 리걸클리닉 수업 수강으로 이어진다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실제 소송 서면을 접하는 데에서 나아가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이론에 대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무수습과 차별화되는 학습의 기회가 된다는 응답도 있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 리걸클리닉의 운영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¹⁶³⁾ 가상 사례를 다루는 ‘법문서의 작성’ 수업과 달리, 리걸클리닉 수업의 과제로 실제 기일을 앞두고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학생들이 흥미를 느낀다는 것이다.

“소송은 5~6건 진행하고 있고, 이 정도 진행하고 있어야 학기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과제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기일에 제출해야 할 준비서면을 작성해보라고 하면, 본인이 작성한 과제가 실제 재판에 제출이 되는구나, 좋아하거든요. 과제도 내주는 것을 보면 잘 해 옵니다.”

“저희 학교에는 리걸클리닉학회가 있어서 취약계층 법률상담을 학생들에게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데, 학회원이 80명이 넘어서 이유를 물어보니 법률상담 등 실무를 경험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많습니다. 학생들을 보면 실제 의뢰인을 만나고 실무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고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당장 졸업하면 의뢰인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걱정도 되고, 법률 상담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은데 리걸클리닉 수업에서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이유로 수업 듣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학생들에게 너무 크게 부담지우지 않으면서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의 고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걸클리닉 과목과 실무 수습과의 차이는, 실제 소송의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실제 소송의 이론이나 쟁점에 대해서도 다룬다는 점으로, 쟁점과 이론에 대한 학습이 포함된다는 것이 리걸클리닉 수업과

163) 서울대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분야를 특정하여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인하대의 경우 리걸클리닉이라는 넓은 과목명으로 단일 과목을 개설하되 외부변호사들과 팀티칭 형태로 그룹을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실무수습과의 차이점이라고 학생들에게도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 공익인권 활동에 대한 관심

인터뷰 대상자들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공익인권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분야로의 진로를 모색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있는 등 공익활동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공통적으로 답변하였다.

“인하대 리걸클리닉의 경우 학기초에 해당 학기에 진행할 소송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전일제 임상교원과 공익전담 변호사가 진행하는 공익소송 그룹이 포함됩니다(장애인차별구제소송, 상병급여불승인처분취소소송 등).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그룹을 선택해서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이 공익기획소송에 대한 흥미가 높아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별구제사건과 함께 제도 개선 관점의 공익기획소송을 조합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걸클리닉 수업뿐만 아니라 교과과정 이외에서도, 학점이 부여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 형식의 단기 활동들에도 꾸준히 신청을 하고, 그런 활동들의 성과도 좋습니다. 공익활동에 대한 욕구도 분명히 있고 수요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야 학생들이 공익활동을 경험할 수 있고,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들과의 접점이 생기고 진로로서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습 위주의 리걸클리닉 수업에 대하여 성적을 P/F 형태로 부여하는 경우, 변호사시험 중심의 학사과정 하에서 리걸클리닉 수강의 부담이 경감되어 수업을 수강할 유인이 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이 경우 실무 경험과 공익사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 대한 관심이나 공익적 지향이 뚜렷하지 않은 학생들도 적은 부담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면서 실무와 공익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론 수업에서 다루는 판례 형태의 종결된 사건에 비하여 실제 진행 중인 사건의 수험적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향후 변호사로서의 실무적 역량 강화와 공익적 기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리걸클리닉 수업의 수강 부담을 적절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2) 리걸클리닉의 공익 관련성

전일제 임상교원과 외래교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리걸클리닉 수업과 공익의 연관성에 대하여, 인터뷰 대상자들은 리걸클리닉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소송과 공익의 연관성은 상당 부분

교수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리걸클리닉에 대한 표준적인 커리큘럼이 존재하지 않으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서 민사와 형사 사건을 다루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기준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 수업 개설 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리걸클리닉 과목과 공익 연관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일제 교원의 공익활동에 대한 전문성 여부, 전일제 교원의 업무에서 공익활동이 차지하는 비중 등이 채용을 주관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의 리걸클리닉에 대한 기초나 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리걸클리닉에서 어떤 사건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 커리큘럼이나 기준이 있지 않아서, 교수자에 따라 수업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고 법문서 작성이나 변호사시험 기록형 수업처럼 운영될 수도 있는 등 수업에서 다루는 사건의 공익 관련성은 교수자의 재량에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서 민사와 형사 실무를 다루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형사 사건을 꼭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전일제 임상교원의 의의와 향후 전망

전일제 임상교원의 의의에 대하여, 리걸클리닉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리걸클리닉의 공익활동을 연속성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학생들의 공익적 관점을 넓히고 지역사회와 리걸클리닉을 연계시키는 등 교내에서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이 의미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법률가를 양성함에 있어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기에는 한 개의 소송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공익소송을 한번 접해본 사람과 접해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참정권 소송을 다루었을 때 학생이 그 가치나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 번이라도 학습을 하면 학생들이 발달장애인들의 투표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상법학 수업이 없다면 공익 분야에 대해서 있는지도 모르고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을 마칠 텐데, 학생들의 시각을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법률홈닥터와 연계해서 사건수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 학기 지역 법률홈닥터 변호사님들에게 연계해 주실 만한 소송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교육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소송 수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전일제 임상교원이라는 직업 정체성을, 학자나 연구자라기보다는 공익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이자 교육자로서 바라보고 있었다.

“(전일제 임상교원이) 공익활동이나 공익소송 자체로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은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전업 공익변호사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공익소송을 하시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의 현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느낍니다. 오히려 저희가 하는 업무의 보람은 공익소송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소송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공익 현장에 대해 알게 되고, 간혀있던 인식이 넓어지고, 공익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익소송을 하다보면 그 적은 사건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사건 하나에 더 몰두할 수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학생들과 쟁점을 고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자이기는 하지만 연구나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는 변호사로서 내가 경험한 공익 현장, 변호사로서의 역할, 송무, 소송 등에 대해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공익 소송을 단순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학생들에게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법률 상담자와의 연계를 통해 지적장애인 대출 사기 사건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을 이끌어낸 경우, 학생들과 소송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어떻게 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 장애인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을지 고민하였고,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사건에서는 왜 발달장애인에게 선거 정보 접근권이 필요한지에 관해 학생들과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전일제 임상교원의 직업적 안정성에 관하여는, 다소 실험적인 지위이고 안정적이지 않은 지위로 향후 진로의 예측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전일제 임상교원 제도가 1년 단위의 계약직 형태로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마다 전일제 임상교원 관련 예산 확보 방법에 차이(국비, 본부 예산 등)가 있고, 처우가 불안정하고 당장 다음 해의 계약이 될지의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5) 필요한 제도적 지원

인터뷰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공익적 실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결과제로서 현재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변호사시험의 부담이 상당한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다른 장치들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익적인

소송을 경험하거나 공익적인 진로를 모색하기도 어렵다는 취지이다.

“해외 로스쿨에서는 임상법학교원이 안정적인 지위로 변호사 업무와 지도를 모두 병행할 수 있는 형태로서 독자적인 전문성을 인정받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시험의 부담 등으로 인해 실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임상법학교원이 제대로 실무 교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리걸클리닉 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에 대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전일제 임상교원의 의무화 내지 확대라는 방향상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공익변호사들에게 있어 전일제 임상교원이 장기적인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직장으로서 인식되려면 현재와 같은 소수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수한 자리가 아닌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인적 및 물적 기반의 확보와 여러 기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현장경험을 가진 실무가들이 학교로 진출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는 취지이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실무가와 연구자가 매우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 학위 코스를 밟지 않은 실무가들이 박사학위 없이 학계에 진출하는 것이 제한적이고,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무 교수로 박사학위 없이 임용이 되기는 하지만 그 경우의 실무 경험은 대체로 판사, 대형로펌 등의 경력이지 공익활동을 한 변호사 경력만으로 학교에 가게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실무가들이 학교로 진출하는 경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전임교수가 되더라도 변호사 휴업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호사로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습니다.”

리걸클리닉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공익적 요소를 제고하기 위하여, 리걸클리닉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공익적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공익 관련 요소를 평가기준에 반영함에 있어 기준으로서의 공익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에서 사법접근권 등 여러 요소를 가지고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평가기준에 공익 소송을 리걸클리닉에서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면 전일제 임상교원의 채용에 정당성이 더해질 수도 있고, 기준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제 공익 관련 수업이 개설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공익활동 실적이 반영되는 기준은 온라인 법률상담의 학생 참여와 같은 것인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평가기준을 준수하려고 하므로 평가기준을 구체화해

서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해준다면 리걸클리닉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걸클리닉 관련 해외 컨퍼런스에 참여해보니, 리걸클리닉의 존재 이유는 학생들의 교육 측면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리걸클리닉의 공익활동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세운다면, 사회적 기여에 대한 부분, 리걸클리닉 활동으로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난민 등 다양한 계층에서 본인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보편적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 대상의 일정 비율을 이러한 계층으로 하라고 한다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 전임교원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였던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여러 답변이 관찰되었다. 실무경력 있는 전임교수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무교육과 이론수업과의 경계가 뚜렷해지고 협력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이다. 다만 전임교원의 변호사 개업과 활동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송 수임에 있어서는 현재 리걸클리닉의 전일제 임상교원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학교별로 필요할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나아가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임교원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제한적 소송대리를 허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기존에 전임교원의 변호사 업무 수행에 제한이 있던 것과 관련하여) 임상법학 교원만이 아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전임교원들도 영리 사건이 아닌 공익 사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익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소송을 학생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임상법학 교원은 임상법학 교원대로 공익소송을 하고, 전임교원 중에서도 제한적으로 전공에 특화된 공익 소송을 수행한다면 공익소송을 학생들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격이 있는 전임교원이 참여하면 학교 입장에서도 공익활동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건 수임을 성격 제한 없이 수임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현재 임상교원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학교별로 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소송대리 문제도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로스쿨생들이 소송대리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소년사건 국선 보조인이라든지 피해자 대리를 하는 국선전담변호사, 국선변호인 등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일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1) 담당 업무와 업무 형태

인권법 전공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의 역할은, 연구와 교육 그리고 공익인권 특성화 법학전문대학원 내 공익인권법센터 업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에 관해서는, 학부 교양과목 강의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인권법 수업(공익인권법 클리닉¹⁶⁴⁾),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내 법조실무에 관한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 작성 등의 수업을 맡고 있다.¹⁶⁵⁾ 공익인권법센터의 업무로는 구체적으로 공익인권 전문 학술지 발간, 공익인권 교육(교내 공익인권 관련 전공트랙 개발 운영 및 시민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과제 발굴 및 연구용역 수행, 지역 또는 인권관련 기관과의 자문·교류활동(지자체 제·개정 조례 등 대상 인권영향평가 사업 등) 등을 들 수 있다.

(2) 진로 선택의 동기

인터뷰 대상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으로 약 11년을 근무한 뒤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인권법 전공)으로 옮겨 1년을 근무하였다. 전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는, 공익인권 분야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헌법과 공익인권법 수업 수강 등의 경험을 통하여 공익인권 분야로의 진로를 구체화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이라는 직업을 택하고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경험을 쌓으면서 연구자적 역량도 개발되었고, 실정법으로서의 한계를 가진 헌법과 달리 다학제적인 접근과 실정법의 비판과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한 인권법이라는 전공에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박사과정에 진학하였으며, 공무원 신분의 제약이 덜하고 사회와 밀접한 활동이 가능한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으로 이직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¹⁶⁶⁾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체성이 가능한 공익인권 분야에서 과거 가지고 있던

164) 앞서 다룬 리걸클리닉(임상법학) 수업과는 다른 수업으로, 공익인권분야의 중요한 판례를 선정하여 현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공부하는 세미나형 수업이다.

165) 현실적으로 공익인권 분야 수업을 듣는 학생의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실무 경력을 갖춘 공익인권법 전공자를 채용하여 공익인권분야와 법조실무 분야를 함께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경우이다.

166) 또한 인터뷰 대상자는 진로 선택의 과정에서 학계 내 동일 전공 전임교수님들의 진로를 참고하여 진로를 모색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공익인권 분야의 학술적 진로가 다양하지 않고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으므로, 전임교원만을 염두에 두고 인권법을 전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법률가로서의 정체성이 연구자와 교육자의 정체성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특히 인터뷰 대상자가 근무하는 학교가 지역 거점 대학이자 공익인권 특성과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여러 업무를 통해서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는 점과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을 업무의 큰 동력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수업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법률가로 길러내는 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운영하는 법조실무 수업과 공익인권과 관련된 요소를 연결시킬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다.

(3) 인권법 전임교원의 의의와 향후 전망

인터뷰 대상자는 공익인권 분야에서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뿐만 아니라 광의의 연구계로 넓혀서 본다면 공익인권 관련 업무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¹⁶⁷⁾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 전임교수의 형태로 공익인권법 전공자가 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단기간 내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와 같이 법조실무 경력이 있는 교원을 공익인권법 전공으로 채용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응답하였다.

(4) 필요한 제도적 지원

인터뷰 대상자는 공익인권법을 다루는 안정적인 자리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지적한다. 물론 변호사시험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과 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한 인적·물적 기반의 확보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전반적인 방향은 전임교원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 내 리걸클리닉과 관련되어 실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 등 인권이라는 아젠다를 학문으로서나 실무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어 줄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학계·연구계에 어떤 자리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실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국책연구원 등 여러 포지션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차원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연구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직역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공유해 줄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167) 전일제 임상교원 인터뷰 과정에서도 공익인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필요성이 청취된 바 있다.

3. 연구기관 연구자

(1) 담당 업무와 업무 형태

인터뷰 대상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법무법인,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뒤 각각 입법부와 행정부 산하의 조직에서 법률 관련 연구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¹⁶⁸⁾ 입법조사관은 국회의원의 입법·정책 질의에 답변하고 자체적으로 발굴한 입법 관련 현안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법제연구원¹⁶⁹⁾ (부)연구위원은 해외 입법사례 조사·연구, 국내 입법 관련 정부 부처 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국회의원실·정부부처, 외국 정부의 입법관계자 등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법률(안) 내용에 대한 설명과 교육 등 정책·입법 관련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2) 진로 선택의 동기와 어려움

공익적 성격의 연구직을 택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행정 현장과 밀접하게 일하며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을 경험하고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에 매력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다는 답변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전 학부 과정에서부터 공법 연구에 흥미를 가져왔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 경험을 쌓고 본격적으로 행정법 박사 과정을 거쳐 학위를 취득한 뒤 연구직으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일반적인 법조계 직역이 아닌 기관으로의 진로를 택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범위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정보 부족에 대한 답변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과정 중 변호사가 진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접한 경험이 없어 변호사가 공공 영역에서 일할 때의 역할과 가치를 알기 어려웠다’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과 이후 진로선택 과정에서의 정보 부족에 대한 측면뿐만 아니라, ‘법조계 내에서 소속기관의 중요성이나 역할에 대하여 잘 알려지지 않아, 소속기관의 인지도가

168)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입법 및 정책 관련 사안을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에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로,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법·제도 개선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익인권과 관련이 있다.

169)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 법·제도 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이자 국내 입법·제도 연구, 정부발의 입법안 관련 연구, 국내외 입법례에 대한 번역 및 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부족한 데서 오는 아쉬움'을 언급한 답변 등 법조계 내의 연구직역에 대한 정보 부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답변도 있었다.

법학 분야의 연구직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학위과정 중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특히 법학 관련 연구직의 경우 연구방법론을 익히고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의 상당한 기회비용을 수반하는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재도 이러한 단계에서의 지원으로서 비영리재단(홍진기법률문화재단 박사학위 논문작성 지원사업)이나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내 지원 프로그램(서울대학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연구펠로우 지원사업)이 있으나, 변호사들이 공공분야의 연구직으로 더욱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있었다.

【 표 5-2 】 홍진기법률연구재단 박사학위 논문작성 지원사업 주요내용

1. 목적

- 높은 학술성을 갖추고 있는 박사학위 논문 작성 지원을 통해 법학 연구자들이 법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자 함

2. 대상

- 현재 국내대학에서 법학박사 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대상자로 선정 후 2년 內 법학박사 학위 논문 작성 완료 예정인 자로서 학장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별도의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전업 학생만 지원 가능

3. 논문 주제

- 법학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나, 높은 학술성을 지닌 논문

4. 논문작성 지원금

- 지원금 : 年 2,400만원 (매월 2백만원, 최장 2년 지원)
 - 지원 기준 기간은 1년이며, 지도교수의 연장 추천서를 받아 1년 연장 가능
 - 지원 기간 중 논문 작성이 완료될 경우 해당 학기 말에 지원 종료
- 지원 대상자 : 2명 선정 예정

5. 선발 방법

- 1차 : 자문위원회 심의
- 2차 : 심사위원회 심의 (필요시 면접 실시)

■ 표 5-3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연구펠로우 지원사업 주요내용

1. 프로그램 안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의 학문적 연구와 교육에 관한 역량을 갖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를 두며 ‘연구펠로우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연구펠로우는 법학전문대학원 자체직원으로서, 학문후속세대양성에 관련한 업무를 지원합니다.

2. 모집 개요

- 가. 모집 인원: 3명 이내 (지원 현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나. 임용 기간: 1년 (소정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임용 가능)
- 다. 급여 및 처우
 - 급 여: 월 210만원 내외 (세전)
 - 근무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무
 - ※ 퇴직금, 주휴수당, 연가 사용 대상 아님(단, 근로자의 날 제외)

3. 담당업무

- 가.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에서 수행하는 학문후속세대양성 관련 업무 지원
- 나. 법학전문대학원(일반대학원) 학문후속세대양성과 관련된 업무
- 다. 기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4. 교육(연구) 및 훈련 프로그램

- 가.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 등 학술활동 및 논문 작성(1년간 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 나.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의 연구세미나 등을 포함한 학술활동 참가 가능
- 다. 박사과정 재학 중 장학금 수혜 우대

5. 지원 자격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1)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전문박사과정 재학생·수료생 (박사학위/전문박사학위 취득자 제외)
- 2) 연구능력을 증명할 자료(학위논문, 학술지 출간 논문, 기타 학술적 연구결과물)가 있는 사람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3) 연구기관 연구자의 의의와 향후 전망

공공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자로 일하는 것의 의의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매개로 보다 넓은 범위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업무의 보람을 느낀다’는 점과 ‘정부의 입법과 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부심’, ‘입법이 타법과의 관계에서 정합성을 갖고, 공정성·형평성을 갖는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하는 일의 보람’에 대한 점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업무의 성격상 ‘단기적인 성과나 즉각적인 결과에 쫓기기보다는,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법적·정책적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업무 환경'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다만, 연구기관에서 법률가로서의 역할이나 어떻게 활용하여야 할지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등 법률가가 다수가 아닌 조직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향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학계나 연구기관 등 연구자로서의 진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가로서의 진로를 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로 연구기관에서 학계나 연구계, 일반적 법률가로서의 진로(판사, 사내변호사, 개업변호사) 등 다양한 법조 진로로 진출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한다. 사회적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제도의 현황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과 실제 작동가능한 실무적 해답의 제시를 동시에 해내면서 본인이 연구하는 분야의 정책·입법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이 축적되므로, 그에 기반하여 진로 선택의 폭도 확장된다는 것이다.

(4) 필요한 제도적 지원

학계·연구계와 연관된 공익적 진로를 모색하려는 법률가 양성을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변호사 자격 등록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에 대한 모색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이 공통적으로 청취되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제안으로는, (1) 입법학, 실증법학 등 법학전문대학원 과목의 개설, (2) 국책연구기관 등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혹은 졸업 후 실무수습 기회 확대, (3)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법학 연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이 있었다(아래 서울대학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미래연구자포럼 주요내용 참조).

표 5-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미래연구자포럼 주요내용

1. 목적

- 로스쿨 재학생들의 석사논문 작성 장려 및 연구 역량 강화 지원
- 로스쿨 시대 법학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및 법학 연구 기반의 강화

2. 운영 프로그램 및 지원 내용

-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참여 교수 및 선배 연구자의 멘토링 제공
- CFS 특강 참여 기회 부여
- 언어교육원 제2외국어 수강료 지원
- 센터 소속 교수와의 학술적 대화의 장(CFS Lunch Talk) 참여 기회 부여
- 석사학위논문 작성시 졸업식에서 전원 시상

3. 연구자의 책무

- 석사학위논문 작성
- 석사학위논문 작성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

4. 모집 대상

- 본교 로스쿨 1학년 또는 2학년 학생으로서 석사학위논문 작성 희망자

또한 앞서 다루었던 것과 같이 법률가로서 연구자의 진로를 모색하는 경우의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직의 경우 박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변호사 중에서도 논문을 3편 이상 게재하도록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데, 공익 관련 연구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박사과정의 활성화가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경제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취지이다.

끝으로 변호사단체 차원에서의 역할을 촉구하는 답변도 있었다.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조명하고, 변호사가 단순한 분쟁 해결자를 넘어 사회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예방하는 핵심 공익 주체로서 역할을 할 때의 강점을 충분히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연구 활동, 정책 보고서 작성, 공익 입법 지원 등을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IV

해외에서의 로스쿨·연구기관 내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과 시사점

1. 로스쿨 리걸클리닉 전일제 교원

리걸클리닉 내 교원의 신분과 처우에 대한 현황과 논의는 주로 리걸클리닉 모델이 발달해 온 미국에서 이루어져 왔다.

미국 로스쿨 내 리걸클리닉은 ABA(미국변호사협회) 인증을 기준으로 운영되며,¹⁷⁰⁾ 리걸클리닉 내 임상교원의 처우에 대한 인증 기준도 다양한 변화를 겪어 왔다. 1968년 설립된 포드 재단 산하의 CLERP의 지원에 근거하여 로스쿨에 리걸클리닉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래, 70

170) Maureen A. O'Rourke, The “Law” and “Spirit” of the Accreditation Process in Legal Education, 66 SYRACUSE L. REV. 595 (2016), pp.597-600 참조.

년대부터 법률실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임상교원들의 지위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¹⁷¹⁾ 1984년 전일제(full-time) 임상교원에 대한 직업 안정성을 규정한 ABA 인증기준 405(e)이 채택되었고,¹⁷²⁾ 1996년에는 임상교원에게 정년보장에 상당하는 직업 안정성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강화되었다.¹⁷³⁾ 다만, 임상교수의 지위를 강화하고 로스쿨 내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변화 방향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미국 학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Center for the Study of Applied Legal Education(CSALE)에서 2016-17 기간에 ABA 인증을 받은 로스쿨 중 198개교에 대하여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리걸클리닉 또는 현장실습 과정(field placement course)의 교육자 중 72%가 전일제(full-time)이며, 이는 2013-14년도의 78%, 2010-11년도의 약 82%에 비하여 낮아진 수치라고 한다.¹⁷⁴⁾ 또한 이러한 전일제 교원 중 정년보장을 받았거나 정년보장 트랙에 있는 비율은 45%이고, 5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보장받는 비율도 25%에 달하며, 전일제 교원의 70%가 고용계약에서의 갱신이 기대된다(presumption of renewal)고 응답하였다.¹⁷⁵⁾

임상교원의 고용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리걸클리닉이 실제 클라이언트를 대리하는 등의 실무 과정이므로, 학생-교수 비율 최적화와 사건의 관리를 위하여 전일제 교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며, 임상법학 교육의 책임과 방법론의 가치를 인정하는 전일제 정년보장 교수진을 고용함으로써 리걸클리닉 교육의 장점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한다.¹⁷⁶⁾ 이는 “교육 및 연구의 자유, 외부활동의 자유, 그리고 능력을 갖춘 자들에게 직업의 매력도를 높이는 충분한 경제적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모델이 실제로 임상교원에게 “개인적·

171) 1982년 ABA Accreditation Committee와 Clinical Legal Education Committee가 임상교원에 대한 정년보장 또는 정년보장에 상응하는 장기 재계약 요구를 제안하였던 것에 따른 변화로, ABA 인증기준 405(e)는 로스쿨이 “전문적 기술(professional skills) 프로그램 운영을 주된 책임으로 하는 전임교원에게 정년보장과 유사한 수준의 직위 안정성과 다른 전임 교원에게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부가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Minna J. Kotkin, Clinical Legal Education and the Replication of Hierarchy, *Clinical Law Review*, Vol. 26, p. 287, 2019, pp.5-6.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473809

172) *Ibid.*

173) Joy, Peter A., “ABA Standard 405(c): Two Steps Forward and One Step Back for Legal Education” 66 J. Legal Educ. 606 (2017). https://openscholarship.wustl.edu/law_scholarship/44 p.611-618.

174) CSALE, Survey of Applied Legal Education 2016-2017, p.15. (리걸클리닉과 현장실습 과정 교육자 1,112명 대상)

175) CSALE 2016-2017, *supra* note 27, p.41.

176) Santacroce, David A., “The Status of Clinical Faculty in the Legal Academy: Report of the Task Force on the Status of Clinicians and the Legal Academy.” B. L. Adamson et al., co-authors. J. Legal Prof. 36, no. 2 (2012), p.389.

사회적 정의를 추구할 강화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⁷⁷⁾

미국의 로스쿨과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내 교원의 구성이나 법조시장의 규모·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차이가 있으므로, 전일제 임상교원의 비율이 매우 적은 한국과 미국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¹⁷⁸⁾ 그에 앞서, 미국에서 임상교원의 고용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근거와 그 영향을 다각도로 판단하고 그에 근거하여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2. 로스쿨 인권법 전공 전임교원

해외에서 국가별로 로스쿨 소속으로 인권법을 전공하는 전임교원에 대한 공신력있는 통계를 찾아보기는 어렵다.¹⁷⁹⁾ 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AALS) International Human Rights Section은 2001년 설립 이후 연례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회원 수가 변동하고 있어 구체적인 인원은 공개되지 않는다.¹⁸⁰⁾

3. 연구기관 연구원

해외에서도 변호사들이 의회 소속 연구소나 행정부 내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입법부 소속의 연구기관으로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가 있고, 총 5개의 연구 부서에 고용된 다양한 분야의 정책 분석가, 변호사(attorneys) 및 정보 전문가 400명 이상이 법안·정책분석 보고서 작성과 입법연구를 담당하고 있다.¹⁸¹⁾ 그러나 전체 인원

177) *Ibid.*

178) 이러한 비교가 어려운 배경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의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영향 등이 존재한다. 정영환, 위의 연구, 55면 참조.

179) 다만 1980년대 중반에 보고된 통계에서 미국 로스쿨에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강좌 또는 세미나를 개설한 학교는 1980년 20개에서 1985년 46개로 증가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국제인권법 프로그램 개설 계획이 있는 학교들을 포함하면 총 55개교(전체 로스쿨의 38%)가 국제인권법 프로그램 개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수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국제인권법 교육을 늘리는 과정에서 학생 수요 부족과 함께 관심있는 교수진의 부재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Lillich, Richard B. (1985) "The Teaching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U.S. Law Schools," *Antioch Law Journal*: Vol. 3 : Iss. 1 , Article 9. pp.149-150. <https://digitalcommons.law.udc.edu/antiochlawjournal/vol3/iss1/9>

180) AALS, Section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https://www.aals.org/sections/list/international-human-rights/>

중 변호사 자격 소지자나 법학 전공자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집계한 통계를 찾아볼 수는 없다. 행정부 소속으로 연구직에 종사하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를 찾아볼 수 없다.¹⁸²⁾

V

법학전문대학원·연구기관 내 공익적 법률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방안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과 연구기관 등에서의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먼저, 공익적 법률가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과, 그에 대응하여 변호사시험 합격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리걸클리닉의 활성화, 나아가 학생들이 공익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공익 분야의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선결과제로 변호사시험의 부담으로 인해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주된 초점은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연구기관 내 공익적 법률가 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조정 등 변호사시험 관련 쟁점 이외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다음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리걸클리닉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모델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리걸클리닉 전일제 임상교원 제도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변호사 개업 상태를 유지한 변호사가 학교에 상주하면서 실무 교육 담당, 법학전문대학원 내 리걸클리닉의 학기 단위를 넘어선 연속성있는 운영, 세부 과목/분반 개설 과정의 균형있는 커리큘럼 설계 등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모델이다. 특정 학교에서 시작된 이러한 모델이 여러 학교로 확산되고 벤치마킹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학교에서 리걸클리닉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또는 지역사회와 밀착되어 교내 공익활동의 중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일제 임상교원 제도가 더욱 확산될 경우, 단기적으로 공익변호사들에게 커리어의 선택지로 인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181) <https://www.loc.gov/crsinfo/about/structure.html>

182) 미국 노동부(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직업통계에 따르면 법률가(Lawyers) 중 ‘연방, 주 및 지방정부(주 및 지방정부 산하 학교 병원 및 미국 우편 서비스 제외)’에 고용된 숫자는 40,630명, ‘주정부(학교, 병원 제외)’는 47,650명, ‘지방정부(학교, 병원 제외)’는 57,160명이다. 다만 연구직에 종사하는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통계는 찾을 수 없었다. <https://www.bls.gov/oes/2023/may/oes231011.htm#nat>

재학생들에게도 장기적인 진로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활성화에도 여러 방향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 이를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추가적인 인력 채용에 수반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둔다.¹⁸³⁾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익변호사의 진로로서의 전일제 임상교원 제도에 집중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공익활동을 조망한 것이므로, 전일제 임상교원을 보유하지 않은 법학전문대학원들의 사례를 함께 파악하여 각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적합한 방식으로 리걸클리닉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장기적으로 공익적 법률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제도가 공익활동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일례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서는 리걸클리닉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과 사회적 기여의 역할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리걸클리닉 개설과목의 공익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인터뷰 과정에서 제시되기도 하였다.¹⁸⁴⁾ 다만 이러한 평가기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전에 공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객관적 기준으로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와 함께 리걸클리닉의 내용 구성이나 실제 수행 사건의 수혜 대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익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여러 인터뷰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을 휴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의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전임교원의 실무를 허용하지 않는 기준으로 인하여 풍부한 실무경력을 보유한 전임교원의 공익활동 참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실무교육과 이론수업을 더욱 경계짓는 결과를 낳고 있기도 하다. 전임교원의 과도한 소송 수임 등으로 인한 수업의 충실도에 대한 우려 등 규정의 취지와, 2009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을 포함한 전체적인 운영 사례를 감안하여, 현재 시점에서 해당 규정의 타당성을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뷰 과정에서 미국이나 과거 사법연수원에서의 사례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제한적 소송대리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도적 제언도 있었음을 밝혀둔다.

리걸클리닉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이상의 개선방안에 더하여 공익인권과 관련된 법학 연구

183) 리걸클리닉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인 정영환, 위의 연구, 121-122면, 132-133면 참조.

184) 현재의 평가기준(4.3.5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의 공익성)은 임상법학 개설과목의 내용의 공익성을 다루고 있지는 않고, 리걸클리닉 관련 기준(4.3.3.리걸클리닉)에서도 민·형사 사건 등 실무교육의 측면에서의 적절한 내용 구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를 활성화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임교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공익적 법률가들이 기존의 법조 영역을 넘어 다양한 진로로 진출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를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 내 소수 전공 전임교원 채용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및 법학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박사과정 기간의 경제적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재 법학 교육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입법학, 실증법학 등 과목의 개설, 국책연구기관 등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혹은 졸업 후 실무수습 기회 확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법학 연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재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모색을 도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¹⁸⁵⁾

끝으로 제도 개선에 못지 않게 법조계 내외의 인식 개선을 위한 변호사단체 차원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익적 법률가들의 역할은 법조계 내에서 활동하는 일반적인 법조 직역에 비하여 그 의의나 영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공익적 법률가의 의의를 조명하면서 사회 문제의 분석과 예방에 변호사가 기여할 수 있음을 충분히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홍보는 단기적으로 그러한 공익적 법률가들의 활동을 인정하고 존중받게 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변호사가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85) 다양한 분야의 공익변호사 진로를 조망하는 본 연구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분야 진로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6장

개별 변호사의 공익활동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이택건, 김소리

I

연구 대상 및 범위

2000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의무화 된지 20여년이 지났다. <제3장 시민사회 영역의 변호사 진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난 20년간 공익변호사라는 새로운 직군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공익법운동’을 주도하며 사회변화를 추동하였다. 같은 시기 국내 로펌들의 성장과 함께 로펌들의 체계적인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고, 각 로펌의 공익전담변호사 채용도 활성화되었다.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의 공익법운동과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은 모두 일정 부분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에서부터 그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전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과 상호작용하며 성장하였다.

한편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과거 사법시험 대비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의 상당한 증가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 영역도 다양해졌으며, 사내변호사나 공직 진출 등 전통적인 송무 시장을 벗어나 일자리를 찾는 변호사들이 늘어났다. 법률 시장의 규모 또한 지난 10년간 두 배로 성장했다.¹⁸⁶⁾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변호사 수와 업무 영역의 확대가 그 자체로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총량과 전문성을 확대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공익과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깊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였다.¹⁸⁷⁾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시점 정부터 공익법단체와 로펌들의 프로보노 조직이 본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들의 활동이 한국 사회 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과 사회구성원의 사법접근권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186) 한국일보, ‘변호사가 배고파서 정의로울 여유가 없다고?...변호사 수 정말 많을까’, 2026. 4. 23.,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42213580004105> (2026. 5. 22. 접속)

187) 이준웅 외 2,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 교육이 직장선택 고려사항과 법조현실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재협(편), 대한민국의 법률가, 박영사, 2016, 116면.

그러나 이와 동시에 모든 변호사가 반드시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회의가 팽배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2017년 이후 모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또는 “변협”) 회장 선거에서 다수의 후보자들이 공익활동 의무 폐지 또는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¹⁸⁸⁾ 변호사 업계 내의 공익활동 의무에 대한 냉소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래 단원은 변호사의 공익활동 종사의무의 법정화 배경을 개괄하고,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현황을 살펴본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매년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변회”)에게 보고되며, 그 보고 결과는 취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전체 통계가 공개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보고의무가 상당 부분 형해화되어 있어 공익활동의 현황을 살펴보는데 적절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아래 단원은 문헌조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변호사들을 소속, 연계 단체, 지역, 활동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별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공익활동의 현황, 한계 및 성과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제언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이들의 고용 또는 개업 형태는 다르나, 모두 소속 기관(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개별 변호사로서 자신의 공익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

표 6-1 인터뷰 참여 변호사

참여자	활동분야	성별	연차	지역	연계단체*
A	이주민, 난민, 장애인, 공익활동 지원**	남	15년 이상	경기도	대한변협, 민변 등
B	장애인, 공익활동 지원	남	10-15년	서울	지방변회, 민변 등
C	아동청소년, 여성	여	10-15년	서울	국제아동인권센터, 민변 등
D	여성, 난민, 이주민 등	여	10-15년	인천	지방변회, 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 유엔난민기구, 민변 등
E	노동, 여성, 주거	여	10-15년	서울	민주노총, 대한변협 전세피해 법률지원단, 성폭력피해자 지원 단체 등

188) 이를테면 과거 대한변협 선거 공약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제49대 선거: 공익활동 보고의무 폐지. 로이슈, ‘변협회장 선거 후권…장성근 vs 김현 공약 역시 “변호사 일자리”’, 2017. 1. 2.,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170102113721720575601_12 (2026. 5. 22. 접속). 2019년 제50대 선거: 공익활동 의무 폐지 또는 대폭 축소. 세계일보,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 논란..헌법소원에 폐지 목소리까지’, 2019. 1. 3., <https://www.segye.com/newsView/20190103001774> (2026. 5. 22. 접속). 2021년 제 51대 선거: 공익활동 의무 폐지. 서울경제, ‘변협회장 후보들 ‘변시 합격자 감축’ 최우선으로... “입법 통한 직역수호” 한 목소리’, 2021. 1. 20., <https://m.sedaily.com/amparticle/12964379> (2026. 5. 22. 접속). 2025년 제53대 선거: 공익활동 의무 대폭 축소. 파이낸셜뉴스, ‘김정욱, 변협회장 후보자 등록... “변호사단체 통합·발전 이뤄낼 것”’, 2024. 12. 20., <https://www.fnnews.com/news/202412201754287695> (2026. 5. 22. 접속).

참여자	활동분야	성별	연차	지역	연계단체*
F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여	5-10년	서울	땡동, 민변, 두루 온마을Law, 성폭력피해자 지원 단체 등
G	아동청소년, 이주민, 난민, 장애	여	5년 이하	경북	두루 온마을Law 등
H	난민, 무국적자	남	15년 이상	서울	대한변협 등

* 개별 공익사건을 변호사에게 전달하거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단체

**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에서 회원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II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 제도

1.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 제도 개괄 및 연혁

변호사법은 제 27조에서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제90조 및 제91조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로 변호사법 위반을 규정하고 있으므로,¹⁸⁹⁾ 제27조의 공익활동 의무 위반도 이론적으로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제27조는 2000년 1월 28일 변호사법 개정¹⁹⁰⁾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이는 세계 최초로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법률상 의무로 규정한 사례이다.¹⁹¹⁾ 현재도 변호사의 공익활동 또는 프로보노 활동을 변호사 단체의 내부 규정 또는 윤리적 권고가 아니라 법률 상 강제 의무로 규정한 국가는 찾기 힘들다.

유사한 방식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법정 의무를 부과한 국가는 한국 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일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3년 Legal Practice Act의 Section 29 및 94(1)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모든 법조인에게 연간 40시간의 봉사활동(community service)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¹⁹¹⁾ 수습 법조인에게는 연간 8시간의 봉사활동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

189)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 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190) 나지원,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제47권 제3호, 2023, 46면.

191) 인정되는 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무부 장관이 법조협회(LPC)와 협의하여 승인한 국가 기관에서의 서비스 제공,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에서

변호사법 상 공익활동 의무의 범위와 규모에 있어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2026년 기준 제도 시행 현황 및 결과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황승흠(2004)은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의 법정화를 법조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부응하기 위한 변호사업계 노력의 결과물로 설명한다.¹⁹²⁾ 1990년대 후반 의정부 및 대전에서 발생한 법조 비리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 직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했으며, 이는 변호사 단체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변호사 단체의 설립 및 가입 강제 조항을 폐지하고, 복수 설립을 허용하는 임의단체화를 추진하려 했는데,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변호사 단체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익활동의 의무가 포함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그 결과 대한변협의 독점적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는 유지 하되, 모든 변호사의 연간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수행할 의무가 새롭게 도입되게 된 것이다.¹⁹³⁾ 즉, 특정 전문자격사 직업의 공익활동 의무가 그 전문자격사의 독점적 법정단체의 공익적 성격의 일부를 구성하여, 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 것인데, 이러한 사례는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헌법재판소도 변리사회의 독점적 법정단체 성격의 정당성을 변리사회의 공익성에서 찾고, 그 공익성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변리사회 차원에서의 공익활동의 필요성을 긍정한 바 있다. 변리사회의 의무가입은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무료 변리 등”을 포함한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¹⁹⁴⁾

의 서비스, 소액사건심판소의 위원을 포함하여 아무런 보수 없이 사법관으로서 제공하는 서비스, 법조협회(LPC), 학술 기관 또는 비정부 기구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법률 교육 및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타 모든 법률서비스

2. 일반적인 법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권, 시민의 자유 또는 공공의 권리를 확보하거나 보호하려는 개인, 그룹, 조직에, 또는 자선, 종교, 시민, 지역 사회 및 교육 기관에 무료 또는 할인된 수입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무료 법률 서비스 (프로보노)
4. 고등법원 지원의 법원 서기로부터 받은 빈곤자 소송구조(in forma pauperis) 사건 수입;
5. 봉사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수습 법조인(candidate legal practitioner)의 감독
6. 무료로 예비 법조인들에게 제공하는 강의 및 교육

192) 황승흠,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 법과사회 제26호 (2004).

193) “우리 위원회는 1999년 5월 25일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등의 참석하에 공청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걸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변호사단체의 임의화 및 복수화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 변호사단체는 헌법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띤 단체라는 점에서 다른 사업자단체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 [...] 현재 변호사단체는 무료법률상담, 당직변호사제도,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 중소기업 법률자문, 국선변호인제도 등 국가가 수행하기 힘든 여러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바 만약 변호사단체가 임의화 및 복수화될 경우에는 회원확보, 회비징수 등에 애로가 발생하여 재정이 공동화됨으로써 이러한 공익적 활동이 위축될 것이 예상 [...]” 법안소위제1소위원회 최연희 의원, 제20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6호, 1999. 12. 17.

변호사법 제27조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범위와 연간 시간 등은 모두 대한변협에 위임하고 있고, 2000년 제정된 대한변협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이하 “대한변협 규정”)이 이를 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어떤 활동이 공익활동에 해당하는지를 정의하고, 변협 소속 회원들에게 연간 30시간의 공익활동 의무를 부과했다. 회원들이 연간 공익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 또한 신설되었다. 이러한 변호사의 공익활동 범위 및 보고 체계는 현재까지 대체로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03년 규정 개정으로 공익활동 시간의 ‘배분’이 허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 내 지정된 공익활동 전담 변호사가 수행한 공익활동 시간을 해당 법무법인 소속 다른 변호사들에게 배분하여 이들이 공익활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제4조). 2010년에는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 역시 공익활동으로 인정되었다(제2조).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역시 2000년에 제정되었다(이하 “서울변회 규정”). 서울변회 규정은 전반적으로 대한변협 규정이 채택한 틀을 따랐지만, 2001년 개정을 통해 연간 공익활동 시간을 대한변협 규정(30시간)보다 10시간 적은 20시간으로 정했다(제5조). 서울변회 규정은 2003년 대한변협 규정 개정보다 앞서 이미 공익활동 시간의 배분을 허용했다(제6조). 서울변회 규정의 2013년 개정에서는 보고 의무 불이행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되었는데, 연간 공익활동을 보고하지 않은 회원들을 징계하려던 서울변회의 시도가 무산된 이후에 취해진 조치였다(아래에서 상술한다). 2019년에는 공익활동 의무 면제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육아휴직 중인 자와 육아로 인해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소명한 자가 포함되었다. 후자의 면제 조항은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회원에게 3년 동안 적용된다(제4조 제5항). 서울변회 또한 지정된 단체에 대한 기부를 공익활동으로 인정했다. 공익활동 의무를 대신하여 변호사들이 납부한 개인 기부금의 총액은 2024년 기준 약 8,000,000원으로 추산된다.¹⁹⁵⁾

대한변협이 제시하는 공익활동의 범위와 서울변회가 허용하는 공익활동의 범위는 대체로 유사하나, 일부 부분이 다르고, 서울변회가 시도한 변화가 이후 대한변협 규정에 반영된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변회 회원이 대한변협 회원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고,¹⁹⁶⁾ 서울변회 외

194) 현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결정, 현재 2026. 4. 29. 2020헌바21·56(병합) 결정 등.

19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2024년 기부금 보고서, 2025. 동 보고서 상 개인 기부금 총액은 약 170,000,000원이다. 전체 개인 기부금 중에서 변호사들이 공익활동 의무를 대신하여 납부한 기부금만을 따로 분류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17,815,010원에 달하는 비정기 개인 기부금 총액 중 600,000원(서울변회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 기부금액을 제외하면 7,865,010원이다. 이는 총 24명이 납부했다.

196) 헤럴드경제, “‘서울 변호사’ 3만명 시대…10명 중 8명 서울에 왜?”, 2026. 2. 1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74303>, 2026. 5. 22. 접속)

의 지방변회는 대체로 대한변협 규정에 따라 공익활동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규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⁹⁷⁾

2.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규정에 따른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 분류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다양하며, 특히 서울변회 규정과 지침은 가능한 공익활동의 종류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를 크게 나누어 1) 공익적 단체를 위한 활동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한 법률지원), 2) 공익적 단체를 위한 기부, 3) 대한변협 또는 서울변회의 임원 또는 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하는 업무 및 대한변협 또는 서울변회의 행사 참석 등, 4) 대한변협 또는 서울변회가 주관하는 법률상담 프로그램 참여 또는 법률상담 보직 지명에 따른 업무 수행, 5) 대한변협 또는 서울변회가 운영하는 공익소송 등 공익활동 프로그램 참여, 6) 국선변호인 활동, 7) 공공기관을 위한 법률활동, 8) 기타 활동 등 다음의 8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6-2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변호사 공익활동 규정

분류	대한변협 규정	서울변회 규정	서울변회 지침
공익적 단체를 위한 활동	시민의 권리나 자유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경제적인 약자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위 공익적 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 자로서의 활동 중 이 회 또는 지방변회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공공기관을 위한 법률부조 활동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하는 법률부조 (제3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의 공익활동에의 참여를 통한 공익활동 : 공공기관이 행하는 공익활동·공익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활동 (제3조 제1항 제4호) 공익단체를 위한 법률부조 활동 : 공익단체를 대상으로 그 권리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법률부조 활동 (제3조 제1항 제5호) 공익단체의 공익활동에의 참여를 통한 공익활동 : 공익단체가 행하는 공익활동·공익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활동 (제3조 제1항 제6호) 공익단체 근무활동 : 공익단체의 임	

197)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심사지침 (이하 “서울변회 지침”)도 서울변회 규정과 함께 서울변회가 허용하는 공익활동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함께 살펴본다.

분류	대한변협 규정	서울변회 규정	서울변회 지침
	(제2조 제1호)	원·직원·상근자로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실비를 받고 그 단체가 국가·사회를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활동 (제3조 제1항 제7호)	
공익적 단체를 위한 기부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제2조 제8호)		이 회가 주관하는 각종 후원금 및 인권관련기금 지원금, 재난구호 성금을 납부하는 활동 (제4조 제8호) 이 회가 실시하는 자선바자회에 도서 등 물품 기증 (제4조 제13호)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부조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로 회장이 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금 3만원 당 1시간의 공익활동으로 인정) (제5조의2 제1호) 이 회 상임이사회가 공익사건 수행단체로 지정한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 행위(금 3만 원 당 1시간의 공익활동으로 인정) (제5조의2 제3호)
변협/변회를 위한 활동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 (제2조 제2호)	변호사회 근무활동 : 변호사회의 임원·위원회 위원으로서 행하는 활동 및 업무수행 (제3조 제1항 제8호)	이 회가 정하는 사회적 이슈 및 각종 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서 제시 (제4조 제7호) 총회 등 행사 참석, 회무관련 설문사항의 작성·제출 (제4조 제9호)
법률상담 등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법률상담 변호사로서의 활동 (제2조 제3호)	변호사회 공익활동에의 참여를 통한 활동 : 변호사회가 행하는 법률상담·법률부조·재난구호·사회복지지원 등 공익활동에 참여·종사·실행하거나 지원하는 활동 (제3조 제1항 제9호)	이 회의 법률원조사업회규칙 제2조 및 당직변호사운영규정에 정한 당직 변호사로서의 직무 (제4조 제1호) 이 회의 법률원조사업회규칙 제2조에 정한 무료법률상담 담당회원으로로서의 직무 (제4조 제3호) 사내변호사가 사내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 (제5조의2 제2호)
공익활동 프로그램 참여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에서의 활동 (제2조 제4호)	변호사회 공익활동에의 참여를 통한 활동 : 변호사회가 행하는 법률상담·법률부조·재난구호·사회복지지원 등 공익활동에 참여·종사·실행하거나 지원하는 활동 (제3조 제1항 제9호)	이 회의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규정에 정한 중소기업 고문 변호사로서의 직무 (제4조 제2호) 이 회 인권위원회가 지정하여 수행하는 이주여성지원소송, 북한이탈주민 지원소송, 난민지원소송, 다

분류	대한변협 규정	서울변회 규정	서울변회 지침
			문화가정지원소송 등 소송수행 직무 (제4조 제10호)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변호사가 네티즌의 인터넷 법률질의에 대한 답변을 작성·게시하는 활동 (제4조 제14호) 변호사명예교사운영규정에 정한 변호사명예교사로서의 직무 (제4조 제15호) 법원으로부터 선임안내 의뢰를 받은 소송구조변호사의 소송수행 직무 (제4조 제17호) 등
국선변호인 활동 등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대리인으로서의 활동 (제2조 제5호)	법령에 의한 국선변호 및 국선대리 (제3조 제1항 제2호)	법원으로부터 선임안내 의뢰를 받은 소송구조변호사의 소송수행 직무 (제4조 제17호)
정부를 위한 활동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활동 (다만,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를 제외) (제2조 제6호)	공공기관 등이 위촉한 업무의 수행을 통한 공익활동 : 공공기관·공익단체·변호사회로부터 위촉받은 업무의 수행 (제3조 제1항 제10호)	법원의 조정위원 및 개인파산관재인으로서의 직무 / 변호사시험위원 등 국가시험 위원으로서의 직무 /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직무 / 언론중재위원으로서의 직무 / 상사중재위원으로서의 직무 / 행정심판위원으로서의 직무 /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강사로서의 직무 /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서의 직무 / 보호관찰위원으로서의 직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담위원, 심의위원, 과세전적부심위원, 교통계획위원, 도시계획위원, 분쟁조정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으로서의 직무 / 기타 공공기관 및 공익단체 등으로부터 위촉·지정·선임된 직무 (제5조 각 호)
기타 공익적 성격을 가진 활동	개인에 대한 무료변호 등 법률서비스 제공 행위 또는 입법 연구 등 법률지원활동 가운데 공익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제2조 제7호)	개인을 위한 법률부조 활동 :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개인의 권리·자유 의 실현을 위하여 행하는 법률부조 (제3조 제1항 제1호)	

3.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 제도 운영 현황 및 평가

상기 변협규정의 규정을 통해 구체화된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 제도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¹⁹⁸⁾ 이를 (1) 제도 도입 취지의 형해화에 대한 비판과 (2) 공익활동의 의무 부여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제도 도입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살펴본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다시 (1) 변협규정에 대한 비판과, (2) 제도의 실행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단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규정이 지나치게 “공익활동”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네이버 지식iN 답변 활동은 공익활동보다는 변호사 개인의 영업 및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며, 사기업(네이버)의 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볼 여지가 크다. 또한 변협/변회의 규정에 따르면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대상에 대한 상담도 무료로 진행하면 공익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변회가 인정하는 중소기업 고문 활동, 사내변호사의 동료 직원에게 하는 무료 상담 등이 그러하다. 변협/변회의 회무 종사나 변협/변회의 설문조사나 활동 참여 등도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는데, 그 공익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¹⁹⁹⁾ 기부활동을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면 결국 ‘변호사의 활동’이 아닌 ‘금전적 지원행위’이므로, 변호사법이 변호사에게 공익활동에 “종사”할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를 몰각한다는 비판도 있다.²⁰⁰⁾ 공익활동 전담 변호사 제도도 결과적으로 법무법인의 대다수 구성원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완화시켜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²⁰¹⁾

또한 제도 도입 시점부터 유지 중인 공익활동 보고 체계는 유명무실해졌다고 보인다. 비록 변호사법과 변협 규정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 2016년 서울변회는 회원의 공익활동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를 내리려고 했으나, 이는 2018년 법원 결정에 의해 취소되었다.²⁰²⁾ 이후 서울변회는 회원의 공익활동 보고의무

198) 이정원, 변호사법 제27조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리걸클리닉교육 활성화를 위한 논의, 법학연구, 제61권 제4호, 2020, 이태영,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인권과정의, 제518호, 2023, 나지원,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47권 제3호, 2023, Takgon Lee and JaeWon Kim, *Public Interest Lawyering in South Korea: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in Helena Whalen-Bridge (ed.), *The Role of Lawyers in Access to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등 참조.

199) 예를 들어 변협이 주도하는 변호사 수 축소 촉구 시위 참여가 공익활동 시간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머니투데이, “‘변호사 줄이자’ 시위 참여가 공익 활동?...변호사들도 갑론을박”, 2025. 4. 13., <https://www.mt.co.kr/society/2025/04/13/2025041315311483154> (2026. 5. 22. 접속)

200) Takgon Lee and JaeWon Kim, 앞의 글, 195면.

201) 이정원, 앞의 글, 10-11면.

이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위반사실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⁰³⁾

지난 20여년 간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 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한 변화 중 하나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근거 중 하나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서로 다른 전문 법률 분야에 특화하여 법학교육 과정을 다양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여러 법학전문대학원이 공익 및 인권법(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영남대학교)과 소수자 인권법(한양대학교)을 특성화 분야로 선택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과거 사법시험 제도에서 벗어남으로써 공익법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법조계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²⁰⁴⁾ 그러나 현재 50%로 고착된 변호사시험 합격률 앞에, 시험과 무관한 과목이나 활동은 학생들의 관심 대상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다고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중 공익법에 대한 관심을 함양하는 수업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프로보노나 공익법 관련 수업 및 비교과 활동은 소수의 개별 교수들의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⁰⁵⁾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로의 전환은 공익활동 의무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용되기도 했다. 2018년, 일부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제27조가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며, 변호사들이 더 이상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수를 받지 않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하에서는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정당화할 근거가 약해졌다고 주장했다.²⁰⁶⁾

변협 선거 공약에서도 확인되듯이 공익활동 의무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이나, 변협과 변회는 공익활동 의무 제도에 대한 특별한 제약을 실제로 가하지는 않고 있다(코로나19 기간 중 서울변회가 공익활동 의무를 면제하였으나, 팬데믹 종료 후에는 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법소원 등 과거와 같이 변호사들이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일종의 ‘무기력한 균형’ 상태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변협은 회원들이 공익활동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광범위한 활동을 공익활동으로 인정해 주어 낮은 수준의 규정 준수를 조장하고 있다. 반면 변호사들은 이러한 의무에 불만을 품으면서도, 그것이 부과하는 부담이 미미하기 때문에

202)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84121 결정. 대법원 2018. 8. 17. 선고 2018두43750 결정에 의해 확정.

203) Takgon Lee and JaeWon Kim, 앞의 글, 196면.

204) 이준웅 외 2, 앞의 글, 376면.

205) 김지희 외 4,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공익법률활동 참여 과정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공익과 인권, 제24호, 2024, 427, 442-443, 454면.

206) 현재 2018. 12. 18.자 2018헌마1139 결정.

적극적으로 의무 폐지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력은 분명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설립을 시작으로 전업 ‘공익변호사’라는 직군이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등장하였다. 이어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재단법인 동천 설립을 시작으로 대형 로펌들도 공익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직접 채용하거나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 기준은 그 연성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형 로펌의 공익활동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²⁰⁷⁾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제시한 연간 공익활동 의무 시간은 대형 로펌들에게 일종의 ‘달성해야 할 최소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²⁰⁸⁾ ‘공익활동 전담 변호사 제도’는 〈개별 변호사〉의 공익활동 수행 독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성과〉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이 제도는 일부 대형 로펌이 공익전담변호사를 채용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은 기존의 공익변호사들과 유사한 활동방식으로 로펌의 공익활동의 전문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²⁰⁹⁾

III

변호사의 공익활동 현황 및 영향

1.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범위

대한변협과 지방변회가 인정하는 공익활동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공익활동 의무의 취지를 몰각시킨다는 비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개별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와 다른 틀이 유용할 것이다. 변호사 직역과 그 업무의 공익적 성격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보았으나, 여기에서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변협과 변회의 규정으로 정해진 넓은 규범적 외연이 아니라, 실제로 변호사의 공익활동으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인식되는 활동으로부터 도출되는 실천적 외연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7) Takgon Lee and JaeWon Kim, 앞의 글, 197-198면.

208) 위의 글.

209) 위의 글.

특히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가 제도화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거나 확장된 직군과 업무가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실천적 외연을 사후적으로 정의내리고 확장해 나간 것에 주목한다. 이를테면 제도 도입 시점인 2000년 전후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는 무료변론, 국선변호, 봉사활동 등의 키워드와 단편적으로 연계되어 거론되었다.²¹⁰⁾ 그러나 현재에는 더 다양한 업무영역이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일부로 인식된다. 여기에는 공익변호사의 공익법운동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비전담 국선변호인, 마을변호사 등 새롭게 제도화된 변호사 업무가 포함된다. 제도 도입의 주체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일부로 보거나, 이와 연계하여 언론에 알리기도 하였다.²¹¹⁾ 요컨대, 제도 도입의 주체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업무영역을 변호사의 공익활동으로 호명하고 그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익활동 범주의 구체화와 확대를 추동하였고, 이것이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렇게 확장된 범위도 변형과 변화의 규정보다는 여전히 좁은데, 전자의 실천적 외연이 후자의 규범적 외연과 다른 동력을 가지고 확장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런 전제 하에서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1) 법률서비스가 무상이거나 현저히 저렴한 액수의 보수인가
- (2) 그렇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법률적인 내용인가
- (3) 법률서비스의 내용이 공익적인가.²¹²⁾

210) 예를 들어 한겨레, “변협 변호사법 수정안 내놔”, 1999. 3. 23.: “변협은 수정안에 변호사의 국선변론이나 법률구조 등 공익활동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일정한 공익기금을 납부하도록 명문화했다.” 중앙일보, “변호사 공익활동 시작도 못하고 좌초 위기”, 2000. 2. 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3882145> (2026. 5. 23. 접속);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중 ▶시민 법률상담 ▶중소기업 법률상담 ▶당직변호 ▶외국인 노동자 상담 등 무료 변론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변호사 2백27명. 서울 등록 변호사 2천4백87명의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 ‘무료변론 등 직접 봉사활동을 하는 방법 말고 성금기부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211) 예를 들어 법원이 법관 임용 시 국선전담변호사 활동을 공익활동 자료로 참고키로 했다는 보도: 서울신문, “국선전담 변호사 전국 확대”, 2005. 11. 2.,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05/11/02/20051102008011> (2026. 5. 23. 접속). 법률홍닥터 제도를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연계한 언론 보도: 세계일보, “[이슈&현장] 지역주민에 맞춤형 법률서비스 찾아가는 ‘법률홍닥터’ 큰 인기”, 2013. 3. 5. <https://www.segye.com/newsView/20130304004113> (2026. 5. 23. 접속).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1주년을 기념하여 법조인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당부한 법무부 장관 연설: 법무부 장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3. 15.), <https://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26976> (2026. 5. 23. 접속).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가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한 법무부: 법무부, 보도자료: “당신 곁에 ‘마을변호사’가 있습니다”, 2022. 2. 1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9125> (2026. 5. 23. 접속).

212) 유사한 취지로 차병직, 변호사 공익 활동 의무의 근거와 범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3권 제1호 (2008. 9.), 195-196면, 황승흠, 앞의 글, 12-13면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상성은 서비스 수혜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거나, 그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익변호사는 소속된 기관으로부터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월급을 받지만, 그 근로인 법률서비스의 수혜자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는 않으므로, 공익변호사의 활동은 이 정의를 충족한다. (2) 과거와 다르게 변호사의 업무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므로,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해당하는 법률적 서비스의 범위는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법률적 관련성을 가지고 변호사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활동이면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법률서비스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즉 특정인의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회적 약자 또는 취약계층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공익성의 징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피고인 국선변호사의 업무는 직접적으로 제도개선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약자 또는 취약계층을 조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성의 기준을 충족한다.

이렇게 정의내리면, 변협과 변회 규정 상 인정되더라도 변호사의 공익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는 활동들이 식별된다. 예를 들어 서울변회 규정에 따라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는 사내변호사의 회사 동료에 대한 법률 상담 등은 (1) 무상성과 (2) 법률서비스의 성격은 인정되나, (3) 공익성이 불분명하므로 공익활동으로 보기 힘들다. 변협 또는 변회의 회무 중사나 활동 참여도 그 회무와 활동 성격에 따라 (3) 공익성이 인정되기 힘들 수 있고, 변호사의 전문성과 무관한 활동이라면 (2) 법률서비스의 성격도 인정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범위 설정이 사회적 인식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법조계 내의 인식에도 부합한다고 본다.²¹³⁾

2. 개별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양태

위와 같은 판단 기준 아래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공익전업변호사들의 공익활동과 대형로펌의 프로보노 활동은 보고서의 다른 단원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기에 여기서는 살펴보지 않는다. 연구자들은 개별 변호사들이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수행하는 공익활동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공익활동을 어떠한 지위에서 하는지, 또는 어떠한 단체의 중개 또는 소개를 거쳐 하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실제로 어떻게 개별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수행하게 되는지 (사건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인터뷰이들의 답변

213) 단순한 예로, 대한변협의 회무를 가장 성실히 수행한 변호사에게 변호사 공익대상을 수여하는 변협의 모습을 상상하기는 힘들 것이다.

과 연구자들의 실무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개별 변호사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 지점 (소송구조 확대, 중개기관 활성화 등)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표 6-3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분류

유형	예시
1.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 활동	대한변협, 지방변호사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2. 비전담 국선, 공공 변호 활동	비전담 피고인 국선변호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가정법원 국선보조인
3. 임의 변호사단체를 통한 활동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변호사회 등
4. 개별 공익단체들과 연계한 활동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의 요청에 따른 활동(자문, 소송 수행 등)
5.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아 하는 활동	지자체, 관공서가 운영하는 위원회 참여 (자문기구, 심의기구, 행정심판기구 등), 지자체 운영 상담 기구에서의 법률상담 활동
6. 기타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활용 (공익법단체 두루의 '온마을로이여', 재단법인 동천의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 'NPO 법률지원단' 등)

(1)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 활동

변호사는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변협과 지방변호사회는 다양한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운영중인데, 이 중에서 인권이사, 인권위원회 위원 등은 특히 공익 인권과 관련이 깊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로부터 공유받은 위원회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²¹⁴⁾

표 6-4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공익활동 관련 위원회

단체	위원회 명단
대한변협	• 인권위원회 (노동인권소위원회, 의료인권소위원회, 디지털인권소위원회, 인권보고서 간행소위원회, 장애 인권소위원회, 사법인권소위원회) • 국제인권특별위원회 (기후환경과인권소위원회, 인권분야 외부기관 협력 소위원회) •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난민·외국인 법제도 연구 소위원회) •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법률구조소위원회, 탈북청소년학교지원소위원회, 법제도개선지원소위원회) •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북한주민인권소위원회, 전시납북법조인 연구소위원회) •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재난안전법검토소위원회, 12·29 여객기참사 TF)

214) 대한변협 및 서울변회 내 “설치·운영 중인 무료 또는 저가의 법률 지원, 인권 옹호 활동과 연관된 위원회·특별위원회·소위원회·센터 등”의 운영 현황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회신을 각 2026. 2. 23.(대한변협), 2026. 2. 20. (서울변회) 수신하여 정리한 것이다. 괄호 안에 나열된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다. 대한변협이 운영중인 법률지원단(난민법률지원단, 생명존중재난안전법률지원변호사단, 장애인법률지원단,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등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은 회신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체	위원회 명단
	•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 프로보노지원센터운영위원회
서울 변회	• 인권위원회 (노동인권소위원회, 사법인권소위원회, 아동청소년노인인권소위원회, 인권침해대응소위원회, 장애인권소위원회) • 프로보노지원센터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 국선변호특별위원회 •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 성희롱피해구제특별위원회 •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TF

(2) 비전담 국선, 공공 변호 활동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가정법원의 소년보호 사건 및 가정보호 사건, 아동학대 사건의 국선보조인 활동,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등 비전담 국선, 공공 변호활동이 있다. 개별 변호사들은 비전담으로 위 활동을 수행하며 공익활동을 하기도 한다.

1) 피고인 국선변호사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헌법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3조에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① 피고인이 구속된 때, ②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③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④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⑤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⑥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인인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2항, 제3항이 있어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임의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조력권은 빈곤 등의 사유로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국민이 돈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형사상의 방어권 행사에 대한 무지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이러한 형사 국선변호인 제도는 1954. 9. 23. 형사소송법 제정시부터 지금까지 운용되어 오고 있다. 국선변호인은 전담과 비전담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은 비전담 국선변호인이다. 다수의 개별 변호사들은 비전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선변호인 활동은 대표적인 개업변호사의 공익활동으로 평가된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의하면 전국 비전담 피고인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는 변호사의 숫자는 2025년 기준 7,727명이고, 최근 5년간 그 숫자는 7천명 내외로 꾸준히 유지되었다. 참고로 2004년 도입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경우 2025년 기준 전국에서 250명이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중이다.²¹⁵⁾

【표 6-5】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비전담 국선변호인 인원 현황

법원	2021	2022	2023	2024	2025
대법원	2,834	2,706	2,424	2381	3047
서울고등	100	100	100	100	100
대전고등	56	43	54	75	83
대구고등	15	15	18	21	25
부산고등	20	20	31	34	34
광주고등	11	12	13	13	12
수원고등	17	21	29	48	54
서울중앙지법	636	613	601	635	636
서울동부지법	118	118	118	118	110
서울남부지법	613	524	500	492	510
서울북부지법	485	404	398	408	415
서울서부지법	103	103	95	88	87
의정부지방법원	98	87	72	75	78
고양지원	64	46	39	44	53
남양주지원	-	50	69	69	66
인천지방법원	196	178	183	198	195

215) 최익구, “국선변호인 실무상 고충 사례 분석”, 전국 국선변호인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26. 2. 11.), 40면.

법원	2021	2022	2023	2024	2025
부천지원	51	38	43	41	43
수원지방법원	165	157	161	171	165
성남지원	23	24	20	19	28
여주지원	30	20	20	22	21
평택지원	18	32	16	21	20
안산지원	55	25	27	28	37
안양지원	16	13	12	7	9
춘천지방법원	35	31	31	33	36
강릉지원	17	14	15	17	15
원주지원	20	17	20	21	21
속초지원	8	8	8	8	8
영월지원	5	5	5	5	5
대전지방법원	118	119	131	151	149
홍성지원	15	18	19	20	20
공주지원	7	7	6	6	6
논산지원	8	8	8	7	5
서산지원	13	12	14	16	13
천안지원	38	31	31	35	49
청주지방법원	47	49	49	60	60
충주지원	22	21	21	21	20
제천지원	8	7	7	7	7
영동지원	8	7	6	7	7
대구지방법원	138	152	144	157	171
대구서부지원	43	50	55	62	65
안동지원	12	15	15	14	11
경주지원	9	9	9	9	9
포항지원	21	20	23	25	25
김천지원	9	7	11	11	12
상주지원	9	9	9	9	9
의성지원	4	4	2	3	3
영덕지원	6	4	4	4	2
부산지방법원	282	279	281	307	282
부산동부지원	107	110	126	149	144
부산서부지원	82	95	95	156	102
울산지방법원	95	87	89	98	94
창원지방법원	113	106	116	106	94
마산지원	7	9	10	10	11

법원	2021	2022	2023	2024	2025
진주지원	21	13	16	14	16
통영지원	13	8	12	12	14
밀양지원	7	7	8	5	9
거창지원	7	8	8	8	9
광주지방법원	164	151	149	159	153
목포지원	18	14	15	10	12
장흥지원	4	4	4	4	4
순천지원	31	31	27	31	24
해남지원	7	5	6	5	2
전주지방법원	101	98	104	105	115
군산지원	32	36	26	26	23
정읍지원	9	8	8	8	8
남원지원	5	3	3	3	3
제주지방법원	46	53	54	43	52
합계	7,495	7,098	6,843	7,075	7,727

출처: 2026. 1. 21.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청구 회신

비전담 피고인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형사공판사건의 숫자는 아래와 같다. 선정 후 취소된 사건이나, 선정 취소 후 재선정된 사건 등 일부 사건 숫자의 중복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개별변호사들이 피고인 국선변호사로서 수행하는 사건의 숫자를 가늠하기에 참고가 되는 통계라고 판단된다. 개별 변호사들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수행하는 사건 수가 연간 대략 1만 건 정도임을 알 수 있다.

■ 표 6-6 ■ 최근 5년간 비전담 변호인 선정 건수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형사공판사건	75,460	78,331	90,948	103,790	94,785

출처: 2026. 1. 21.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청구 회신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형식적 변호에 그치는 등 그 변호의 질에 대한 지적은 이전부터 있어왔고, 실제 사회적으로도 국선변호사는 충실한 변론을 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편견도 상당한 편이다. 2025년 상반기 피고인 설문조사에서 구속 사건 기준 변호 활동 중 ‘큰 도움’ 응답이 국선전담 72%, 일반 비전담 국선 60.5%로 국선전담변호사가 일반비전담국선변호사보다 높게 나타난다.²¹⁶⁾

216) 박인례, “소비자(시민) 관점의 제도개선 제안”, 전국 국선변호인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26. 2. 11), 100면.

충실하지 않은 변론은 결국 국선변호인에 대한 처우와 관계될 수밖에 없는데, 현행 국선변호사 제도는 낮은 보수 및 그마저도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인의 경우 2008년 이후 보수가 동결된 상황이며, 비전담 국선변호인의 경우 2026. 1. 기준 미지급 보수 누적액이 225억 원에 달한다.²¹⁷⁾

비전담 국선변호사의 경우 보수가 지속적으로 증액되어 왔지만(2024년 기준건당 55만 원), 사건 수가 늘어나고 난이도가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조력이 필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출석 확보, 입원한 피고인 호송, 자녀 위탁 및 보호 등 절차 관련 여러 제반 사무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열람등사 등 과정에서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합의나 공탁 등에서 과도한 감정노동을 수행하기도 하는 등 여러 고충들이 제기된다.²¹⁸⁾ 이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국선변호인의 업무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²¹⁹⁾

2) 소년보호, 가정보호 사건의 국선보조인

소년보호, 가정보호 사건 등에서는 소년 등 당사자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정한 경우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한다.

소년법상 국선보조인제도는 2007년 12월 도입되었는데, 소년법 제17조의2는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절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제1항),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보조인의 지위는 일종의 ‘변호인적 역할’과 법원 소년부에 협력하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가진다고 이해된다.²²⁰⁾

가정폭력 사건의 행위자에 대해서도 국선보조인이 선정되기도 한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28조 제4항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사를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998년 위 법률 제정시부터 도입되었다. 2014년

217) 김도윤, “국선변호인 처우 현황과 개선방안”, 전국 국선변호인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26. 2. 11.), 14면.

218) 위의 글.

219) 위의 글.

220) 한영선 외 2, 소년법 강의, 솔과학, 2020, 211면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보호사건에서도 국선보조인 제도를 두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가정폭력처벌법을 준용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 이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국선보조인의 선임사유는 기본적으로 가정보호사건에서의 국선보조인 선임사유와 동일하다. 즉 법원은,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구속된 때, ② 미성년자인 때, ③ 70세 이상인 때, ④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⑤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⑥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인 때, 직권으로 변호사를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8조 제4항).

가정보호사건과 아동보호사건에서의 국선보조인의 역할은 행위자를 위한 법적 조력으로 이해된다.²²¹⁾ 최근 5년간 소년보호 및 가정보호 사건에서 국선보조인이 선정되어 수행한 사건의 숫자는 아래와 같다(다만, 국선보조인의 자격은 변호사에 국한되지 않고 상담소 상담원 등도 가능한바, 아래 통계는 변호사 여부 구분 없이 국선보조인이 수행한 사건 수를 의미한다).

표 6-7 최근 5년간 국선보조인이 선정되어 수행한 사건 숫자

구분	국선보조인 선임건수	
	소년보호(무)	가정보호(버)
2021년	3,489	71
2022년	3,815	84
2023년	4,680	49
2024년	5,105	48
2025년	5,117	50

출처: 사법연감(2026. 1. 20. 기준)

3)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조력하는 국선변호사 (법무부 관할)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에 따라 범죄 피해자의 법률 조력을 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 충분한 조력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서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6항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근거 조항인데, 이 조항에 따르면 검사는 피해자에게

221) 김혁, 현행 국선보조인제도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35권 제1호, 2023, 150면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서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고 하하여 검사가 청소년성보호법상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에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하여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에서 국선변호사 선정의 근거를 두고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2012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으며, 2013년 6월에는 성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2014년에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2021년 6월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특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범죄 피해자로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2023년 7월부터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도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5년 12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2026년 6월 24일부터는 위 법상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도 국선변호사가 지원된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는 법원이 아닌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전담과 비전담으로 나뉜다. 개별변호사들의 경우 당연히 비전담으로 활동한다. 최근 5년간 비전담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숫자는 아래와 같다.

■ 표 6-8 ■ 비전담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160	162	150	145	147
부산	58	103	81	83	81
대구	18	30	22	20	21
인천	24	26	34	26	26
광주	22	17	26	28	24
대전	16	12	17	16	12
울산	10	14	9	10	15
경기	111	106	88	103	108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강원	17	12	16	14	12
충북	18	13	13	11	10
충남	19	15	23	24	24
전북	22	22	19	27	26
전남	10	10	12	16	13
경북	27	18	21	22	21
경남	32	31	27	24	24
제주	12	9	6	5	6
계	576	600	564	574	570

출처: 2026. 1. 20.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회신

최근 5년간 비전담 피해자국선변호사들이 연간 수행한 사건 수는 아래와 같다. 대략 연간 3만 건 전후의 사건을 수행한다.

■ 표 6-9 ■ 비전담 피해자국선변호사 연도별 수행 사건 수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11.
비전담	34,046	33,000	28,870	28,040	23,966

출처: 2026. 1. 20.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회신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 2차 가해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다.²²²⁾ 다만 이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열악한 처우에서 기인한다는 평가가 있다. 사건별로 정액이 보장되어 있고, 추가 업무수행의 경우 증액하는 피고인 국선변호인 제도와 달리,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상담, 조사 동석, 법원 기일 출석, 서면 제출 등 모든 업무를 일일이 증빙하여 보수청구서를 상세히 제출해야만 보수가 지급되는 구조이며, 그렇게 지급되는 기본 보수액도 40만 원에 불과하다(수사 단계에서 30분 이상 대면 상담 1회, 서면 작성 1회, 조사참여 1회를 수행하면 기본 보수로 40만 원이 지급된다²²³⁾).

인터뷰이 중에 C 변호사의 경우 1년 정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는데, 보수 청구가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유발하여 지속하지 않았고, 보수 청구조차 결국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22) 한겨레, “‘피해자가 벼슬인 줄 알아’…의뢰인 2번 울리는 불성실 국선변호사’, 2023. 4. 1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335.html (2026. 5. 22. 접속)

223) 법무부, 피해자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2025. 3. 21.)

이 외에도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는 단순 법률 조력의 차원을 넘어 외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피해자와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이해부터 피해자의 상태, 상황에 대한 분석까지 전문적으로 해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며, 피해자의 억울함과 원망, 분노를 받아안은 등으로 과도한 감정노동을 수행할 때도 많다.²²⁴⁾

앞선 통계에 의하면, 2024년 기준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연간 수행 사건 평균 숫자는 48건에 이른다. 그럼에도 현저히 낮은 보수와 보수청구절차의 복잡성에 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강도가 상당한 편이라, 사실상 변호사 개인의 사명감에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²²⁵⁾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자가 없는 등 구인난에 시달리기도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부적합한 사람이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위촉되어 실제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다.²²⁶⁾

4)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국방부 관할)

2020년 6월 신설된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는 군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경우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체 숫자는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지원 건수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다고 밝혔다. 다른 국선변호 제도에 비해 건수는 적은 편이다.

【표 6-10】 최근 5년간 군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360건	323건	450건	297건	190건

출처: 2026. 1. 27. 국방부 정보공개청구 회신

224) 한겨레21, ‘피해자가 불신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2021. 8. 25.,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50823.html> (2026. 5. 22. 접속)

225) 오마이뉴스, ‘연락 잘 안 되는 성폭력 피해자측 변호사... 어떻게 된 일이라면’, 2025. 5. 14., <https://omn.kr/2dh17> (2026. 5. 22. 접속)

226) 법률신문, ‘[단독] 월급 밀리고, 사건은 많고 열악한 국선전담변호사 처우’, 2025. 1. 15.,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15> (2026. 5. 22. 접속)

(3) 임의 변호사단체를 통한 활동

공익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임의 변호사 단체를 통해 공익활동을 하는 방법도 있다.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 임의단체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대표적이다. 민변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9월 노동자 대투쟁이 일으킨 민주화의 열망을 배경으로 1988년 5월 28일 51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창립한 ‘진보적 법률가단체’”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으며, 1,200명 정도의 회원들이 활동중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등 구체적인 공익 분야를 특정한 15개의 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 소송 기획 및 수행, 입법 운동 공익 활동을 이어가는 변호사 단체이다. 연구자들이 인터뷰한 인터뷰이들 대부분이 민변에 소속되어 있으며, 다수의 인터뷰이들은 민변에서 진행하는 공익사건을 수행하는 등으로 공익활동을 하고 있었다(E, C, F, D, A 변호사).

민변 외에도 여성 정책 및 제도의 개발과 건의, 여성변호사의 권익 옹호와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동물권 옹호 운동을 하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임의 변호사 단체들이 있다.

(4) 인권단체, 시민단체 등 개별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활동

연구진이 인터뷰한 인터뷰이들 모두 개별 인권단체나 시민단체와 연계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들의 가장 주된 공익활동 방식이었다. B, C, G 변호사의 경우 본래 인권 단체 또는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한 이력이 있는데, 이에 이후 해당 단체에서 나온 뒤에도 꾸준히 위 단체 소속 당시 함께 협업했던 단체들로부터 법률지원 요청을 받고 있다.

E 변호사의 경우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민주노총법률원’에서 7~8년 정도 근무하다가 개업한 상태인데, 당시 인연을 맺은 노동조합에서 요청하는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G 변호사의 경우,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에서 펠로우 변호사로 1년 정도 활동하다가, 고향인 경북으로 내려가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에서 펠로우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연을 맺은 단체들로부터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의뢰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서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의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평등가족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 대리, 민사 소송 등 법률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주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대리를 하는 변호사들은 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데, 위 사업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지 않는 이상 일반 개별 변호사가 신청할 수는 없고, 성폭력피해자 지원 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 활동이 가능한 구조다.

연구진이 인터뷰한 인터뷰이들 역시 다수가 성폭력피해자 지원 단체와 함께 위 사업을 이용하여 활동을 하고 있었다(E, D, F 변호사). 성평등가족부에 의하면, 위 사업으로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한 사건 수는 아래와 같다.

【표 6-11】 최근 5년간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기금 집행 사건 숫자

위탁기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집행 건수				
	2020	2021	2022	2023	2024
대한법률구조공단	166	152	161	101	154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146	150	176	136	110
한국성폭력위기센터	491	577	647	595	394
한국여성변호사회	미 위탁		29		

출처: 2026. 1. 19.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청구 회신

(5)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비상근 위원

변호사가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할 수도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심사지침에 의하면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법원의 조정위원, 파산관재인, 변호사시험위원 등 국가시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 위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위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위원 활동 등을 나열하고 있다. D 변호사는 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보공개심의위원, 아동학대사례결정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등 다양한 관공서 위촉직이 있으며, 해당 위촉직을 전부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통계적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많은 변호사들이 다양한 직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4년 12월부터 ‘공익 변호사’ 제도로 운영해오고 있는데, 크게 1) 관내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마을 변호사’, 2)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법률상담 요청 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사이버 법률상담’, 3) 그밖에 서울시 각종 위원회 활동 및 청문 주재 등 활동으로 구분하여 운용 중이다. 서울시에 공익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의 숫자와 활동 유형은 아래와 같다.

【표 6-12】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익변호사 위촉 통계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1.~3.
신규·재위촉	258	687	181	941	284
남	181	499	126	641	144
여	77	188	55	300	140
마을변호사	838	821	783	945	943
사이버상담	83	54	49	115	42
위원회 및 위원활동	99	107	111	79	78
청문주재	14	38	33	28	4

출처: 2026. 3. 16.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회신

(6) 기타

이 외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등 민간이 운영하는 공익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재단법인 동천의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 ‘NPO 법률지원단’, 공익법단체 두루의 ‘온 마을 Law’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재단법인 동천(이하 “동천”)은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설립한 단체로,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을 활성화하고 공익단체, 활동가 및 예비공익변호사를 지원, 양성하는 한편, 법률구조, 제도 개선, 입법지원 및 공익법 연구 등 사회적약자, 소수자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공익법재단”이다.²²⁷⁾ 동천은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펠로우 변호사 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개별 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불확실성과 제도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NPO법률지원단’과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은 변호사들을 사회적경제조직에 1:1로 매칭해주고, 각 조직의 정관, 노무, 개인정보, 저작권, 투자계약 등 조직 운영과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고, ‘NPO법률지원단’은 NPO(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와 변호사를 1:1로 매칭해주어 변호사가 NPO에 필요한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고, 동천에서 변호사

227) 재단법인 동천, “비전&미션”, www.bkl.or.kr (2026. 5. 22. 접속)

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공익법단체 두루(이하 “두루”)는 법무법인 지평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입법운동, 기획소송, 법과 정책 개선 활동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한다. 두루가 운영하는 ‘온 마을 Law’ 사업은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으로,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온 마을 Lawyer’ 제도, 공익소송, 제도개선 활동 등 아동·청소년 인권옹호를 위한 공익활동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온 마을 Law 프로젝트’를 운용중이다.

연구진이 인터뷰한 인터뷰이들 중에도 두루의 온 마을 Law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C, G, F 변호사).

IV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공익활동 활성화의 목표: 사회적 변화의 추동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독려하여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변호사 공익활동의 목표와 결부된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매년 20시간 또는 30시간씩 공익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윤리적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공익활동 의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가? 아니면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추동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변호사라는 직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변호사에게 공익활동 종사 의무를 지우는 제도의 취지는 사회의 법률 사무를 독점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그 반대급부로 공익활동 의무를 부여하여 그들의 독점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 사법접근권의 확대를 꾀한다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²²⁸⁾

그렇다면 변호사 공익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공익활동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중요한 고려지점일 수밖에 없다.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이 변호사의 사명을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으로 정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요컨대, 개별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그 총합으로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표여야 한다.

오늘날의 사회적 갈등과 인권 침해 문제의 복잡성도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방향성 설정에 있

228) 차병직, 앞의 글, 188-190면.

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의 제도 변화는 필연적으로 복합적인 쟁점에 대한 대응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는 현재의 법률구조 제도나 조직에서 지원하는 단발적인 법률 자문이나 대리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A: [법률구조공단은] 제너럴리스트가 되지 스페셜리스트는 될 수 없는 구조예요. 보건소에서 암을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개별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조직적,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 외에 공익활동 독려를 위한 홍보나 이를 위한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 이를 전제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공익활동에 대한 긍정적 유인 강화

(1) 규범적 강제의 한계 및 긍정적 유인의 필요성

제도 설계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사회변화의 추동이라는 변호사 공익활동의 목표를 위한 동력은 개별 변호사의 공익활동에서 나오는데, 이를 강화하는 것은 규범적 강제보다 긍정적 유인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변호사들이 현행 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의 “낮은 수준”의 의무이기에 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의무가 강화되면 폐지의 요구가 다시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 공익활동 수행 및 보고 체계 하에서 강한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어차피 인정되는 공익활동의 범위는 매우 넓어 실질적인 공익활동이 아닌 경우도 많고, 보고된 공익활동 내역의 진위에 대한 심사도 불가능에 가깝다. 즉, 규제의 강화가 실행의 강화로 이어지기 힘든 구조이다. 설사 인정되는 공익활동의 범위를 새롭게 정립하고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절차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공익활동의 대상이 될 사건을 발굴하고 이를 개별 변호사에게 연결할 주체나 방법도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결국 공익활동의 활성화는 1)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대한 긍정적 유인을 개발하고, 2) 그러한 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사건의 발굴과 중개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인터뷰이들은 공통적으로 공익활동 의무의 법정화와 자신들의 공익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부인하였다. 공익활동은 자신들의 직업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답변한 변

호사들이 상당수였다.

- D: 다른 직렬과 차별된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벌라고 만들어진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B: 변호사라는 직업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기준을 확립하고 해석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익적 관점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그런 의무를 지는 것도 타당하다.

(2) 윤리적·공익적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강화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은 변호사법 제1조 제1항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를 말하며, 공익활동을 선택적 봉사가 아니라 변호사라는 직업에 내재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G, C, D, F 변호사). 변호사가 된 이유나 배경 자체가 공익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인터뷰이들도 많았다(C, F, G 변호사).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스스로 공익적 전문가로서 정체화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F: 저는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로스쿨에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제 목적에 부합했어요.
 C: 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사회에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자격증이 변호사라고 생각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된 이후 공익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체화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적 정체성은 전문직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강화되며, 그 사회화가 가장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기라고 보인다.²²⁹⁾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당시 추진했던 공익인권적 감수성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교육은 대부분 실종된 상태이다. 윤리적, 공익적 직업적 전문가의 정체성을 키우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과거의 사법시험 시대의 법학교육과의 대별점으로 제시되었던 임상법학(리걸클리닉) 수업은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시험 준비에 밀려 형해화되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²³⁰⁾ 실제로 대다수 인터뷰이들은 이미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전부터

229) William M. Sullivan 외 4, *Educating Lawyers: Preparation for the Profession of Law*,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2007.

230) 엄형국, 국내 임상법학교육 Case Study 및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토론, 2025 임상법학교육 국제컨퍼런

공익활동을 해야겠다는 지향이 뚜렷했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해 그러한 지향을 형성한 인터뷰이는 없었다. 공익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결론도 동일하다.²³¹⁾ 이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본연의 정체성 형성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선아 외 2(2025)는 임상법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학생 참여 유도, 소송수행의 지원, 교원의 확충과 협력 강화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²³²⁾ 학생 참여 유도와 소송수행의 지원을 위해 수업설계의 변화와 전임교원의 소송수행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소송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변화를 요청하며, 협력강화의 측면에서 지방변호사회, 공익인권 법률사무소 등과의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제안하였다. 공익인권법학회 등 학생 자체적인 공익적 진로 모색 활동의 동력이 대부분 소실되었고, 공익적 단체에서의 실무수습이 가장 유력한 공익활동과의 접점으로 남아 있는 만큼,²³³⁾ 교과과정 차원에서 공익적 진로를 모색하고 관련 활동을 접할 수 있는 리걸클리닉 수업의 활성화가 공익적 전문가의 정체성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현행 변호사시험 준비로 인한 제약은 분명하나, 리걸클리닉 수업을 통해 공익활동의 다양한 측면이 학생들에게 알려진다면,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교원 채용 구조상 공익적 실무를 주로 다룬 법조인의 교수 채용이 쉽지 않다면, 지도변호사 등 다양한 형태로 공익사건을 다룬 변호사들과 리걸클리닉 간의 접점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 공익활동에 대한 경제적 유인 증대

공익활동으로 분류되는 사건들의 일반적인 보수는 다른 법률사무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²³⁴⁾ 실제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가 낮으면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봉사나 홍보수단으로만 생각하여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²³⁵⁾ 공익 활동의 보수가 부여하는 노동시간에 대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변호사 보수의 시장가격의 변화, AI기술 발전에 따른 업무 효율성 등에 따른 변화도

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2025.12.15.), 45면. 이택건, 임상법학교육의 활성화 방안, 2026년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교육자 간담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26. 2. 23.), 41-42면.

231) 김지희 외 4, 앞의 글, 437-443면.

232) 박선아 외 2,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편방안 - 리걸클리닉과 실무수습 제도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5.

233) 이소아 외 5, 예비 법조인을 위한 공익적 법조 진로 실태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2021, 29-30면.

234) 헤럴드경제, “가난한 사람 돕는 소송구조 변호사, 18년째 ‘100만원’ 받고 일한다” (2025. 8. 25.),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61471> (2026. 5. 22. 접속)

235) 소송구조와 관련하여 위의 글, 박미정·이학구,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2, 221면 등 참조.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시점에서 변호사의 공익활동 기피가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²³⁶⁾ 이에 대한 일면적인 답은 경제적인 유인의 증대일 것이다. A 변호사는 현행 소송구조 제도가 변호사 수입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100~150만 원 수준인데, 지나치게 소액이며, 300~5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C 변호사는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는 요건이 엄격해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소송구조 제도나 국선대리인 제도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증대를 꾀하는 정책 개선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²³⁷⁾ 이를 수행하는 변호사 보수의 인상은 쉽지 않다.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는 심급당 1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2002년 도입 당시 70만 원에서 2007년 10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사실상 동결되어 있다. 2019년부터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최대 20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게 되었지만, 15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변호사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역시 2006년 이후 월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수준에서 동결되어,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보수가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일반 국선변호료 미지급액은 매년 커지고 있다.²³⁸⁾ 국가 기관 외의 공익활동 재정지원 활성화가 해결책 중의 하나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C 변호사는 변협 법률구조재단의 기금의 규모가 작아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같은 제3의 기관에서 소송구조 기금을 조성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 소송구조 재원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4) 공익활동에 대한 간접적 유인 증대

다만 이를 단순한 금전적 이득의 문제로 치환하기에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다. 절대적인 보수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소송 외적인 업무가 과도한 장벽으로 작용하여, 일반 변호사로서는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H: 진짜로 금액이 적어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언어라든지 통역이나, 번역이나, 상담 소요가 있으니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 내가 봉사해보지라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올리는데보다는 소송의 장벽을 낮추는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236) 헤럴드경제, 위의 글.

237) 예를 들어 법무부, “보도자료 - 2015. 4. 10. 의사표현이 어렵고 변호사 비용을 못대는 고령자·장애인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도입 -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015. 4. 10.).

238) 법률신문, “국선변호 예산 152억 증가 … 200억대 미지급 해소 기대”, 2025. 12. 10.,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83> (2026. 5. 22. 접속)

당연히 예산 상의 제약으로 인해 공익활동에 대한 보수가 일반 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되기는 힘들 것이다. 역으로, 공익활동의 보수가 일반 사건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공익활동을 기피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이유로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동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주요한 비경제적 유인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

H: 보람이 없어서 안하는 것도 있어요. 공익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여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다 지면 [...] 만족은 없고, 품은 많이 들고 [...] 그러니 안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원래 할 사람은 15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한다. 300만원으로 올 사람은 있겠지만.. 돈과 무관하게 열의를 가지고 할 사람들은 한다고 봐요.

B: 솔직히 말해, 공익활동의 동기 중 공명심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 공공기관 등으로 커리어를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지위를 갖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공익적) 변호사 커리어가 유용할 수도 있어요. [...] 공익활동 경력이 영업력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법리에 뛰어나고, 악독하게 승소하는 사람이길 원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내가 불의한 일을 겪었다는 걸 이해해주고, 정의감으로 싸워주는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한 진술은 공익활동의 동기가 순수한 이타심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성공적인 사건처리에 따른 성취감 뿐만 아니라 커리어·평판 등 변호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간접적 효용과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개별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총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변호사 개인의 이익과 공익적 결과를 정합적으로 연결하는 제도 설계가 더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와 기존 논의에 비추어, 주요한 간접적 유인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커리어 발전이다. 공익소송이나 특정 취약계층 분야의 활동은 일반 실무와는 다른 전문성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은 공공기관 등 공적인 경로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평판 상의 이점이다. B변호사의 진술처럼 공익활동 경력은 변호사의 역량뿐 아니라 그 가치지향과 신뢰성을 동시에 전달하는 신호로 작동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영업적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셋째, 교육적·역량 개발의 효과이다. 공익소송은 종종 선례가 없는 쟁점을 다루며, 이는 변호사의 법적 사고를 심화시킨다. 특히 경력 초기의 변호사에게 공익 사건은 법정 경험과 의뢰인 관리, 사건의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경험하게 하는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헛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성취감 또는 효능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사건 배정도 중요하다. 이는 항을 바꾸어 더 살펴본다.

3. 공익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익법 생태계’ 조성

연간 20~30시간의 의무 활동을 수행하는 개별 변호사들의 참여가 파편화되지 않고 실제적인 사회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개별적 활동을 결집할 구심점이 중요하다. 개별 변호사들이 의무 시간을 채우기 위해 수행하는 형식적인 활동으로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인권 침해나 “흩어진 확산이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별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전문가와 현장을 잇는 지원체계가 중요하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현장과 변호사를 연결하는 중간지원단체의 유용성에 대해 공감했다. 개별 사안에 대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지 여부, 언제 필요한지에 대해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 간의 관계도 중간에서 조정하는 단체가 있다면, 변호사가 조력하기에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다.

인터뷰이들 중 상당수는 개별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하여 공익사건을 중개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D, F, A, G 변호사).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 중에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변호사들도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중개 플랫폼 또는 중간지원단체의 역할은 비단 사건 연결에 그치지 않고, 사건 수행 단계에서도 필요하다.

D: 센터가 잘 걸러서 사건을 주면 변호사들이 훨씬 편하죠. 초기 개입부터 하지 않아도 되고. 초기 판단을 안해도 되니까요. 의뢰인 간의 관계도 좀 해소가 되고요.

F: 제 지인들 중에는 공익활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누군가는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본인들이 못하는 이유는 마땅한 창구가 없어서인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창구가 있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교육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공익) 사건과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어떤 창구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내용과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공익사건의 의뢰인은 대체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사실관계와 증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사실 정리와 증거 수집 부담의 상당 부분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들의 법률문제는 복지·주거·체류자격·장애·언어 등 비법률적 문제와 중첩되어 있어, 변호사가 예상치 못한 사회복지 지원 연결의 역할까지 떠맡는 경우가 빈번하다.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영리 사건보다 큰 경우가 많다. 즉, 공익사건은 다양한 비법률적 업무 부담을 변호사에게 지울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공익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러한 부담은 단순한 보수 증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중간지원단체는 이러한 비법률적 부담 - 공익사건의 발굴, 접수와 선별, 변호사와 사건의 연결, 사실관계 정리·증거자료 수집·번역 등 사건 착수 전 단계의 작업, 의뢰인과의 의사소통 및 복지·의료 등 타 서비스와의 연계, 사건 종결 후의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가 현재보다 더 중간지원단체로 이전될 경우, 변호사 보수를 인상하지 않고도 업무 부담을 상당부분 경감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

민변이나 공감 등 공익변호사단체들이 현장 단체들과의 접촉을 넓히고, 의뢰받은 사건들을 개별 변호사나 로펌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일부 수행하였으나, 공익활동 중개를 전담해서 수행하는 기관 (pro bono clearinghouse)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 2016년 개원한 서울지방법 변호사회의 프로보노지원센터 등이 그런 단체로 발전하여 다수의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독려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존재했으나, 중개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B: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상황에 대해)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라운드테이블도 2017년부터 하고 관련 단체들 찾고, 변호사들을 연결시켜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현재 역량이 부족합니다. 이런건 상근직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만큼의 예산이 없어요. 그런 한계 속에서 프로보노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익활동의 중간지원단체로서 실질적인 중개·결집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변협 및 그 산하 조직이 다수의 법률지원단과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변협은 전체 변호사를 포괄하는 대표성과 회원 동원력, 그리고 재정·조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어떤 민간 단체도 쉽게 갖추기 어려운 자산이다. 따라서 변협이 중개기능을 의도적으로 강화할 경우, 가장 광범위하게 개별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다만 변협이 실질적 중개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공익활동 외연의 과도한 광범위성 문제가 함께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변협 차원 외에도, 지방변호사회에서 지역 내 공익사건에 대해 중개 및 지원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는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G: 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익활동에 대한 문턱이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공익활동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 한 분 정도는 전업 공익변호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역에 동료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변협·변회와 별도의 중간 지원 매체로, 위에서 살펴본 동천, 두루 등이 시작한 네트워크의

실험을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감 등 기존 공익변호사 단체 및 재단의 실험을 확대하는 접근이다. 이들은 현장 단체와의 네트워크, 사건의 발굴·구성 노하우, 변호사 및 로펌과의 연결 경험을 이미 축적하고 있으나, 개별 단체의 역량과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안정적 재원이 확보된다면 변협의 중개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진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언하고자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전국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리걸클리닉이나 법률상담소를 통해 지역 공익사건의 1차 접수·선별·구성과 학생·변호사 연계의 허브로 기능할 잠재력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법률 구조의 역량이 수도권으로 집중된 우리나라에서 지역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 등이 법적 조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다고 기대된다.²³⁹⁾ 리걸클리닉의 활성화는 앞에서 논의한 공익적 전문가 정체성의 형성과 직접 연결되어, 클리닉이 중개 거점인 동시에 정체성 형성의 장이 되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39) 이택건, 앞의 글, 43면.

제7장

결 어

장보은

I 연구의 의의

공익(Public Interest)이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나, 이번 연구 목적으로는 사법접근권을 포함하여 국가 또는 시장의 작동만으로는 충분히 보호·실현되기 어려운 다원화된 사회적 가치와 이익, 그리고 권리 보장의 공백이나 불균형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보호·실현이 요구되는 이익을 포괄적으로 공익이라고 이해한다.

공익은 다양한 법률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우선, 공익은 사회적 약자, 지역적·정보·자원 격차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법률서비스 구조에서 사법접근권 보장이 어려운 영역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통해 구현된다. 또한 공공정책의 형성 및 집행 등 공공 영역에서의 법률 기능 수행을 통해서도 공익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민간영역에서의 법령 준수 확보,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 기업 활동에 대한 법적 통제 등 사회 전반의 법적 질서 유지나, 공익적 법률가 양성과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법률 교육 및 연구 활동도 중요한 영역이다.

공익적 법률가는 특정 직역이나 단일한 직업군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시민사회, 민간기업, 학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익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법조인 모두가 포함된다. 이 정의는 공익법조 활동이 전업 공익변호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법조인이 각자의 방식으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이번 연구는 변호사의 공익 활동을 단일한 범주로 보지 않고, 다섯 개 주요 활동 기반별로 분화된 현황과 제도적 과제를 입체적으로 조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개별 영역의 현황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각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특히 공직, 시민사회, 기업, 학계, 개인 프로보노가 서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II 공통 과제와 구조적 문제

1. 고용 불안정: 임기제·단기 계약의 악순환

법조인의 공익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 요소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 불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 법조인의 임기제 계약, 시민사회단체 공익변호사의 단기 고용, 법학전문대학원 임상 교원의 단기 계약 등 여러 영역에서 공통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경제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문제임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전문성을 쌓거나 경력을 이어나가는 것이 어려워 이직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법조 지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보장받기 어렵게 되고, 조직 내 업무나 공익 사건을 연속성 있게 수행할 수도 없다.

2. 재정 구조의 취약성: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족

공익법조 활동의 지속 가능성은 재정 구조에 달려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보조금과 후원금에 의존하며, 그 불안정성이 공익변호사의 처우와 조직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공명심에만 기대어 공익적 변호사 활동을 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업무 강도나 전문성에 비추어 너무 낮은 대가를 지급받게 되면 현실적으로 해당 진로를 선택하기 어렵게 된다.

3. 관련 정보 및 네트워크의 부족

공익법조 생태계에는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공익 변호사 공개 채용 정보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공익 활동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실무수습 기관에 대한 접근도 인맥과 네트워크에 의존한다. 리걸 클리닉 등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부 대형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나 민변 등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이미 접근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익과 관련된 진로를 탐색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4. 인식과 평가 체계의 부재

공익 법조 활동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제대로 평가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개별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은 시간으로만 기록되고 그 내용과 질은 평가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시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를 받거나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공익 활동은 기존 변호사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상충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III

제도 개선 방안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개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내외로 고착화되어 있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험 준비 부담이 교육과정 전반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공익법, 임상법학 등은 주변화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여지도 좁아지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배출 규모가 급증하고 법률 시장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오늘날, 기존의 시험 준비 중심 교육만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기 어렵다. 공익적 가치에 대한 감수성과 다양한 직역에 대한 실질적 준비 없이는, 변화한 법조 환경에서 새로운 역할을 개척하는 것도 요원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 단계에서 다양한 공익 분야와의 직간접적인 접촉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익변호사, 국제기구 법무담당자, 기업 준법지원인, 사회혁신기업 법무팀 등 다양한 직역 종사자를 초청하는 특강 프로그램, 방학 중 실무수습 기회의 확충, 공익단체·정부기관·로펌 공익부서와 연계한 현장 프로그램 등이 그 예이다. 공익적 활동을 미리 접해 본 사람이 그 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 단계에서의 노출 자체가 장기적으로 공익적 법률 인력의 저변을 넓히는 핵심 수단이 된다.

다음으로 리걸클리닉을 실질화해야 한다. 현재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리걸클리닉은 인력 부족과 변호사시험 준비 압박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걸클리닉 전임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익변호사나 시민단체 활동 경험이 있는 외부 교원·지도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존 공익단체, 법률구조 기관, 지방 변호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리걸클리닉 과목의 학점 부담을 완화하고 시험 준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설계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공익관련 교과목 외에도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강조한다. 변호사시험 준비 과목 이외에도 ESG·기후위기·플랫폼·인공지능·데이터 등 새롭게 부상하는 법적 쟁점을 다루는 교과목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많은 선택과목이 사실상 시험 관련 과목으로 수렴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비시험 과목에 Pass/Fail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인센티브의 제도화

공익적 변호사 활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발적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익활동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자원 확보가 선결 과제이다. 현재 국내의 공익법률 지원 자원은 정부 예산, 법률구조공단, 일부 대형 로펌의 자발적 기여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규모와 안정성 모두 충분하지 않다.

지속 가능한 자원 마련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정부와 대형 로펌 등이 공동 출연하는 형태로 자원을 조성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독립적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단기적 출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임팩트를 기준으로 기금을 배분하는 임팩트 중심의 기금 운영 모델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원 조성과 함께 공익활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 제도를 체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공익소송이나 법률구조 활동에 대한 기금 지원 확대,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공익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 조항 신설 등이 구체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략적 역할이 중요하다. 공익활동 의무 제도가 형해화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변협이 단순한 행정기관을 넘어 공익법률 생태계를 이끄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법조계 전체의 사회적 신뢰 회복과 직결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익활동 의무 이행을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된 공익활동 인정 범위를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공익 기여를 중심으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 의무 미이행에 대한 실효적인 패널티를 도입하거나, 이행 내역의 자발적 공시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단순한 시간 수 충족이 아니라 활동의 내용과 사회적 기여를 평가하는 공익역량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장기적 과제이다.

변호사 연수 단계에서도 공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등록 전 일정 시간의 공익활동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 공익사건 수행을 위한 표준 서식과 매뉴얼 제공,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접근 문턱을 낮출 수 있다.

공익사건과 변호사를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의 운영도 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의 역할이 기대되는 지점이다. 이는 단순한 매칭 플랫폼을 넘어서, 프로보노 활동의 내용과 질을 기록하고 평

가하며, 활동 보고 데이터를 집계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변호사협회(ABA)의 Pro Bono Challenge 모델, 영국의 Law Works, 일본의 JFP(일본프로보노센터)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모델을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3. 전문성 제고 방안

공익적 변호사 직역이 일시적인 봉사나 비경제적 선택이 아닌 지속가능한 커리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안정적 보수와 명확한 경력 경로를 갖춘 구조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전담 변호사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임기제 형태로 운영되는 공공 부문 변호사 직위를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거나, 전문직 트랙을 별도로 신설하여 처우와 신분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법률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반 행정직과의 역할을 구분하는 제도적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로펌의 공익 펠로우십이 활성화되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해외의 주요 로펌들이 공익단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소속 변호사를 일정 기간 파견하거나, 공익법 분야의 신진 변호사를 채용·지원하는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는 국내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NGO와 로펌 간의 구조화된 파트너십을 통해 공익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아울러 공익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난민·이주민, 장애, 아동·청소년, 젠더, 노동, 기후위기, 디지털 인권 등 공익 분야는 각각 고유한 실체법적·절차법적 전문성을 요구한다. 분야별 심화 연수와 사례 공유 플랫폼을 통해 공익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후속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 기업의 영역에서는 기업의 ESG 경영이 공익법조 생태계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접점이다. 55.8%의 상장사가 ESG 위원회를 설치한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공익 소송 지원, 법률 취약계층 지원, 인권 경영 실사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업의 법률 지원 활동이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4. 법조 직역 다변화

공익적 법률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은 기존의 소송·법률구조 분야를 훨씬 넘어서 확

장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직역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입법·행정·사법 보좌 조직에 공익 전문 법조인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 입법조사, 행정부의 정책 법무, 사법부의 사건 분석 등 각 분야에서 법률 전문성을 지닌 전담 인력의 수효는 늘어나고 있다. 입법조사 전문 변호사, 공공기관 컴플라이언스 전담 직위 등을 명확히 제도화하여, 해당 직역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새롭게 부상하는 영역에서의 공익 역량 강화도 시급하다. ESG,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규제, 인공지능과 데이터 윤리 등은 이미 국내외에서 법적 쟁점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로, 이 영역에서 공익적 관점을 견지하는 정책·규제 전문가와 공익소송 수행 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기존의 인권·복지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공익 변호사들이 새로운 영역으로 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네트워크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2차적·중간적 커리어로서의 공익 분야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로펌이나 기업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변호사가 공익단체나 공공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반대로 공익 분야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는 커리어 경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역 간 네트워크 구축과 경험 공유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공익 분야 경력이 다른 법조 직역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IV 평가 방식 및 인식의 전환 필요성

공익적 변호사 직역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하는 이 연구의 마지막 과제는, 공익 활동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사회적으로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지금까지의 제도는 공익활동을 주로 '시간 수'나 '사건 수'라는 양적 지표로 측정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으로는 공익활동이 우리 사회에 실제로 가져오는 변화를 포착하기 어렵다. 평가 방식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정 공익소송이 가져온 판례 변화, 법제 개선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수혜자의 규모, 구조적 불평등의 완화 정도, 취약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공익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임팩트 중심의 평가는 공익활동의 동기를 형식적 의무 이행에서 실질적 사회 변화로 전환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공익활동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익사건의 처리 현황, 법제 변화의 내용, 수혜자의 실질적 권리 실현 정도 등을 추적하

는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익단체와 수혜자의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공익법률 활동이 가져오는 사회복지 비용의 절감, 제도 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을 정량화하여 예산 편성과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공익적 변호사 지역의 확대와 발전은 법조계만의 과제가 아니다. 법률 서비스 접근성의 불평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보장, 법치주의의 실질적 구현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다. 변호사 개인의 선의와 헌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제도·인식 등 다층적 차원에서 공익적 법률 활동이 지속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인터뷰 대상자 명단

성명	소속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B	법무부
C	외교부
D	국가인권위원회
E	전 조달청
F	소방청
G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H	O도 교육청
I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J	피고인국선전담변호사
K	피고인국선전담변호사
L	서울 소재 공공기관
M	대한법률구조공단
N	P 대기업
강영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수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영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김재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희진	변호사김희진 법률사무소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류윤교	리만코리아
문지혜	변호사문지혜 법률사무소

성명	소속
박다혜	법률사무소 고른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박현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광열	사단법인 온을
서채완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지은	법무법인 이채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윤세종	플랜 1.5
윤이나	법무법인 로하스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정진	비엔지파트너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가. 연구 및 보고서

- 강민주 외, “ESG 실무자를 위한 매뉴얼”,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2025
- 강정민, “주요 상장회사 이사회 BSM 분석 - ESG위원회의 기후전문성을 중심으로”, 이슈&분석 2025-01호, 경제개혁연구소, 2025
- 강정은, 이소아 외,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보고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사단법인 두루, 2019
- 고영미, 싱가포르의 법 교육, 변호사 실무 교육, 그리고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제38호, 2017
- 고범준, “ESG와 사회문제의 해결”, 로펌공익네트워크 2021년 하반기 심포지엄 자료집, 2021
- 공민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에 관한 검토 - 준법감시인 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법현논총 제1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 국가데이터처, “인구, 가구 및 주택 - 읍면동(연도 끝자리 0, 5), 시군구(그 외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2&conn_path=I2 (2026년 3월 1일 검색).
- 국가데이터처, “인구, 가구 및 주택 - 읍면동(연도 끝자리 0, 5), 시군구(그 외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2&conn_path=I2 (2026년 3월 1일 검색).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2014
-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안)」, 2026
- 김봉수,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한 고찰 - 피의자 및 피해자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제34권 제4호, 2023
- 김성균,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관한 법적 소고 -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기준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4호, 2021
- 김용기, “기업의 ESG전략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3권 제4호, 2025
- 김지원, 형사절차상 피해자변호사제도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 김지희 외 4,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공익법률활동 참여 과정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공익과 인권, 제24호, 2024

- 김혁, 「현행 국선보조인제도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35권 제1호, 2023
- 김희경, “국내 상장기업의 준법통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준법지원인 제도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KCGS Report 제14권 제1호, 한국ESG기준원, 2024
- 나지원,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47권 제3호, 2023
- 박경미, “ESG 리스크와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 법학연구 제24집 제2호, 2021
- 박미정·이학구,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2
- 박선아 외 2,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편방안 - 리걸클리닉과 실무수습 제도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5
- 법원행정처 등, 25. 12. 12. 2026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 변원규·이정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선언과 ESG 리스크 관리 성과”,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3호, 2025
- 양만식,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사내변호사의 역할”, 법학논총 제41권 제3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양시훈,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02, 2014
- 염형국,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공익과 인권』 통권 제13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2013.
- 염형국,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법문사, 2018
- 이소아 외 5, 예비 법조인을 위한 공익적 법조 진로 실태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2021
- 이정원, 변호사법 제27조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리걸클리닉교육 활성화를 위한 논의, 법학연구, 제61권 제4호, 2020
- 이준웅 외 2,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 교육이 직장선택 고려사항과 법조현실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재협(편), 대한민국의 법률가, 박영사, 2016
- 이태영,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인권과정의, 제518호, 2023
- 이태영,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고찰”, 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2022
- 이형우, “금융기관과 ESG 리스크 관리 : 기후변화 리스크를 중심으로”, 이음연구소, 2022
- 임성택, “ESG 시대 법과 법률가의 역할”, 한국법제연구원 제1차 ESG 포럼 자료집, 2022
- 재정경제부,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s://www.alio.go.kr/organ/organDis closureList.do> (2026. 3. 4. 접속)
- 정명숙, 국선변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 정영환, “한국 리걸클리닉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2012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역량강화(리
걸클리닉 지원) 사업 정책과제 결과보고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3
- 차병직, 변호사 공익 활동 의무의 근거와 범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3권 제1호, 2008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2021
- 한영선 외 2, 『소년법 강의』, 솔과학, 2020
- 황성준·박경보, “기업의 ESG 성과가 미래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지 제19권 제1호,
한국창업학회, 2024
- 황승흠,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 법과사회 제26호, 2004

나.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84121 결정
- 대법원 2018. 8. 17. 선고 2018두43750 결정
- 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결정
- 헌재 2018. 12. 18.자 2018헌마1139 결정
- 헌재 2026. 4. 29. 2020헌바21·56(병합) 결정

다. 신문기사

- 더나은미래, “급여는 반토막, 업무는 두 배”...0.3% ‘괴짜’ 변호사들의 기막힌 생존기, 2026.3.5.,
<https://futurechosun.com/archives/144550> (2026. 5. 31. 접속).
- 로이슈, ‘변협회장 선거 후끈...장성근 vs 김현 공약 역시 “변호사 일자리”’, 2017. 1. 2.,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170102113721720575601_12 (2026. 5. 22. 접속).
- 머니투데이, “‘변호사 줄이자’ 시위 참여가 공익 활동?...변호사들도 갑론을박”, 2025. 4. 13.,
<https://www.mt.co.kr/society/2025/04/13/2025041315311483154> (2026. 5. 22. 접속)
- 법률신문, “국선변호 예산 152억 증가 ... 200억대 미지급 해소 기대”, 2025. 12. 10.,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83> (2026. 5. 22. 접속)
- 법률신문, ‘[단독] 월급 밀리고, 사건은 많고 열악한 국선전담변호사 처우’, 2025. 1. 15.,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15> (2026. 5. 22. 접속)
- 서울경제, ‘변협회장 후보들 ‘변시 합격자 감축’ 최우선으로...“입법 통한 직역수호” 한 목소리’,
2021. 1. 20., <https://m.sedaily.com/amparticle/12964379> (2026. 5. 22. 접속)
- 서울신문, “국선전담 변호사 전국 확대”, 2005. 11. 2.,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05/11/02/20051102008011> (2026. 5. 23. 접속)

- 세계일보,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 논란..헌법소원에 폐지 목소리까지’, 2019. 1. 3., <https://www.segye.com/newsView/20190103001774> (2026. 5. 22. 접속)
- 세계일보, “[이슈&현장] 지역주민에 맞춤형 법률서비스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큰 인기”, 2013. 3. 5., <https://www.segye.com/newsView/20130304004113> (2026. 5. 23. 접속)
- 오마이뉴스, ‘연락 잘 안 되는 성폭력 피해자측 변호사... 어떻게 된 일이나면’, 2025. 5. 14., <https://omn.kr/2dh17> (2026. 5. 22. 접속)
- 중앙일보, “변호사 공익활동 시작도 못하고 좌초 위기”, 2000. 2. 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3882145> (2026. 5. 23. 접속)
- 파이낸셜뉴스, ‘김정옥, 변협회장 후보자 등록...“변호사단체 통합·발전 이뤄낼 것”’, 2024. 12. 20., <https://www.fnnews.com/news/202412201754287695> (2026. 5. 22. 접속)
- 한국일보, ‘변호사가 배고파서 정의로울 여유가 없다고?...변호사 수 정말 많을까’, 2026. 4. 23.,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42213580004105> (2026. 5. 22. 접속)
- 한겨레, “변협 변호사법 수정안 내놔”, 1999. 3. 23.
- 한겨레, “‘피해자가 벼슬인 줄 알아’...의뢰인 2번 올리는 불성실 국선변호사’, 2023. 4. 1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335.html (2026. 5. 22. 접속)
- 한겨레21, ‘피해자가 불신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2021. 8. 25.,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50823.html> (2026. 5. 22. 접속)
- 헤럴드경제, “가난한 사람 돕는 소송구조 변호사, 18년째 ‘100만원’ 받고 일한다” 2025. 8. 25.,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61471> (2026. 5. 22. 접속)
- 헤럴드경제, “‘서울 변호사’ 3만명 시대...10명 중 8명 서울에 왜?”, 2026. 2. 1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74303>, 2026. 5. 22. 접속)

라. 기타자료

- 김도윤, 국선변호인 처우 현황과 개선방안, 전국 국선변호인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26. 2. 11.)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2024년 기부금 보고서, 2025
- 박인레, 소비자(시민) 관점의 제도개선 제안, 전국 국선변호인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26. 2. 11.)
- 법무부, “보도자료 - 2015. 4. 10. 의사표현이 어렵고 변호사 비용을 못대는 고령자·장애인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도입 -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015. 4. 10.).
- 법무부, 보도자료: “당신 곁에 ‘마을변호사’가 있습니다”, 2022. 2. 1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9125> (2026. 5. 23. 접속)
- 법무부, 피해자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2025. 3. 21.)

- 법무부 장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3. 3. 15.), <https://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26976> (2026. 5. 23. 접속)
- 염형국, 국내 임상법학교육 Case Study 및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토론, 2025 임상법학교육 국제컨퍼런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2025.12.15.)
- 이탁건, 임상법학교육의 활성화 방안, 2026년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교육자 간담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26. 2. 23.)
- 제20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6호, 1999. 12. 17.
- 최익구, “국선변호인 실무상 고충 사례 분석”, 전국 국선변호인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26. 2. 11.)

2. 국외문헌

가. 연구 및 보고서

- Joy, Peter A., “ABA Standard 405(c): Two Steps Forward and One Step Back for Legal Education” 66 J. Legal Educ. 606, (2017).
- Kotkin, Minna J. “Clinical Legal Education and the Replication of Hierarchy”, Clinical Law Review, Vol. 26 (2019).
- Kuehn, Robert R. and Santacroce, David, “The 2016-17 Survey of Applied Legal Education”. U of Michigan Public Law Research Paper No. 639 (2017).
- Lee, Takgon and Kim, JaeWon, Public Interest Lawyering in South Korea: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in Helena Whalen-Bridge (ed.), The Role of Lawyers in Access to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 Lillich, Richard B. “The Teaching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U.S. Law Schools,” Antioch Law Journal: Vol. 3 : Iss. 1 , Article 9 (1985).
- O’Rourke, Maureen A. “The “Law” and “Spirit” of the Accreditation Process in Legal Education“, 66 SYRACUSE L. REV. 595 (2016).
- Santacroce, David A. “The Status of Clinical Faculty in the Legal Academy: Report of the Task Force on the Status of Clinicians and the Legal Academy.” B. L. Adamson et al., co-authors. J. Legal Prof. 36, no. 2 (2012).
- Sullivan, William M. 외 4, Educating Lawyers: Preparation for the Profession of Law,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2007.

나. 기타 자료

American Bar Association, “How PSLF Works”, https://www.americanbar.org/advocacy/governmental_legislative_work/priorities_policy/legaleducation/pslf-homepage/how-pslf-works/ (2026. 5. 31. 접속)

American Bar Association, “IOLTA Overview”, https://www.americanbar.org/groups/interest_lawyers_trust_accounts/overview/ (2026. 5. 31. 접속)

American Bar Association, “Model Rule 6.1: Voluntary Pro Bono Publico Service”, https://www.americanbar.org/groups/probono_public_service/policy/aba_model_rule_6_1/ (2026. 5. 31. 접속)

American Bar Association, “Public Interest Membership & Resources”, https://www.americanbar.org/groups/legal_services/public-interest-membership/ (2026. 5. 31. 접속)

American Bar Association, Standards and Rules of Procedure for Approval of Law Schools: Chapter 3)』, 2024, https://www.americanbar.org/content/dam/aba/administrative/legal_education_and_admissions_to_the_bar/standards/2025-2026/2025-2026-standards-chapter-3.pdf

Arthur Liman Center for Public Interest Law), “Liman Law Fellowships”, <https://law.yale.edu/centers-and-workshops/arthur-liman-center-public-interest-law/fellowships/liman-law-fellowships> (2026. 5. 31. 접속)

Arthur Liman Center for Public Interest Law, “Liman Summer Fellowship”, <https://law.yale.edu/centers-and-workshops/arthur-liman-center-public-interest-law/fellowships/liman-summer> (2026. 5. 31. 접속)

Equal Justice Works, “Loan Repayment Assistance Programs”, <https://www.equaljusticeworks.org/law-students/student-debt-resources/resources/loan-repayment-assistance-programs/> (2026. 5. 31. 접속)

Global Pro Bono Hub, “UK Collaborative Plan for Pro Bono”, <https://www.globalprobonohub.com/resource/gpbh/uk-collaborative-plan-for-pro-bono> (2026. 5. 31. 접속)

Gruber Program for Global Justice and Women's Rights, “Gruber Fellowships”, <https://law.yale.edu/centers-workshops/gruber-program-global-justice-and-womens-rights/gruber-fellowships> (2026. 5. 31. 접속)

Latham & Watkins, 「A Survey of Pro Bono Practices and Opportunities in Australia」, <https://www.lw.com/admin/Upload/Documents/Global%20Pro%20Bono%20Survey/pro-bono-in-australia.pdf> (2026. 5. 31. 접속)

- Law Foundation of Ontario, “Public Interest Articling Fellowship”, <https://lawfoundation.on.ca/apply/fellowships/public-interest-articling-fellowship/> (2026. 5. 31. 접속)
- Law Society of British Columbia, “Trust Accounts”, <https://www.lawsociety.bc.ca/for-the-public/working-with-lawyers/trust-accounts/> (2026. 5. 31. 접속)
- Law Society of New Brunswick, “Interest on Trust Accounts”, <https://lsnb-educ-bnb.ca/node/954> (2026. 5. 31. 접속)
- Legal Services Corporation (LSC), “Who We Are”, <https://www.lsc.gov/about-lsc/who-we-are> (2026. 5. 31. 접속)
- LSE Law School, “LSE Legal Advice Centre”, <https://www.lse.ac.uk/law/legal-advice-centre> (2026. 5. 31. 접속)
- Singapore Institute of Legal Education, “Qualified Person (Local Universities)”, <https://www.sile.edu.sg/the-singapore-bar-admission-local-graduates/qualified-person-local-universities/> (2026. 6. 1. 접속)
- Singapore Institute of Legal Education, “Qualified Person (Overseas Scheduled Universities)”, <https://www.sile.edu.sg/for-overseas-graduates/qualified-person/> (2026. 6. 1. 접속)
- UCL Faculty of Laws, “CAJ Public Interest Careers Mentorship Scheme”, <https://www.ucl.ac.uk/laws/caj-public-interest-careers-mentorship-scheme> (2026. 5. 31. 접속)
- UCL Faculty of Laws, “Study with the Centre for Access to Justice”, <https://www.ucl.ac.uk/laws/access-to-justice/study> (2026. 5. 31. 접속)
- University of Ottawa Faculty of Law, “Pro Bono”, <https://www.uottawa.ca/faculty-law/common-law/probono> (2026. 5. 31. 접속)
- University of Victoria, “Law Foundation of BC Public Interest Award”, <https://www.uvic.ca/safa/scholarships/in-course-scholarships/law-foundation-of-bc-public-interest-award.php> (2026. 5. 31. 접속)
- Yale Law School, “Interview Programs”, <https://law.yale.edu/student-life/career-development/students/interview-programs> (2026. 5. 31. 접속)
- Yale Law School, “Other YLS Job Search Resources / Events”, <https://law.yale.edu/student-life/career-development/students/career-pathways/public-interest/yls-support-public-interest-careers#heading=32278892> (2026. 5. 31. 접속)
- Yale Law School, “Public Interest Programs and Resources”, <https://law.yale.edu/student-life/career-development/students/career-pathways/public-interest/publ>

ic-interest-programs-and-resources (2026. 5. 31. 접속)

Yale Law School, “Summer Public Interest Fellowship (SPIF)”, <https://law.yale.edu/admissions/cost-financial-aid/summer-aid-spif#heading-32281034> (2026. 5. 31. 접속)

Yale Law School, “YLS Support for Public Interest Careers”, <https://law.yale.edu/student-life/career-development/students/career-pathways/public-interest/yls-support-public-interest-careers> (2026. 5. 31. 접속)

